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어느새 차가운 공기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모든 단원들이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며 힘차게 모니터링을 시작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최종 결과발표회를 한다고 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8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어, 무더위와 굶은 날씨에 모니터링 단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 일반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널리 알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모니터링에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의 모니터링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광역시청, 시·군·구청, 읍·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을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의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으로 진행된 이번 모니터링의 전 과정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명 철**

■ ■ 목 차

Contents ■ ■

I ■ ■ 모니터링단 선언문 / 1

II ■ ■ 모니터링 사업 개요 / 5

- 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7
-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8
- 3. 모니터링사업 주요 운영일지 11

III ■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13

- 과제 1. 장애인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16
- 과제 2.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72
- 과제 3. 장애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132

IV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사항 /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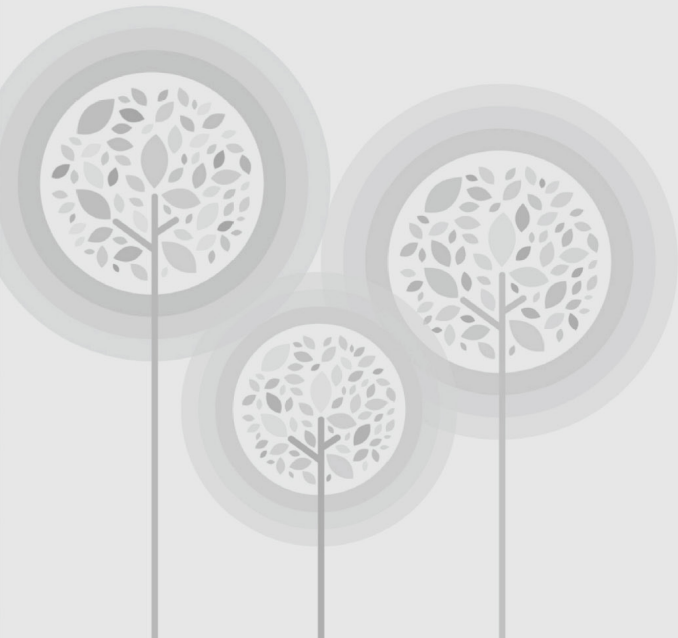
V 모니터링단 활동 사진 / 193

※ 부 록 / 209

부록 1.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및 2014년 모니터링 제언	211
부록 2.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명단	250
부록 3. 모니터링 관련 조항	252



I. 모니터링단 선언문



I. 모니터링단 선언문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40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편견과 차별의 벽은 아직도 두텁기만 합니다.

장애인 차별의 현장은 여전히 넓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은 오늘도 부당한 차별과 힘겹게 부대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지위나 자리를 바라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편견 없이 능력을 발휘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 편안하게 산책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차별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고, 영화관에서 편안하게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세상, 웹에 불편 없이 접근해 사이버 세상을 즐기는 세상,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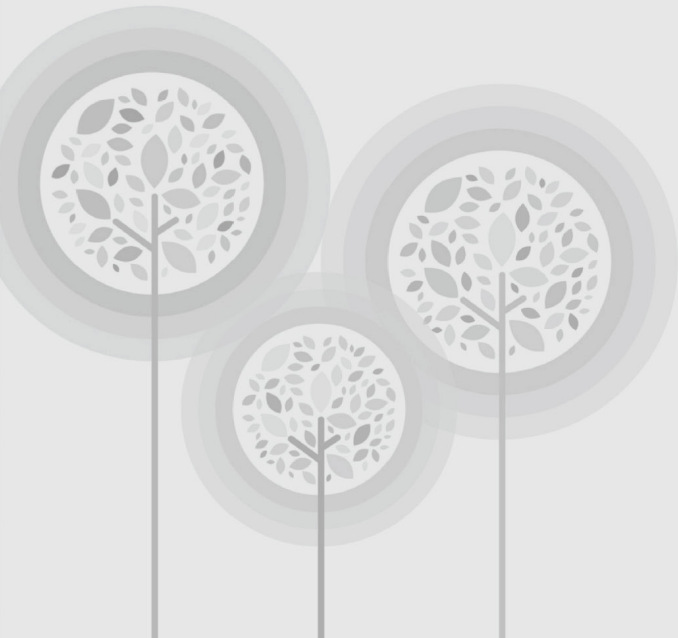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우리 모니터링 단원은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Ⅱ. 모니터링 사업 개요



Ⅱ. 모니터링 사업 개요

1 모니터링 사업 취지 및 목적

가. 모니터링 사업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명시된 차별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 정책적 개선과제 발굴 및 법의 실효적 이행과 대국민 인식제고 도모
- 2009년부터 주요 현안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생활 밀착형 주제를 선정 운영
- 2013년에는
 - <현장 모니터링> : ‘공공기관 이용’, ‘의료기관 이용’,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중심
 - <정책 모니터링> : ‘웹 접근성’을 중심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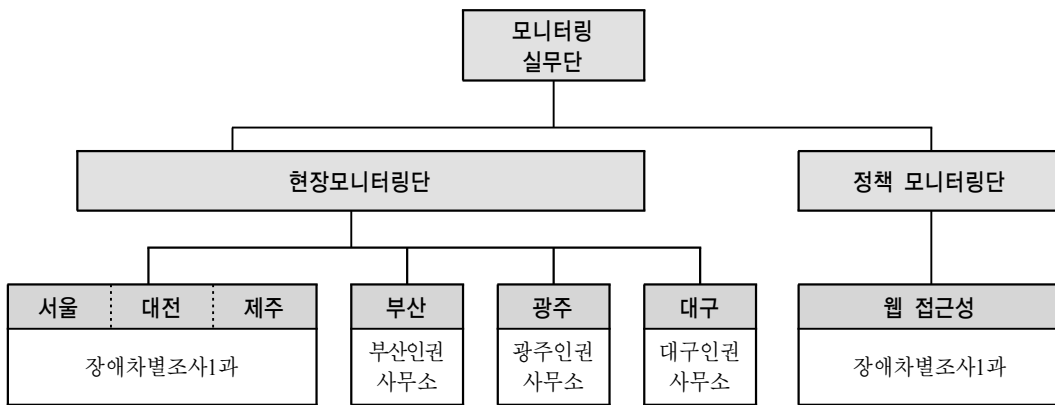
나. 모니터링 사업 목적

-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차별의 예방적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장애차별 정책 및 제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가. 모니터링단 구성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지역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 구성



나. 모니터링단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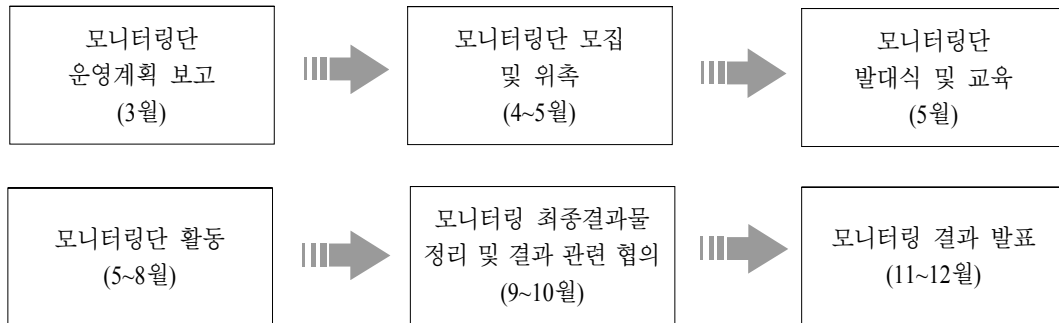
- 각 지역별 20~30여명 규모로 선발, 모니터링단원의 50% 이상을 장애당사자로 구성 (지체,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장애유형 포함 고려)

(단위 : 명)

	합 계	비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기타
서울	30	12	6	9	3	0	0
대전	21	3	14	2	0	1	1
제주	22	4	16	0	2	0	0
부산	29	9	16	1	1	1	1
광주	31	11	16	2	2	0	0
대구	36	16	15	3	2	0	0
계	169	55	83	17	10	2	2
비율	100%	32.5%	49.1%	10.1%	5.9%	1.2%	1.2%

- 대전·제주 지역의 경우, 거리적 한계와 지역사무소 부재로 인해 위원회 직원이 상주할 수 없어 직접 모니터링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 추진
(대전지역 : 대전장애인인권포럼, 제주지역: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다. 모니터링 사업 흐름도



라. 현장 모니터링 개요

(1) 과제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집을 마련하여 모니터링 단원에 배포 및 권역별 교육 실시
 -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장애차별 주요 결정례
 - 모니터링 과제 선정 배경 및 관련 규정 설명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단의 역할 및 방식, 유의사항 안내(이동 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2)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전국 공통과제 3개, 지역 인권사무소의 경우 권역별 1개씩의 지역 과제 추가 선정
- 4개월 간(2013. 5.~8.) 월 2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사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위원회 직원 동행
- 월별 과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후 보고서(1기관 당 체크리스트 각 1부,

개인별 활동보고서 1부, 사진 자료 등)를 각 지역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제출(월 2회 활동)

- 월별 과제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현장에서의 차별사례 발굴에 집중

(3)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사후조치

-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및 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료집 발간
-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최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 권고 및 중·장기 장애정책 과제 발굴

마. 모니터링 주제

<전국공통과제>

-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2013. 5. 15.~2013. 6. 9.)
-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2013. 6. 10.~2013. 7. 7.)
- 장애인의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2013. 7. 8.~2013. 8. 9.)

<지역별과제>

- 부산권역 - 사법서비스(법원·지원·등기소) 이용 모니터링(2013. 8. 26 ~ 9. 9.)
- 대구권역 - 2009~2012년 모니터링 대상 이행점검 및 동해안(울진, 포항, 경주) 해수욕장 모니터링(2013. 8. 21. ~ 9. 6.)
- 광주권역 -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용 모니터링(2013. 8. 13. ~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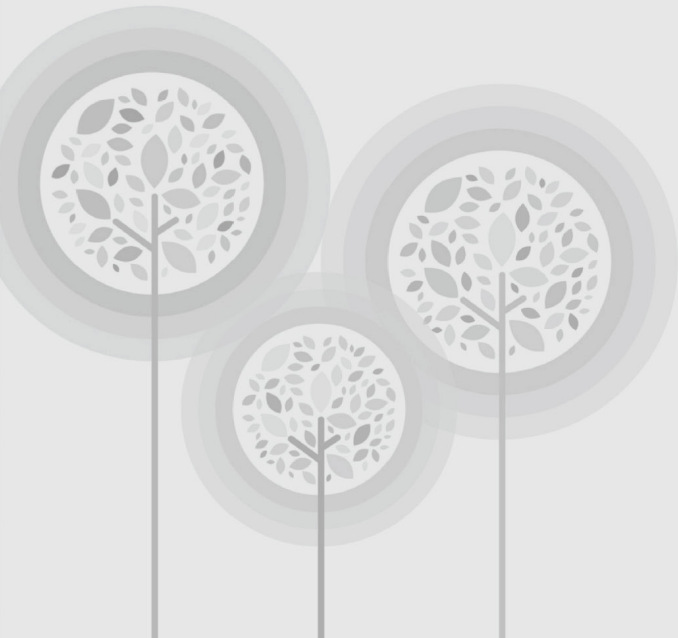
3 모니터링사업 주요 운영일지

월	2013년도 주요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사업 기획 ○제1차 실무단 회의 개최(2013. 1. 1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실무단 회의 개최(2013. 2. 1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과제 선정(2013. 3. 4.)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모집 및 선발(2013. 3. 2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오리엔테이션(2013. 4. 5.)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구성(2013. 4. 1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실시(2013. 5. 15.~ 6. 9.)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2013. 5. 16.(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대전 : 2013. 5. 20.(월)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제주 : 2013. 5. 23.(화) 제주시청소년수련관 · 부산 : 2013. 5. 9.(목)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울산 : 2013. 5. 8.(수)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창원 : 2013. 5. 3.(금) 경남장애인차별상담 네트워크 · 대구 : 2013. 5. 3.(금)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상주 : 2013. 4. 29.(금)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 구미 : 2013. 5. 6.(월) 구미 형곡동 · 울진 : 2013. 5. 8.(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 경주 : 2013. 5. 9.(목)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지회 · 광주 : 2013. 5. 7.(화)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전주 : 2013. 5. 8.(수) 중증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센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실시(2013. 6. 10.~7. 7.)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2013. 6. 11.(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대전 : 2013. 6. 10.(월)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제주 : 2013. 6. 14.(금)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 : 2013. 6. 5.(수)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울산 : 2013. 6. 7.(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창원 : 2013. 6. 12.(수) 경남장애인차별상담 네트워크 · 대구 : 2013. 6. 3.(월)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 상주 : 2013. 6. 4.(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 경주 : 2013. 6. 4.(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지회 · 포항 : 2013. 6. 5.(수)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 울진 : 2013. 6. 5.(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 구미 : 2013. 6. 14.(금) 구미시 형곡동 · 광주 : 2013. 6. 4.(화)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 전주 : 2013. 6. 5.(수) 중증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센터

월	2013년도 주요 활동
7 8	○ 청소년활동시설 모니터링 실시(2013. 7. 8.~8. 9.) ○ 모니터링 사전설명회 개최 · 서울 : 2013. 7. 9.(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별관 · 대전 : 2013. 7. 11.(목) 대전장애인인권포럼 · 제주 : 2013. 7. 17.(수)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 : 2013. 7. 10.(수)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 울산 : 2013. 7. 9.(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창원 : 2013. 7. 11.(목) 경남장애인차별상담 네트워크 · 대구 : 2013. 7. 8.(월)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 상주 : 2013. 7. 10(수)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지회 · 경주 : 2013. 7. 9.(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지회 · 포항 : 2013. 7. 3.(수) 포항시 장애인평생교육원 · 울진 : 2013. 7. 5.(금)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 구미 : 2013. 7. 5.(금) 구미시 형곡동 · 광주 : 2013. 7. 9.(화) 광주은행 본점 6층 회의실 · 전주 : 2013. 7. 10.(수) 중증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센터
9 10	○ 과제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11	○ 모니터링 결과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개선계획 취합 (2013. 11. 8.) ○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개최 · 서울 : 2013. 12. 10.(화)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 · 대전 : 2013. 12. 5.(목) 대전 HACCP 체험관 · 제주 : 2013. 12. 11(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부산 : 2013. 11. 22.(금) 국민연금부산회관 2층 회의실 · 대구 : 2013. 11. 26.(화) 별별인권체험관 · 광주 : 2013. 11. 27.(수)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위원회실



Ⅲ. 모니터링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총 6개 과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과제명	모니터링 기간
전국공통과제		장애인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2013. 5. 15.~6. 9.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2013. 6. 10.~7. 7.
		장애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2013. 7. 8.~8. 9.
지역 자율 과제	부산	사법서비스(법원·지원·등기소) 이용 모니터링	2013. 8. 26.~9. 9.
	대구	2009~2012년 모니터링 대상 이행점검 및 동해안(울진, 포항, 경주) 해수욕장 모니터링	2013. 8. 21.~9. 6.
	광주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용 모니터링	2013. 8. 13.~8. 31.

모니터링 과제는 크게 전국과제와 지역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국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무진 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였고,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지역과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권역이 중심이 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그중 전국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주요 내용,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총평, △회신 등 개선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것이며, 그 외, 부산·대구·광주 인권사무소에서 각각 실시한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는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링 회신 등 개선사항은 위원회가 송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모니터링 기관이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기관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후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였습니다.

과제 1. 장애인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공공기관의 시설접근성,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및 웹 접근성 모니터링
 - 가. 공공기관 시설 접근성
 - 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2 모니터링 목적

-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와 시설 및 웹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차별적 상황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용 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3 모니터링 기간

○ 2013. 5. 15. ~ 2013. 6. 9.

4 모니터링 대상

- 전국 4개 권역 16개 지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총 139개소
- 공공기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광역시청, 시·군·구청 및 읍·면·주민센터’를 대상기관으로 선정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 기관 현황〉

(단위: 곳)

구 분	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도·광역시청	9	1	1	2	2	2	1
시·군·구청	76	23	4	17	22	8	2
읍·면·주민센터	54	0	11	8	0	18	17
계	139	24	16	27	24	28	20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58명 참가: 장애인 참가비율 67.1%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여 현황〉

(단위: 명)

지역	계	장애유형				
		비(非)장애	지체 등	시각	청각·언어	정신
서울	26	12	4	7	3	0
대전	20	3	14	2	0	1
제주	21	4	15	0	2	0
부산	27	9	15	1	1	1
대구	36	16	15	3	2	0
광주	28	8	16	3	1	0
계 (비율)	158 (100)	52 (32.9)	79 (50.0)	16 (10.1)	9 (5.7)	2 (1.3)

〈2〉 모니터링 추진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모니터링 대상 기관 사전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1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5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공공기관 선정
- 5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계획안 보고(2013. 5. 6.)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주관
서울	2013. 5. 16.(수) 14:00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장애 차별 조사1과
대전	2013. 5. 20.(월) 14:0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회의실	
제주	2013. 5. 23.(화) 14:00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회의실	
부산	2013. 5. 9.(목) 14: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7층)	부산 인권 사무소
울산	2013. 5. 8.(수) 14: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교육장	
창원	2013. 5. 3.(금) 15:30	경남장애인차별상담 네트워크 교육장	대구 인권 사무소
대구	2013. 5. 3.(금) 16: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경북북부 (상주, 문경, 예천)	2013. 4. 29.(월) 11: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 사무실	
구미	2013. 5. 6.(월) 11:00	구미 형곡동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울진	2013. 5. 8.(수) 14:00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지회	
경북남부 (경주, 포항)	2013. 5. 9.(목) 14:00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지회	광주 인권 사무소
광주	2013. 5. 7.(화) 14: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전주	2013. 5. 8.(수) 13:00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 지원센터 회의실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선정 배경 및 관련 규정 설명
- 공공기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 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4개 권역 139개 모니터링 대상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2013. 5. 27.)
- 현장 방문 전 대상 기관별로 유선 연락 및 담당자 내정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로 현장 모니터링 월 2회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단원 : 기관당 조별 체크리스트 1부, 개인별 보고서 1부 제출
- 권역별 담당자 : 모니터링 단원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및 활동보고서 취합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바.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 기관 협의 진행 (2013. 10. 14)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공공기관 시설 접근성

- 장애인의 공공기관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장애인화장실, 민원접수대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점자자료 및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민원자동 발매기 이용 시 보조인력 제공 등 인적·물적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다. 공공기관 웹 접근성

- 장애인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전면 유효거리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장애인화장실 · 민원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유도·안내설비 설치 주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구 전면 점형블럭 설치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유무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용품(확대경 등) 제공, 보조인력 제공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수화통역 제공, 보조인력 제공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설치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보드 사용을 통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서식발급
	지체	

3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나.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라. 기 타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7조(대상시설)
- 「편의증진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 제16조(시설 이용 상의 편의제공)
-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제4조 관련 [별표2]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6조 관련 [별표3]

〈4〉 모니터링 결과 분석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전면 유효거리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장애인화장실 · 민원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유도·안내설비 설치 · 주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구 전면 점형블럭 설치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유무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139	129 ¹⁾ (경사로 :44)	8	2 ²⁾	94.2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139	136	3	0	97.8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39	135	4	0	97.1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39	131 (훼손 :11)	8	0	94.2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39	60	79	0	43.2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16	15	1	0	93.8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59	50	9	0	84.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139	125	14	0	89.9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139	131	8	0	94.2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131	118	13	0	90.1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139	73	17	49 ³⁾	81.1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139	128 (남녀구분:88)	11	0	92.1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39	102 (훼손:10)	26	11 ⁴⁾	79.7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139	110	18	11 ⁴⁾	85.9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139	115	13	11 ⁴⁾	89.8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39	98	30	11 ⁴⁾	76.6
	적정 대변기 높이(0.4m이상 0.45m 이하)	139	119	9	11 ⁴⁾	93.0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39	106	22	11 ⁴⁾	82.8
	잠금장치 정상 작동	139	102	12	25 ⁵⁾	89.5
	적정 세면대 높이	139	99	19	21 ⁶⁾	83.9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139	93	25	21 ⁶⁾	78.8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139	117	22	0	84.2
	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139	39	100	0	28.1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139	69	70	0	49.6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 충족/(충족+미충족)

1)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이하이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다. 결과 분석

○ 건물 주출입구 단차제거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건물 주출입구의 단차를 제거한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94.2%에 해당하는 129개 기관으로 나타남. 이 중 65.9%에 해당하는 85개 기관은 주출입구 단차가 2cm이하였으며, 34.1%에 해당하는 44개 기관에서는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단차를 극복함.
-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의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편의시설을 설치한 44개 기관 중 95.5%에 해당하는 42개 기관에서는 설치된 편의시설(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이 작동 가능했으며(경사로의 경우 경사가 완만함), 4.5%에 해당하는 2개 기관에서는 급한 경사를 지닌 경사로 때문에 휠체어사용자의 시설 접근이 어려웠음.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9곳(100.0%), 시·군·구청 74곳(97.4%), 읍·면·주민센터 48곳(88.9%)에서 주출입구의 단차가 2cm이하이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단차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남.
- 주출입구 단차제거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경사로 곡선의 각도가 심하고, 가파른 기울기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험한 경우’, ‘경사로가 울퉁불퉁한 대리석 형태로 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올라가기 힘든 경우.’, ‘경사로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 ‘휠체어리프트가 구형휠체어용으로 설계되어 전동휠체어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었음.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이상)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과를 위한 충분한 거리(0.8m이상)를 확보한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97.8%에 해당하는 136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9곳(100%), 시·군·구청 75곳(98.7%), 읍·면·주민센터 52곳(96.3%)에서 적정통과 유효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경우
 - 3) 행정절차 및 서비스가 1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4)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경우
 - 5)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 6)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장애인화장실에 세면대가 없는 경우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1.2m이상)**

- 전면 유효거리는 ‘출입구 턱 또는 경사로 상단 끝부터 건물입구(문)까지의 거리’로,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건물입구에 착지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전면의 적정 유효거리를 의미하는바, 이를 충족한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97.1%에 해당하는 135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9곳(100%), 시·군·구청 75곳(98.7%), 읍·면·주민센터 51곳(94.4%)에서 적정 유효거리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남.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주출입구 전면의 유효거리가 적정거리(1.2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계단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끝에서 출입문까지 경사가 있어 불편한 경우’ 등이 있었음.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돕기 위해 주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럭을 설치 한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94.2%에 해당하는 131개 기관으로 나타남. 이 중 8.4%에 해당하는 11개 기관의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훼손여부를 해당 기관에 알리고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8곳(88.9%), 시·군·구청 75곳(98.7%), 읍·면·주민센터 48곳(88.9%)에서 주출입구에 점형블럭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점형블럭에 홈이 패어 있어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점형블럭에 깔판이 덮여있어 시각장애인이 관내로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었음.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안내설비 설치**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에 건물 내부 구조 및 설계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하나를 설치한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43.2%에 해당하는 60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6곳(66.7%), 시·군·구청 45곳(59.2%), 읍·면·주민센터 9곳(16.7%)에서 상기 서비스를 설치함. 그러나 전체 설치율이 43.2%로 매우 낮

아 불이행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가 필요함.

- 설치된 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상기 편의시설을 설치한 60개 기관 중 점자안내판을 설치한 기관은 27곳(45%), 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한 기관은 35곳(58.3%),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곳은 16곳(26.7%)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곳(1.7%)의 음성안내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음. (편의시설 종류는 중복으로 체크 가능)
- 주출입구 안내판 설치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촉지도식안내판이 주출입구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점자안내도의 점형 요철이 낮아 시각장애인이 읽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었음.

○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 주출입구가 회전문이나, 재질이 무거운 유리 또는 금속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뇌병변 장애인 등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주출입문의 형태가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문,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불편함을 완화시킨 기관은 회전문이 설치된 59개 기관 중 84.7%에 해당하는 50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7곳(100%), 시·군·구청 34곳(91.9%), 읍·면·주민센터 9곳(60%)에서 별도의 문을 설치함.
- 회전문을 대신하여 설치된 문의 종류를 모니터링한 결과 자동문 16곳(32%), 여닫이문 31곳(62%), 미닫이문 6곳(12%)으로 여닫이문을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설치된 문의 종류는 중복으로 체크 가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또한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89.9%에 해당하는 125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9곳(100%), 시·군·구청 76곳(100%), 읍·면·주민센터 40곳(74.1%)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이 가려져 있어 찾기 힘든 경우’,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의 바닥면표시가 닳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주차장이 주출입구와 거리가 먼 곳에 설치된 경우’, ‘주차장의 바닥면이 울퉁불퉁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하기 불편한 경우’ 등이 있음.

○ 복도 또는 통행로 통과유효폭(1.2m 이상) 및 장애물 설치 여부

- 복도 또는 통행로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휠체어가 통과하기 충분한 거리(1.2m이상)를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94.2%에 해당하는 131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9곳(100%), 시·군·구청 75곳(98.7%), 읍·면·주민센터 47곳(87%)의 복도 또는 통행로가 적정 통과유효폭을 준수함.
- 그러나 적정 통과유효폭(1.2m)을 준수한 131개 기관 중 9.9%에 해당하는 13개 기관에서 화분이나 의자 등을 복도에 배치하여 실제 유효폭이 1.2m가 되지 않았음. 모니터링 시, 단원이 복도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기관이 즉시 치우거나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함.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경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다만 행정서비스가 1층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필수적이지 않음.
-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64.7%에 해당하는 90개 기관이며, 이 중 층간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73곳(81.1%)으로, 설치된 편의시설은 모두 작동 가능하였음.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8곳(100%), 시·군·구청 58곳(93.6%), 읍·면·주민센터 7곳(35.0%)에서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경우, 층간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

으로 나타남.

- 층간 편의시설을 설치한 73곳에 대해 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엘리베이터 66곳(90.4%), 휠체어리프트 5곳(6.8%), 리프트 1곳(1.4%), 경사로1곳(1.4%)으로 설치된 편의시설 중 엘리베이터의 비율(90.4%)이 가장 높음.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계단 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사용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층간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 이용 시 점형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표시가 없어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 등이 있었음.

○ 장애인화장실 접근성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기관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전체 139개 기관 중 92.1%에 해당하는 128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8.8%에 해당하는 88개 기관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였음.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9곳(100%), 시·군·구청 74곳(97.4%), 읍·면·주민센터 45곳(83.3%)에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 이하에서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128개 기관(이하 ‘설치된 기관’이라 함)만을 기준으로 기술함
- 설치된 기관 중 화장실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형블럭을 설치한 기관은 102개 기관으로 79.7%에 해당하며, 이 중 10곳(9.8%)의 점형블럭은 훼손됨.
- 설치된 기관 중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화장실 내 수평·수직 손잡이를 설치한 기관은 110곳으로 85.9%에 해당하며,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을 적정기준(0.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 기관은 115개 기관으로 89.8%에 해당함.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내 휠체어의 충분한 회전 공간(너비 1.0m이상, 깊이 1.8m이상)을 확보한 기관은 98개 기관으로 76.6%에 해당함.
- 화장실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바깥쪽으로 개폐하도록 해야 함. 설치된 기관 중 화장실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22개 기관으로 17.2%에 해당함.
- 설치된 기관 중 장애인화장실의 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14곳(89.1%)이며, 이 중 설치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은 102곳

(89.5%)으로 나타남. 잠금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14곳(10.9%)이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군·구청 7곳, 읍·면·주민센터 7곳에서 장애인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 설치된 기관 중 대변기 좌대의 높이를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에 맞게 설치한 기관은 119개 기관으로 93%에 해당함.
- 설치된 기관 중 세면대를 설치하지 않은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118개 기관 중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적절한 높이의 세면대(하단 0.65m, 상단 0.85m 이상)를 설치한 곳은 99곳(83.9%)으로 나타났으며,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면대의 하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93곳으로(78.8%) 나타남.

○ 민원접수대 접근성

- 민원 접수대에 관한 모니터링은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 민원접수대의 높이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높이(0.7m 이상, 0.9m이하)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체 139개 기관 중 84.2%에 해당하는 117개 기관으로 나타남.
- 민원접수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 기준(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을 충족한 기관은 28.1%에 해당하는 39곳에 불과하였음.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3곳(33.3%), 시·군·구청 18곳(23.7%), 읍·면·주민센터 18곳(33.3%)에서 민원접수대의 하부공간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적절한 높이인 것으로 나타남.

○ 비상경보등 설치

-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한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49.6%에 해당하는 69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5곳(55.6%), 시·군·구청 47곳(61.6%), 읍·면·주민센터 17곳(31.5%)에서 비상경보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26조 제1항에서는 이번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8조 제1항에서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 비상시 대피시설, 시설물 접근 또는 이용 등에 있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 대상 기관들은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우리 위원회가 전국 6개 권역 139개 기관을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단차제거와 주출입구의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및 점형블럭 설치,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문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 층간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화장실 설치,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대변기 적정높이, 잠금장치,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이행비율을 보이는 반면에 주출입구 부근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율, 민원접수대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모니터링 대상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관리가 미비하거나 또는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모르는 기관들이 있었음. 이로 인해 시설접근성 항목의 이행비율은 높았으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접근 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시설접근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점형블럭, 엘리베이터 등)이 훼손되어 있는 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피모니터링 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민원안내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경사로 곡선의 각도가 매우 심하고, 가파른 기울기로 인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험함
- 경사도가 울퉁불퉁한 대리석 형식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혼자 힘으로 올라가기 힘들
- 경사로손잡이 점자표기오류
- 휠체어리프트가 구형휠체어용으로 설계되어 전동휠체어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경사로 옆으로 나뭇가지가 우거져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얼굴부위에 스쳐 위험함
-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안내판이 주출입구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어 찾기 어려움
- 안내도의 점형 요철이 낮아 읽기 어려움
- 안내도 옆에 도움호출벨이 있으나 휠체어 사용자가 누르기 힘든 위치(바닥으로부터1.2m)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내직원들이 벨의 유무에 대해 알지 못함

○ 복도 및 통로

- 복도 주위에 화분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어 통행에 불편함
- 층간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1/2층을 계단으로 올라가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휠체어사용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함.

○ 장애인주차구역

- 주차장이 지하1층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의 출입구와 떨어져 있음
- 주차장 바닥면에 흙이 패여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함

《 주요 사례 》

○ 장애인 화장실

- 장애인화장실 앞 복도가 좁아 전동휠체어로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
-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청소용품이 적재되어 있어 사용 불가능
- 장애인화장실 주출입문에 흠이 패여 있어 휠체어사용자 스스로 진입이 불가능함
-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이며, 잠금장치가 없음
- 세면대 아래 놓인 청소용품들로 인해 휠체어 발판부분의 진입이 어려워 세면대 이용이 불가능함

○ 민원접수대

- 접수대 하부공간의 깊이가 얇아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가지 못함

○ 기타

-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에 점자표식이 없음
-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표식이 없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음
- 엘리베이터 앞까지 유도블럭이 없음
-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애인화장실 문 옆에 여자화장실이라고 점자 표기되어 있음
- 자동문 스위치에 점자표기가 없음

2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서식을 접자자료·확대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지 여부, 보조인력 제공여부 민원자동발매기 이용 시 접자, 음성지원 제공 여부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수화통역 등 제공, 보조인력 제공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 적정 높이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접자자료,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확대경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39	113	26	0	81.3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26	22	4	0	84.6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청기,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139	117	22	0	84.2
	-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을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여부	117	98	19	0	83.8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22	14	8	0	63.6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이 적정 높이에 설치됨	139	43	48	48 ⁷⁾	47.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민원자동발매기에 접자, 음성지원 등을 제공	139	37	54	48 ⁷⁾	40.7
	장애인 스스로 민원발매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139	76	1	62 ⁸⁾	98.1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 충족/(충족+미충족)

다. 결과 분석

○ 시각장애인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편의제공

- 시각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요구할 경우 필요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용품(확대경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81.3%에 해당하는 113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9곳(100%), 시·군·구청 66곳(86.8%), 읍·면·주민센터 38곳(70.4%)에서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편의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113개 기관 중 점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40곳(35.4%), 확대문서 12곳(10.6%), 보이스바코드 13곳(11.5%), 확대경 80곳(70.8%)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서비스로 확대경을 구비한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기타 내용에는 IP Relay⁹⁾ 등이 있었음. (편의서비스의 종류는 중복으로 체크 가능)
- 한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이제까지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기관이 13곳(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고 답한 기관은 7곳(26.9%),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 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4곳(15.4%)에서 응답함. 기타의견으로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받아서 시행 할 예정’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26개 기관 중 22곳(15.8%)이 이를 대체할 보조인력을 제공 한다고 응답했으며 시·군·구청 1곳, 읍·면·주민센터 3곳에서는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나 가족과 함께 오기 때문에 보조인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의견이 있었음. 보조인력의 종류에는 안내데스크 직원, 장애인담당직원, 민원담당직원, 자원봉사자가 있었음.
- 시각장애인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보이스바코드기기의 작동법을 직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고장난

7) 민원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민원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 스스로 민원발매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 IP Relay : 청각, 시각 장애인 전화통신 릴레이 서비스

기기를 방치한 경우’ ‘민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접자자료를 진열해 놓은 경우’가 있음.

○ 청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와 수화통역 등 제공 여부

- 청각장애인의 경우 민원접수나 서류발급 등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화상전화, 수화통역 등과 같은 편의서비스를 마땅히 제공받아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해 상기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84.2%에 해당하는 117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9곳(100%), 시·군·구청 67곳(88.2%), 읍·면·주민센터 41곳(75.9%)에서 상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117개 기관 중 화상전화기를 설치한 기관이 67곳(57.3%)으로 가장 많았고, 보청기 30곳(25.6%), 수화통역제공 29곳(24.8%), 기타서비스 14곳(12%)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서비스로는 PC화상캠(웹캠)을 이용한 수화통역서비스, 110콜센터¹⁰⁾, 120콜센터¹¹⁾ 등이 있음. 수화통역제공 방식에는 수화통역사를 기관에서 채용하여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직원 중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었음. 하지만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 기관에서 구비한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이 실제 작동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상기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117개 기관 중 83.8%에 해당하는 98개 기관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19개 기관에서는 고장난 기기를 방치하고 있었음.
- 청각장애인의 행정절차 및 서비스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화상 전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담당직원들이 기기의 사용방

10) 110콜센터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상담 및 안내 제공.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2009년 7월 1일부터 문자 상담 및 수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11) 120콜센터 : 서울, 경기, 제주 및 일부지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써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번호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서비스도 제공함

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음.

○ 민원자동발매기 접근성

- 민원자동발매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휠체어 사용자(지체장애 등)’의 접근성과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됨.
- 민원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65.5%에 해당하는 91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민원자동발매기의 조작 버튼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가 된 기관은 이 중 47.3%에 해당하는 43개 기관으로 나타남.
- 민원자동발매기를 설치한 91개 기관 중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음성지원, 또는 일반버튼방식 등으로 설치한 기관은 37곳(40.7%)이며, 이 중 점자표시 23곳(25.3%), 음성지원 19곳(20.9%), 일반버튼방식 11곳(12.1%)에서 설치함. (민원자동발매기에 설치된 서비스의 종류는 중복으로 체크 가능)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5곳(62.5%), 시·군·구청 26곳(35.1%), 읍·면·주민센터 6곳(66.7%)에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스스로 민원발매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인력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민원자동발매기를 설치한 91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90곳(98.9%)에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높이가 높아 휠체어사용자 스스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민원발급기 이용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의 조작법을 알고 있는 직원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음성지원이 되지만 소리가 작고, 주변 소음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민원자동발매기의 아라비아 숫자의 점자표기가 틀린 경우’, ‘기관 외부에 민원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 높은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사용자의 경우 혼자 진입이 불가능 한 경우’ 등이 있었음.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

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서비스참여를 위해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점자자료 등), 수화통역, 컴퓨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물적 서비스 이외에 보조인력과 같은 인적서비스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편의증진법」 제16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의2 및 시행규칙 제6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휠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 모니터링 결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이행비율은 각 81.3%와 84.2%로 낮은 것은 아니지만, 고장난 기기의 방치, 담당직원의 사용법 미숙, 직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구비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음. 한편, 민원자동발매기를 이용함에 있어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적정 높이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지원 등 제공 항목에서는 이행비율이 각 47.3%, 40.7%로 장애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기초적인 행정절차 및 행정서비스(등·초본 발급, 여권 신청, 세금 조회, 건강검진 등)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해당 기관에 모니터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안내하여 법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러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제까지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였음. 이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해 요청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권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예산상의 문제였음.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가 예산상의 이유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관의 소관부서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 예산담당부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함.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라는 안내판과 컴퓨터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확대 프로그램,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보이스바코드, 음성안내, 화면확대 등을 제공하는 컴퓨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됨
- 음성유도장치의 경우 개인이 리모컨을 지참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 불가능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화상전화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됨

○ 민원자동발매기

- 높이가 높아 휠체어사용자 스스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민원발매기 이용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의 조작법을 알고 있는 직원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음성지원이 되지만 소리가 작고, 주변 소음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 민원자동발매기의 아라비아 숫자의 점자표기가 잘못된 경우
- 기관 외부에 민원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 높은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혼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3 웹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접근성	시각	-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
	지체	-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의 기능 이용가능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확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의 기능 이용
모니터링 기관	139	
충족	121	99
미충족	18	40
이행비율(%)	87.1	71.2

다. 결과 분석

○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확인

- 현재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는 지역의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참여 및 정보 접근성을 위하여 간단한 키보드 사용만으로도 원하는 정보에 접근 가능해야함.
- 게시된 정보들을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웹사이트는 전체 139개 기관 중 87.1%에 해당하는 121개 기관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7곳(77.8%), 시·군·구청 66곳(86.8%), 읍·면·주민센터 48곳(88.9%)에서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키보드만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의 기능 사용 여부
 -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는 각종 민원상담 및 서식발급신청 등을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상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전체 139개 기관 중 71.2%에 해당하는 99개 기관이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민원상담 및 서식발급신청 등의 기능을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도·광역시청 7곳(77.8%), 시·군·구청 52곳(68.4%), 읍·면·주민센터 40곳(75.5%)에서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바,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인 도·광역시, 시·군·구청 및 읍·면·주민센터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의무부과 대상에 포함됨.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검색 및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의 이행비율은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미지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보접근성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공공기관 웹사이트에는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고 각종 서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웹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임. 따라서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해당 의무를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알게 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 장애인 사용자 입장에서 웹사이트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홈페이지 상단 주메뉴만 음성지원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음성지원이 되지 않음
- 이미지 파일에 텍스트 설명 처리를 하지 않아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음.

<5> 모니터링 총평



1 공공기관 시설물 접근성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문 단차제거, 주출입문 통과유효폭과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문 설치, 장애인주차구역,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 층간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화장실 설치, 수평·수직 손잡이와 잠금장치 설치, 대변기 및 세면대 적정높이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전체 모니터링 기관의 80%이상이었으나, 주출입구의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의 유도·안내설비 설치율 43.2%,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49.6%,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28.1%로 매우 낮게 나온바, 장애인의 원활한 공공기관 이용을 위해 이 부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편의시설의 관리미비,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피모니터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야함.
- 기관유형별로는 읍·면·주민센터, 시·군·구청, 도·광역시청 순으로 미흡하였음.
- 시설 접근성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설접

근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모니터링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을 독려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함.

2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139개 기관 중 81.3%,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서비스나 필요한 용품(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84.2%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었음. 이행비율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한 편의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비장애인과 같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음. 장애인들이 자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여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장애인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의 사용법을 담당직원들이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음.
- 또한 민원발매기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장애인이 스스로 민원발매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관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제공 이행비율의 경우 도·광역시청은 100%로 가장 높은 이행비율을 보였고, 시·군·구청은 86.8%, 읍·면·주민센터는 70.4%로 나타남.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제공 이행비율의 경우 도·광역시청은 100%, 시·군·구청은 88.2%, 읍·면·주민센터는 75.9%로 나타났으며, 점자, 화상전화기 등의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대다수 기관에서 보조인력을 제공한다고 답하였음.
- 각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점자, 확대문자, 수화통역 등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와 보조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3 공공기관 웹 접근성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전체 공공기관 웹사이트 중 키보드사용만으로 게시된 정보를 확인 가능한 기관은 87.1%, 민원상담 및 서식발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71.2%로 높은 이행비율을 보였음.
- 그러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타 의견으로 이미지 파일의 텍스트 처리, 동영상의 자막 또는 수화 안내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시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향후 장애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6> 사후 조치 및 향후 계획



-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피모니터링 기관에 각 영역별 개선사항 통보 후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독려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
- 결과발표회를 통한 홍보효과 재고
 - 11월~12월 초, 모니터링 실시 권역별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유도
- 개선 협의 불응 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검토
 -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개선에 불응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권고 절차 진행 검토

<7>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및 회신 등 개선사항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가. 수신자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주광역시, 전주시장,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창원시장, 경상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전라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구미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울진군수, 예천군수

제목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공공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결과 협조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 5월에는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을, 7월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피모니터링 공공기관, 청소년활동시설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붙임 참조) 등을 2013. 10. 28.(월)까지 우리 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신 등 개선 사항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도·광역시청		
	①도청	-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예산확보 이후 민원접수대 및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②도청	- 서편 주출입구 및 중앙로비 전면에 점형블럭 설치 완료 - 중앙로비 주안내판 아래 점자안내판 설치 완료 - 화장실 출입구 전면 점형블럭 및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설치 완료 - 2014년 신 도청 이전 시 관련규정 검토 후 접수대 하부공간 마련 예정 - 비상경보등 추후 설치 예정	
	③도청	- 별도의 민원접수대 설치 예정(2014년 1월) - 2006년도에 설치한 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설치자인 전주시와 협의하여 교체 예정	
	④시청	- 2012년 10월부터 장애인우선 상담석을 마련하여 시행중	
	⑤시청	- 대변기관 문 개폐방향 개선 및 세면대 적정높이에 대해 청사 관리 부서에 해당내용 통보하였고, 빠른 시일 내 규정에 맞게 보수토록 요청함	
	⑥시청	- 민원실 주출입구 전면에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2014년 상반기) -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민원자동발매기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도움 필요 시 상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개선토록 조치 예정(2014년)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⑦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위한 민원접수대 별도 운영중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3년 12월) - 민원자동발매기 음성지원서비스 제공 예정(2013년 11월) - 예산 확보 후 점자 및 음성 지원 가능한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⑧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추후 리모델링 시 예산 확보 후 접수대 하부공간 보수 예정 - 향후 민원자동발매기 교체 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발급기로 교체 예정 		
	⑨시청	- 민원접수대 관계부서와 협의 후 개선 추진 예정		
	시·군·구청			
	①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말 2015년도 예산 편성 요청 후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마련 예정 - 2014년 예산 편성시 비상경보등 교체 설치 예산 요청 - 민원자동발매기 교체 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추진 		
	②구청	- 관련항목 모두 이행하여 개선할 사항 없음		
	③구청	- 추후 예산확보 후 민원접수대 교체 예정		
	④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기에 비데설치로 적정높이 충족 - 민원접수대 신규 설치 - 확대경 설치 완료 - 화상전화기 설치 완료(작동점검 완료) - 추후 민원자동발매기 구매시 적정 높이의 기기 구매 예정 - 민원자동발매기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보조인력 상시 대기 		
	⑤구청	- 정문 옆 휠체어 사용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임시로 보건소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금년 내 주출입구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 설치 예정(2015년 9월 예정)		
	⑥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 민원접수대 및 민원자동발매기 담당부서에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의뢰함 		
⑦구청	- 민원자동발매기 관련 부서에 알렸으며 개선 예정			
⑧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민원접수대 하부공간확보 건에 대해 청사관리부서에 협조를 구하여 법적기준에 맞게 2014년 상반기까지 시정 조치함 - 현재 화상전화기 및 보이스아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인력이 제공됨 - 2014년 민원자동발매기 구매 계획이 있으며, 구매 시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기기로 구매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⑨구청	-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음 - 현재 접수대 해당업체 견적을 받고 있으며, 견적이 나오는 대로 2014년 예산 반영 후 보수 예정 - 무인발급기 2014년 하반기 교체 예정 - 2013년 9월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⑩구청	-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공사 진행 (2014년 1월 예정)	
	⑪구청	- 관련항목 모두 이행하여 개선할 사항 없음	
	⑫구청	- 장애인전용 민원접수대 개설(2014년 상반기) - 점자보드와 음성지원이 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 예정 (2013년 10월) - Tab키를 이용하여 주요메뉴 바로가기링크가 보이도록 조치 (2013년 11월)	
	⑬구청	- 본관 및 제1,2별관 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 장애인화장실 세부기준 개선 예정(2013년 말까지) - 향후 예산 적극 검토하여 민원접수대 및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 웹 접근성 미비사항 즉시 시정	
	⑭구청	-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주출입구에서 안내를 도움 (2014년 점자안내판등 설치 예정) - 장애인화장실내부 하수배관 보호캡을 제거하여 적정 공간 확보 완료	
	⑮구청	- 개선계획 미회신	
	⑯구청	- 개선계획 미회신	
	⑰구청	- 개선계획 미회신	
	⑱구청	- 개선계획 미회신	
	⑳구청	- 개선계획 미회신	
	㉑구청	- 개선계획 미회신	
	㉒구청	- 개선계획 미회신	
	㉓구청	- 개선계획 미회신	
	㉔구청	- 향후 민원자동발급기 신규 설치 시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발급기 설치 계획	
㉕구청	- 장애인화장실내 손잡이 교체 완료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㉔구청	- 대변기간 문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조치 완료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완료 - 적정 민원접수대 설치 예정(2013년 12월) - 화상전화기 설치 완료	
	㉕구청	- 주출입구에 촉지도식안내판 설치 완료 - 회계과 예산편성 후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예정 - 시설정비담당과 협의하여 민원접수대 설치 예정 - 확대경, 보청기, 화상전화기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시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음성, 점자 모듈지원 다기능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예정(2014년)	
	㉘시청	- 예산확보 후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㉙시청	-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완료 - 2014년도 예산 반영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교체 예정	
	㉚시청	- 주출입구 단차 및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장애인화장실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및 대변기간 출입구 보수 예정(2014년 상반기) -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 추진중	
	㉛시청	- 장애인을 위한 민원접수대 별도 운영중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3년 12월까지) - 민원자동발매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항시 대기하여 안내 실시 - 민원자동발매기 음성지원 서비스 실시 예정(2013년 11월 중)	
	㉜시청	- 2014년 회계과와 협의하여 현 청사에 맞게 촉지도식 안내판 재설치 계획 - 향후 화장실 보수 시 세면대 하부공간을 개선할 예정 - 장애인용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2013년 하반기)	
	㉝시청	- 장애인화장실 대변기간 내부 공간 보수 계획(2013년 11월 중)	
	㉞시청	- 예산확보 및 해당부서와 상호협조 체계 구축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4년 10월) - 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예정(2014년 10월) - 민원접수대 높이,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10월)	
	㉟군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개선 예정 - 접수대 개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㉞구청	- 화장실 문 개폐방향 및 세면대 하부공간 개선 예정(2014년) - 민원실 정비 시 접수대 높이 조정(2014년)	
	㉟구청	- 종합민원과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구입 후 설치 예정(2013년)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비치 완료	
	㊱구청	- 주출입구 양쪽 문을 상시 개방하여 휠체어 통과유효폭 확보 - 간이 민원접수대 설치 예정 - 2014년 예산 반영하여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㊲구청	- 주출입구 음성안내 유도기 구비되어 있음 - 주출입구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도움벨 설치 완료 - 화장실 문 잠금장치 수리 완료(2013년 8월) -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완비(2013년 9월)	
	㊳구청	- 2014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점자안내판(촉지도) 설치 예정 - 민원발매기 화면이 터치식 화면이라 점자 부착은 불가하며, 도움벨 또는 행정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이용 시 상시 보조하도록 함	
	㊴구청	- 민원자동발매기에 행정도우미 상시 근무 및 안내	
	㊵구청	- 현재 2014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청사 리모델링 중이며 미충족문항(층간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화장실, 접수대)을 반영할 예정 - 안내창구에 확대경 및 보청기를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요청 시 PC를 이용한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이용가능 - 2014년도 민원신청서 제작 시 점자 자료 제공 예정 - 추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시 개선할 예정	
	㊶구청	- 예산반영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적정 접수대 설치 예정	
	㊷구청	-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개선 완료 - 민원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개선 예정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2014년 예산 반영하여 민원자동발매기 개선 예정	
	㊸구청	- 예산확보 및 해당부서와 상호협조 체계 구축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4년 10월) - 민원접수대 높이,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10월)	
㊹구청	- 예산확보 및 해당부서와 상호협조 체계 구축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4년 10월) - 민원접수대 높이,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10월)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㉗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부분은 철거 후 신규 설치 또는 인터리어 개선공사 등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시설 개선 시 위 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할 예정 -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상담 및 서식발급신청이 가능토록 접수대 개선 시 일괄개선 예정 	
	㉘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예산 반영하여 상반기 중 촉지도식 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예정 - 2014년도 예산 반영하여 대변기 높이 보수 및 잠금장치 설치 예정 	
	㉙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예산 확보 후 대변기 및 대변기칸 문 개선 예정 - 2011년도에 민원접수대 공사를 시행한바, 추후 예산 확보 후 개선 예정 - 2015년 예산 확보 후 민원자동발매기 구입 계획 - 2015년 웹사이트 전면 재구축 계획 	
	㉚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예산 반영 후 세면대 및 접수대 개선 예정 	
	㉛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접수대 개선 및 비상정보등 설치(2013년 12월) - 민원자동발매기 교체 예정(2015년), 이전에는 보조인력 제공 	
	㉜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민원접수대 깊이 조정할 예정 - 점자자료 서식 제공 및 구술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구술전자민원서비스'를 실행 중 -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중 - 민원자동발매기에 음성안내기능과 장애인용 키패드 도입 - 휠체어 사용자들이 민원자동발매기를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정하는 것은 향후 교체 시 적극 검토할 예정 - 웹접근성 개선 및 품질마크 획득(2013년 10월) 및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㉝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예산 확보 후 세면대 교체 공사 추진 	
	㉞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봉사과 접수대에 장애인전용창구를 만들어 하부공간 확보 완료(2013년 11월) 	
	㉟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완료(2013년 10월) 	
	㊱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완료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완료 - 향후 민원자동발매기 교체 시 음성지원 및 점자키패드 반영된 발급기 구입 예정 	
	㊲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㊳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책상(접수대) 설치 완료 - 2014년도 민원실 개선 시 민원자동발매기 보수 계획 	
	㊴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 건립 시 접수대 및 민원자동발매기 보수 계획 반영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구청	- 화장실 내부 대변기칸 깊이 개선 예정(2014년) - 대변기칸 문을 미닫이문으로 교체 검토(2014년)	
	㉡구청	- 장애인이 방문 시 1층 주민복지과 옆 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구청	- 점형블럭 교체 완료 - 청사 증축 시 층간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및 접수대 보수 검토 예정 - 민원자동발매기 교체 구입 시 검토 예정	
	㉣구청	- 대변기칸 문 보수 예정(2013년 11월) - 2014년도 예산 확보 후 점자자료, 보이스바코드, 확대경 등 제공 예정	
	㉤구청	- 본관 및 신관입구 2개소 점자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민원접수대 1개소 개선 조치 예정(2014년 상반기) - 2014년 청사설비 검토 후 점멸식 비상경보등 적용 예정 - 무인민원발매기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키패드 설치 예정(2016년)	
	㉥구청	- 잠금장치 보수 완료 - 2014년 예산 반영하여 접수대 하부공간 보수 조치 - 2014년 예산 반영하여 휠체어 접근 가능한 민원자동발매기 교체	
	㉦구청	- 장애인화장실 3개소 내부 보완공사 예정(2013년 11월 중)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검토 중 - 점멸식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3년 11월 중)	
	㉧구청	-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 - 민원자동발매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보조인력 제공 - 웹접근성 인증 획득	
	㉨구청	-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용 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장애인화장실 내부 보완공사 예정(2014년 상반기) - 민원자동발매기에 점자 및 음성지원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개선방법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장기 검토 후 보완 예정 - 웹사이트 보완 예정(2013년 12월)	
	㉩시청	- 관련항목 모두 이행하여 개선할 사항 없음	
	㉪구청	- 추경예산 확보하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 세면대 하부공간 개선 예정(2013년 12월) - 2014년 추경예산 확보하여 민원접수대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구청	- 추후 예산 확보하여 접수대 및 민원자동발매기 개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출입구에 점형블럭 설치 완료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웹사이트 팝업존 및 배너이미지 등의 이미지 태그 수정 완료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점형블럭, 접수대, 비상경보등 등을 설치할 계획 -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확대경 및 보청기 등을 일괄 구입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보급할 계획 - 예산 확보 후 민원자동발매기에 점자표시 등을 설치할 계획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9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완료 - 화장실을 개조하여 내부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예정 - 이동형 세면대이므로 높이 및 깊이 조정할 계획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설비 사용법 직원교육 실시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제거 및 음성안내장치 등 조사 후 개선(2014년 6월)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내부 회전공간 확보 개선(2014년 6월) - 민원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 확대경 및 보청기 비치(2014년 2월)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하는 지역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지역은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교체 예정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2014년 6월)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수평·수직손잡이, 대변기칸 출입구 통과유효폭, 내부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적정 대변기 및 세면대 설치 예정(2014년 6월)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2014년 6월) - 확대경 등 설치(2013년 11월) -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는 곳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곳은 점차적으로 교체 예정 		
	읍·면·주민센터			
	①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미확보 및 장소 협소로 인하여, 추후 예산 확보 시 시설접근성 및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②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추경예산 및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주출입구, 장애인화장실 등 모든 미비사항을 구청에 보고 예정 			
③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앞 점자표시,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접수대 설치 및 정당한 편의서비스 제공은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구와 협의 예정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운영중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④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검토(2014년 12월까지) - 장애인 민원창구 보수 검토(예산확보 후 즉시 개선) - 확대경 구입(2014년 12월)	
	⑤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경 제공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	
	⑥주민센터	- 예산확보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 예산확보 후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및 문 개폐방향 보수 예정 - 예산확보 후 편의물품 구비 예정	
	⑦주민센터	- 2013년 12월 예산 편성 후 2014년 초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및 접수대 보수 예정	
	⑧주민센터	- 주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 점형블럭 보수 완료 - 예산확보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예정 - 예산확보 후 접수대 및 비상경보등 개선 예정 - 확대경 구비 예정 - 화상전화기 설치 완료	
	⑨주민센터	- 민원접수대 개선 예정(2014년) - 민원자동발매기를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토록 점차적으로 교체 예정	
	⑩주민센터	- 점멸식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및 확대경 설치 예정(2014년 6월) - 웹사이트 개선 요청 예정(2013년 12월)	
	⑪주민센터	- 장애인화장실 잠금장치 개선(2013년 12월 완료) - 2014년 추경예산 확보 후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설치·운영	
	⑫주민센터	- 복도에 있는 휴지통, 화분 등 제거 조치 완료 - 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 - 청사 이전 시 장애인화장실 및 접수대 미비사항 개선 예정 - 예산 확보 이후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⑬주민센터	- 예산 확보 이후 민원자동발매기 및 접수대 개선 예정	
	⑭주민센터	- 주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	
	⑮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⑯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 예산 확보 이후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⑰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 예산 확보 이후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⑱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 - 예산 확보 이후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⑲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 예산 확보 이후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⑳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 복도 휴지통, 화분 등 제거 조치 완료 - 예산 확보 이후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㉑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 복도 휴지통, 화분 등 제거 조치 완료 - 예산 확보 후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㉒주민센터	- 예산확보 후 경사로 설치 예정 - 예산 확보 이후 민원자동발매기 설치 예정	
	㉓주민센터	- 화장실 내부 유효공간이 휠체어 회전에 충분함	
	㉔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	
	㉕주민센터	- 예산 확보 후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예산 반영 후 층간 편의시설 설치 예정 - 대변기 손잡이 설치 완료	
	㉖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예정 - 예산확보 후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보수 예정 - 예산확보 후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보수 예정	
	㉗주민센터	- 관련항목 모두 이행하여 개선할 사항 없음	
	㉘주민센터	- 주출입구 단차제거 완료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예정 - 화장실 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완료 - 예산확보 후 세면대 및 접수대의 높이와 하부공간 보수 예정	
	㉙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민원접수대 설치 예정(2014년 9월)	
㉚주민센터	- 민원접수대 및 비상벨 설치 예정(2014년 6월)		
㉛주민센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㉜주민센터	- 2014년도 예산 확보하여 촉지도식 점자안내판 설치 계획 - 2014년도 예산 확보하여 민원접수대 교체 계획 - 장애인 전용컴퓨터 시설 및 대체입력장치(볼마우스, 한손키보드, 터치스크린) 검토 후 구입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③주민센터	- 주후 환경 정비 시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검토 예정 - 남자화장실 설치 완료, 여성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상태이며, 여성장애인 이용 시 여직원 보조 - 민원상담 시 접수대 안팎에서 보조인력 배치 - 1:2 민원상담 실시 - 기존 장애인행정도우미 정보이용실 근처에 항시 배치	
	④주민센터	- 주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세면대 하부공간, 민원접수대,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2014년 예산 편성)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계획(2014년 예산 편성)	
	⑤주민센터	- 2014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면적이 협소하여 여자장애인화장실 설치가 불가함. 따라서 추후 예산 및 면적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민원실 뒤 쪽 화재경보기 설치함	
	⑥주민센터	- 2014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화장실 대변기간 문 개폐방향 및 폭 조정 - 청사 정비 시 접수대 폭 조정	
	⑦주민센터	-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및 통과유효폭 개선 예정 - 예산확보 후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	
	⑧주민센터	- 2014년 추경예산 확보 후 경사로 설치 예정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 회전문 대신 별도의 문 설치 예정(2014년) - 민원접수대 설치 예정(2014년)	
	⑨주민센터	- 2014년 추경예산 확보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2014년에 층간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 - 2014년 장애인화장실 및 민원접수대 설치 예정	
	④⑩주민센터	- 추후 예산확보 시 장애인화장실 점형블럭 및 손잡이 설치 점차적으로 개선할 예정 - 웹접근성 담당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추후 개선토록 할 예정	
	④①주민센터	- 예산확보 후 대변기간문 개폐방향 보수 및 접수대 개선 예정 - 웹접근성 담당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추후 개선토록 할 예정	
	④②주민센터	- 2014년 예산 확보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 - 민원접수대 일부 하부공간 개선 예정 - 비상벨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웹사이트 이미지 정보에 대한 부분 확인 중 - 기타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추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개선 예정	
④③주민센터	- 2014년 청사 이전 시 주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 미비사항 개선 예정 - 웹사이트 이미지 정보에 대한 부분 확인 중 - 기타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추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개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점자자료, 확대문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민원자동발매기 조작버튼의 높이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조인력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민원상담 가능여부 	㉔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청사 이전 시 주출입구, 장애인화장실, 민원접수대 개선 예정 - 웹사이트 이미지 정보에 대한 부분 확인 중 - 기타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추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개선 예정 	
	㉕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출입구에 점자안내판 및 접수대 하부공간확보 및 비상경보등을 설치할 계획 -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확대경 및 보청기 등을 일괄구입 하여 보급할 예정 	
	㉖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설치 및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계획 -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확대경 및 보청기 등을 일괄구입 하여 보급할 예정 	
	㉗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출입구에 점자안내판 및 비상경보등을 설치할 계획 - 화장실 점형블럭 설치 예정 	
	㉘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배율 돋보기 비치 - 점자안내책자 2013년 11월중 비치할 예정 	
	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화장실 수직손잡이 설치 (2013년 8월) 	
	㉚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복지관에 통보함 	
	㉛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 장애인화장실 내 점형블럭,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개선 예정(2014년 6월)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㉜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㉝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 장애인화장실 내 수평·수직손잡이, 내부 출입구 통과유효폭,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개선 예정(2014년 6월)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 장애인 편의서비스 조사 후 개선 예정(2014년 6월) 	
㉞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내부 출입구 통과유효폭,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개선 예정(2014년 6월)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6월) - 민원발급기 설치 예정 		

〈8〉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음(2cm이하)		<input type="checkbox"/> 1-1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차높이 ___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input type="checkbox"/> 1-2, 1-3, 1-4	<input type="checkbox"/> 1-5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면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1-2.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작동 가능함				*작동 모습 사진 첨부
	1-3. 경사도가 있는 경우 기울기	높이 : _____ 길이 : _____ 기울기(높이/길이*100) : _____			
	1-4. 경사도가 있는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 손잡이가 설치된 곳 <input type="checkbox"/> 양쪽 측면 <input type="checkbox"/> 한쪽 측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1-5. 다른 출입구를 통해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당 출입구의 단차제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 다른 출입구의 예: 민원실, 후문 등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0.8m이상)				* 통과유효폭 ___m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음(1.2m이상)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문) 간의 거리 _____m
	4.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input type="checkbox"/> 4-1			
	4-1. 설치된 점형블럭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4-2		* 사진 첨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4-2. 화분이나 깔판 등으로 유도블록이 덮여 있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				
	5.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 5-1 (음성 안내 장치인 경우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촉지도식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5-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5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6.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자동문 <input type="checkbox"/> 여닫이문 <input type="checkbox"/> 미닫이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8.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1.2m이상)	☞ 8-1			* 유효폭 _____m
	8-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으로 통로 유효폭이 좁혀져 있음				* 유효폭 확보를 위해 복도 및 통로를 좁히는 의자, 화분 등을 치울 것을 요청
9.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경우, 시설 내 층 간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9-1			* 행정절차 및 서비스가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1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9-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 작동 가능함				*작동 모습 사진 첨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10.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10-1.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	
	11.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 11-1		/	
	11-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음			/	* 사진 첨부
	12.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모두 있음	하나만 있거나 없음	/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13.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 이상임			/	* “아니오”인 경우 너비 _____m
	14.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 _____m - 깊이 _____m
	15.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 이상, 0.45m이하”임			/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_____m
	16. 화장실 대변기 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	
	17.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8.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휠체어에 앉아 사용하기에 적절함			/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9.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0. 민원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음(0.7m 이상 0.9m 이하)			/	* 접수대높이 _____m
	21. 민원접수대 하부공간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음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	* 높이 _____m * 깊이 _____m
	22.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			/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행정절차 및 서비스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23. 시각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용품(확대경 등)을 제공함(예: 여권발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볼 것		☞ 23-1 과 23-2 모두 기입 요망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자료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서 <input type="checkbox"/> 보이스바코드 <input type="checkbox"/> 확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3-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대독 등)이 제공되고 있음				* 보조 인력의 종류 _____
	23-2. 제공하지 않는 이유	<input type="checkbox"/>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 청각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 수화통역 등을 제공함	☞ 24-1	☞ 24-2 과 24-3 모두 기입 요망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되고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보청기 <input type="checkbox"/> 수화통역 <input type="checkbox"/> 화상전화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1.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이 실제 작동 가능함				
	24-2.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필담 등)을 제공함				* 보조 인력의 종류 _____
	24-3. 제공하지 않는 이유	<input type="checkbox"/>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민원자동발매기 관련				*자동발매기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5. 민원자동발매기 조작 버튼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음 (0.4m 이상 1.2m 이내)				* 발매기 높이 _____ ~ _____ m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26. 민원자동발매기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				* 설치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점자표시 <input type="checkbox"/> 음성지원 <input type="checkbox"/> 일반버튼방식
	27. 장애인 스스로 민원발매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이 제공됨				* 장애인 스스로 민원발매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없음” 표기
홈페이지 사용 및 정보제공	28.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홈페이지 상 게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9.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민원상담, 서식발급신청 등 홈페이지 상 기능 이용 가능함				

<9>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



(1) 서울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4	22 (경사로:8)	1	1	95.7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4	24	0	0	10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4	24	0	0	100.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24 (훼손여부:1)	0	0	100.0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24	16	8	0	66.7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16	3	0	13	100.0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17	17	0	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4	24	0	0	100.0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복도 및 통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4	24	0	0	100.0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4	23	1	0	95.8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4	21	0	3	100.0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4	23 (남녀구분:20)	1	0	95.8
	접형블럭 설치(접형블럭 훼손여부)	24	23 (훼손:3)	0	1	100.0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24	22	1	1	95.7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24	23	0	1	100.0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길이 1.8m 이상)	24	19	4	1	82.6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4	20	3	1	87.0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4	19	4	1	82.6
	잠금장치 정상 작동	24	22	1	1	95.7
	적정 세면대 높이	24	18	4	2	81.8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4	17	5	2	77.3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24	20	4	0	83.3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길이 0.45m 이상)	24	5	19	0	20.8
	접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24	21	3	0	87.5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24	20	4	0	83.3
	보청기, 수화통역 등 제공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실제 작동가능)	24	23 (작동가능:18)	1	0	95.8
	적정 민원자동발매기높이(0.4m~1.2m)	24	8	16	0	33.3
	민원자동발매기 시각장애인 이용가능 여부	24	3	21	0	12.5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상 게시된 정보 확인	24	17	7	0	70.8
	시각장애인의 민원상담, 서식발급 신청 가능	24	13	11	0	54.2

(2) 대전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16	15 (경사로 :5)	1	0	93.8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16	15	1	0	93.8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6	14	2	0	87.5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6	13 (훼손:1)	3	0	81.3
	접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16	6	10	0	37.5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6	2	0	4	100.0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11	4	7	0	36.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16	8	8	0	50.0
복도 및 통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16	14	2	0	87.5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14	14	0	0	100.0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16	4	2	10	66.7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16	16 (남녀구분:5)	0	0	100.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6	9 (훼손:4)	7	0	56.3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16	12	4	0	75.0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16	12	4	0	75.0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6	9	7	0	56.3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16	15	1	0	93.8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6	12	4	0	75.0
	잠금장치 정상 작동	16	12	1	3	92.3
	적정 세면대 높이	16	11	5	0	68.8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16	14	2	0	87.5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16	10	6	0	62.5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16	6	10	0	37.5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16	3	13	0	18.8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16	5	11	0	31.3
	보청기, 수화통역 등 제공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실제 작동가능)	16	8 (작동가능:7)	8	0	50.0
	적정 민원자동발매기높이(0.4m~1.2m)	16	3	5	8	37.5
	민원자동발매기 시각장애인 이용가능 여부	16	7	1	8	87.5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상 게시된 정보 확인	16	16	0	0	100.0
	시각장애인의 민원상담, 서식발급 신청 가능	16	12	4	0	75.0

(3) 제주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0	17 (경사로:5)	3	0	85.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0	20	0	0	10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0	20	0	0	100.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0	19 (훼손:0)	1	0	95.0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20	5	15	0	25.0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5	0	0	5	0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2	1	1	0	5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0	20	0	0	100.0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복도 및 통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0	16	4	0	80.0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16	14	2	0	87.5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0	3	4	13	42.9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0	19 (남녀구분:13)	1	0	95.0
	접형블럭 설치(접형블럭 훼손여부)	20	12 (훼손:0)	7	1	63.2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20	18	1	1	94.7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20	16	3	1	84.2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길이 1.8m 이상)	20	17	2	1	89.5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0	19	0	1	100.0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0	15	4	1	78.9
	잠금장치 정상 작동	20	16	3	1	84.2
	적정 세면대 높이	20	15	3	2	83.3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0	14	4	2	77.8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20	18	2	0	90.0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길이 0.45m 이상)	20	12	8	0	60.0
	접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20	16	4	0	80.0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20	18	2	0	90.0
	보청기, 수화통역 등 제공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실제 작동가능)	20	19 (작동가능:18)	1	0	95.0
	적정 민원자동발매기높이(0.4m~1.2m)	20	4	3	13	57.1
	민원자동발매기 시각장애인 이용가능 여부	20	4	3	13	57.1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상 게시된 정보 확인	20	20	0	0	100.0
	시각장애인의 민원상담, 서식발급 신청 가능	20	20	0	0	100.0

(4) 부산권역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4	24 (경사로:2)	0	0	100.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4	24	0	0	10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4	23	1	0	95.8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23 (훼손:4)	1	0	95.8
	접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24	15	9	0	62.5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15	5	0	10	100.0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12	11	1	0	9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4	24	0	0	100.0
복도 및 통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4	24	0	0	100.0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4	21	3	0	87.5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4	21	2	1	91.3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4	24 (남녀구분:20)	0	0	100.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22 (훼손:0)	2	0	91.7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24	21	3	0	87.5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24	23	1	0	95.8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4	18	6	0	75.0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4	22	2	0	91.7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4	21	3	0	87.5
	잠금장치 정상 작동	24	21	3	0	87.5
	적정 세면대 높이	24	18	2	4	90.0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4	15	5	4	75.0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24	21	3	0	87.5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24	1	23	0	4.2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24	14	10	0	58.3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24	22	2	0	91.7
	보청기, 수화통역 등 제공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실제 작동가능)	24	23 (작동가능:19)	1	0	95.8
	적정 민원자동발매기높이(0.4m~1.2m)	24	13	11	0	54.2
	민원자동발매기 시각장애인 이용가능 여부	24	14	10	0	58.3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상 게시된 정보 확인	24	24	0	0	100.0
	시각장애인의 민원상담, 서식발급 신청 가능	24	16	8	0	66.7

(5) 대구권역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7	10 (경사로:16)	17	0	37.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7	26	1	0	96.3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7	27	0	0	100.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7	26 (훼손:2)	1	0	96.3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27	9	18	0	33.3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9	3	0	6	100.0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5	5	0	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7	27	0	0	100.0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복도 및 통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7	27	0	0	100.0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7	23	4	0	85.2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7	15	3	9	83.3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7	23 (남녀구분:19)	4	0	85.2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7	20 (훼손:2)	3	4	87.0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27	21	2	4	91.3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27	22	1	4	95.7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7	19	4	4	82.6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7	21	2	4	91.3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7	19	4	4	82.6
	잠금장치 정상 작동	27	18	1	8	94.7
	적정 세면대 높이	27	20	1	6	95.2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7	17	4	6	81.0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27	23	4	0	85.2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27	9	18	0	33.3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27	10	17	0	37.0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27	25	2	0	92.6
	보청기, 수화통역 등 제공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실제 작동가능)	27	21 (작동가능:19)	6	0	77.8
	적정 민원자동발매기높이(0.4m~1.2m)	27	5	11	11	31.3
	민원자동발매기 시각장애인 이용가능 여부	27	5	11	11	31.3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상 게시된 정보 확인	27	26	1	0	96.3
	시각장애인의 민원상담, 서식발급 신청 가능	27	24	3	0	88.9

(6) 광주권역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8	25 (경사로:8)	2	1	92.6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8	27	1	0	96.4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8	27	1	0	96.4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8	26 (훼손:3)	2	0	92.9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28	9	19	0	32.1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9	2	1	6	66.7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12	12	0	0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8	22	6	0	78.6
복도 및 통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8	26	2	0	92.9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6	21	5	0	80.8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8	9	6	13	60.0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8	23 (남녀구분:11)	5	0	82.1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8	16 (훼손:1)	7	7	69.6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28	16	7	5	69.6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28	19	4	5	82.6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8	16	7	5	69.6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8	22	1	5	95.7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8	20	3	5	87.0
	잠금장치 정상 작동	28	13	3	12	81.3
	적정 세면대 높이	28	17	4	7	81.0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8	16	4	8	80.0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28	25	3	0	89.3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길이 0.45m 이상)	28	6	22	0	21.4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28	6	22	0	21.4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28	23	5	0	82.1
	보청기, 수화통역 등 제공 (보청기, 화상전화기 등 실제 작동가능)	28	23 (작동가능:17)	5	0	82.1
	적정 민원자동발매기높이(0.4m~1.2m)	28	10	2	16	83.3
	민원자동발매기 시각장애인 이용가능 여부	28	4	8	16	33.3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상 게시된 정보 확인	28	18	10	0	64.3
	시각장애인의 민원상담, 서식발급 신청 가능	28	14	14	0	50.0

과제 2.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의료기관의 시설접근성, 의료행위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웹접근성 모니터링
 - 가. 의료기관 시설 접근성
 - 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다. 의료기관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2 모니터링 목적

-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상담, 관련 서식 제공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 접근성 및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함.

3 모니터링 기간

- 2013. 6. 10. ~ 2013. 7. 7.

4 모니터링 대상

-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의료행위자와의 의사소통 및 관련 서식의 접근·이용 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정보통신·의사소통의 단계적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병원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되, 병원규모,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으로 선정
- **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내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된 병원
- **한방병원** :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기관으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병원
- **요양병원** :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기관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병원
- **치과병원** : 치과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기관으로,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등 『의료법 시행규칙』상 요구되는 시설요건을 갖춘 병원
- **병원** :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기관으로, 입원환자 30명 이상 수용하는 병원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 병원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종합병원	36	3	2	10	5	9	7
한방병원	26	7	1	6	3	9	0
요양병원	45	4	7	17	2	8	7
치과병원	22	8	2	7	2	3	0
병 원	27	1	3	6	12	0	5
계	156	23	15	46	24	29	19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58명 참가: 장애인 참가비율 67.1%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여 현황〉

(단위: 명)

지역	계	장 애 유 형				
		비(非)장애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
서울	23	10	4	7	2	0
대전	20	3	14	2	0	1
제주	22	4	16	0	2	0
부산	27	9	15	1	1	1
대구	37	17	15	3	2	0
광주	29	9	16	3	1	0
계 (비율)	158 (100)	52 (32.9)	80 (50.6)	16 (10.1)	8 (5.1)	2 (1.3)

〈2〉 모니터링 추진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모니터링 대상 기관 사전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6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병원) 선정
- 6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계획안 보고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 시	장 소	주관
서울	2013. 6. 11.(화) 10: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장애 차별 조사1과
대전	2013. 6. 10.(월) 14:00	대전 장애인 인권포럼 회의실	
제주	2013. 6. 14.(금) 14:00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	
부산	2013. 6. 5.(수) 14: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부산 인권 사무소
울산	2013. 6. 7.(금) 16: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장	
창원	2013. 6. 12.(수) 14:00	경남 장애인차별 상담네트워크 교육장	
대구	2013. 6. 3.(월) 14:00	대구인권사무소 배움터	대구 인권 사무소
경북북부 (상주, 문경, 예천)	2013. 6. 4.(화) 11: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 사무실	
경주	2013. 6. 4.(화) 15: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사무실	
포항	2013. 6. 5.(수) 11:00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울진	2013. 6. 5.(수) 14: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사무실	
구미	2013. 6.14.(금) 11:00	구미시 형곡동	
광주	2013. 6. 4.(화) 14:00	광주인권사무소 배움터	
전주	2013. 6. 5.(수) 14:00	중증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센터	광주 인권 사무소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선정 배경 및 관련 규정 설명
- 의료기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 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모니터링 대상 기관 목록 협조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협조 요청(2013. 5. 27.)

- 모니터링 대상 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
 - 4개 권역 156개 모니터링 대상 의료기관(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병원) 협조 요청(2013. 6. 11.)
- 현장 방문 전 대상 기관별로 유선 연락 및 담당자 내정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로 현장 모니터링 월 2회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단위 : 기관당 조별 체크리스트 1부, 개인별 보고서 1부 제출
- 권역별 담당자 : 모니터링 단원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및 활동보고서 취합 후결과 보고서 작성

바.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의료기관정책과에 발송,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 기관 협의 진행(2013. 9. 24.)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의료기관 시설 접근성

-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접수대,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진료 및 상담·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점자 및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다. 의료기관 웹 접근성

- 장애인의 의료기관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높이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유무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확대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지 여부 · 자신의 진료순서를 알 수 있는 음성알림 등의 장치 유무, 보조인력제공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진료 및 상담에 필요한 기기·수화통역 제공 여부 · 자신의 진료순서를 알 수 있는 전광판 등의 장치 유무, 보조인력 제공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지체	

3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나.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
-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라. 기 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이라 함) 제7조(대상시설)
- 「편의증진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 제16조(시설 이용 상의 편의제공)
-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4> 모니터링 결과 분석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높이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설치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유무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156	142 ¹²⁾ (경사로:55)	11	3 ¹³⁾	92.8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156	150	6	0	96.2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56	134	22	0	85.9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73	71	2	0	97.3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56	100 (훼손:8)	56	0	64.1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56	48	108	0	30.8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16	15	1	0	93.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156	128	28	0	82.1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156	150	6	0	96.2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150	135	15	0	90.0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156	146	2	8 ¹⁴⁾	98.6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156	69	87	0	44.2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156	31	125	0	19.9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156	65	91	0	41.7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156	129 (남녀구분:97)	27	0	82.7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56	80 (훼손:7)	49	27 ¹⁵⁾	62.0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156	111	18	27 ¹⁵⁾	86.0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156	111	18	27 ¹⁵⁾	86.0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56	105	24	27 ¹⁵⁾	81.4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156	112	17	27 ¹⁵⁾	86.8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56	103	26	27 ¹⁵⁾	79.8
	잠금장치 정상 작동	156	96	12	48 ¹⁶⁾	88.9
	적정 세면대 높이	156	51	73	32 ¹⁷⁾	41.1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156	89	35	32 ¹⁷⁾	71.8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 충족/(충족+미충족)

- 12)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이하이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 13)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경우
- 14) 병원이 1층인 경우
- 15)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경우
- 16)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장애인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 17)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장애인화장실에 세면대가 없는 경우

다. 결과 분석

○ 건물 주출입구 단차제거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건물 주출입구의 단차를 제거한 기관은 전체 156개 기관 중 92.8%에 해당하는 142개 기관으로 나타남. 이 중 61.3%에 해당하는 87개 기관은 주출입구 단차가 2cm이하였으며, 38.7%에 해당하는 55개 기관에서는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단차를 극복함.
-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의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편의시설을 설치한 55개 기관 중 85.5%에 해당하는 47개 기관에서는 설치된 편의시설(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이 작동 가능했으며(경사로의 경우 경사가 완만함), 9.1%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서는 휠체어리프트가 작동하지 않거나 급한 경사를 지닌 경사로 때문에 휠체어사용자의 시설 접근이 어려웠음.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36곳(100%), 한방병원 22곳(84.6%), 요양병원 42곳(95.5%), 치과병원 17곳(85%), 병원 25곳(92.6%)에서 주출입구의 단차가 2cm이하이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단차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남.
- 주출입구 단차제거의 부적절한 사례로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경사로의 폭이 좁아 휠체어 회전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었음.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이상)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과를 위한 충분한 거리(0.8m이상)를 확보한 기관은 전체 156개 기관 중 96.2%에 해당하는 150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34곳(94.4%), 한방병원 26곳(100%), 요양병원 42곳(93%), 치과병원 21곳(95%), 병원 27곳(100%)에서 적정통과유효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1.2m이상)

- 전면 유효거리는 ‘출입구 턱 또는 경사로 상단 끝부터 건물입구(문)까지의 거리’로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건물입구에 착지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전면의 적정 유효거리를 의미하는바, 이를 충족한 기관은 전체 156개 기관 중 85.9%에 해당하는 134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35곳(97%), 한방병원 15곳(58%), 요양병원 40곳(89%), 치과병원 19곳(86%), 병원 25곳(93%)으로 나타나 종합병원의 전면유효거리 설치율(97%)이 가장 높고, 한방병원(58%)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 주출입구가 회전문이나, 재질이 무거운 유리 또는 금속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뇌병변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 등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주출입문의 형태가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문,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불편함을 완화시킨 기관은 회전문이 설치된 73개 기관 중 97.3%에 해당하는 71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22곳(100%), 한방병원 14곳(93.3%), 요양병원 18곳(100%), 치과병원 9곳(90%), 병원 8곳(100%)에서 별도의 문을 설치함.
- 회전문을 대신하여 설치된 문의 종류를 모니터링 한 결과 자동문 26곳(16.7%), 여닫이문 41곳(26.3%), 미닫이문 9곳(5.8%)으로 여닫이문을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설치된 문의 종류는 중복으로 체크 가능)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돕기 위해 주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럭을 설치 한 병원은 전체 156개 기관 중 64.1%에 해당하는 100개 기관으로 나타남.
- 설치된 점형블럭의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3.2%에 해당하는 8개 기관의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됨. 이러한 훼손여부를 해당 기관에 알리고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음.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23곳(63.9%), 한방병원 14곳(53.8%), 요양병원 31곳(68.9%), 치과병원 13곳(59.1%), 병원 19곳(70.4%)에서 주출입구에 점형블럭을 설치함.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에 건물 내부 구조 및 설계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하나를 설치한 기관은 전체 156개 기관 중 30.8%에 해당하는 48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17곳(47%), 한방병원 10곳(38%), 요양병원 11곳(24%), 치과

병원 3곳(14%), 병원 7곳(26%)에서 상기 서비스를 설치함. 그러나 전체 설치율이 30.8%로 매우 낮아, 불이행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규정을 안내하여 시각장애인의 시설 안내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가 필요함.

- 주출입구 안내판 설치의 부적절한 사례로는 ‘안내판의 점자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도움호출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는 경우’ 등이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또한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기관은 전체 156개 기관 중 82.1%에 해당하는 128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36곳(100%), 한방병원 17곳(65%), 요양병원 34곳(75.6%), 치과병원 17곳(77.3%), 병원 24곳(88.9%)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
- 장애인주차구역과 연관된 부적절한 사례로는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이 없는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가 흐려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주차구역과 건물 출입구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가 있음.

○ 복도 또는 통행로 통과유효폭(1.2m 이상) 및 장애물 설치 여부

- 복도 또는 통행로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휠체어가 통과하기 충분한 거리(1.2m 이상)를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156개 기관 중 96.2%에 해당하는 150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35곳(97.2%), 한방병원 24곳(92.3%), 요양병원 44곳(97.8%), 치과병원 21곳(95.5%), 병원 26곳(96.3%)의 복도 또는 통행로가 적정 통과유효폭을 준수함.
- 적정 통과유효폭(1.2m)을 준수한 기관 중 9.6%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에서 화분이나 의자 등을 복도에 배치하여 실제 유효폭이 1.2m가 되지 않았음. 모니터링 시, 단원이 복도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 줄 것을 요청 하였고, 모든 기관이 즉시 치우거나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함.

- 복도 또는 통행로의 통과유효폭과 연관된 부적절한 사례로는 ‘환자이동용 침대와 화분 등이 있어 복도의 통과유효폭이 좁아진 경우’가 있음.

○ 병원이 2층에 있거나, 또는 병원이 2층 이상인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 병원이 2층에 있거나 또는 병원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단 병원이 1층인 경우에는 해당없음.
-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병원은 전체 156개 기관 중 94.9%에 해당하는 148개 기관이며, 이 중 층간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146곳(98.6%)으로, 이 중 2곳은 설치된 편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음.
- 층간 이동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엘리베이터 141곳(90.4%), 휠체어리프트 3곳(1.9%), 경사로 1곳(0.6%)으로 설치된 편의시설 중 엘리베이터의 비율(90.4%)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음.
- 층간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부적절한 사례로는 ‘주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통로에 입간판 등의 장애물이 있어 통로의 유효폭을 좁혀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기 불편한 경우’ 등이 있음.

○ 접수대 접근성

- 병원에서 접수, 진료안내, 수납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인 접수대의 높이와 하부공간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0.7m이상, 0.9m이하(최소 1군데 이상)의 높이로 접수대를 설치한 기관은 전체 156개 기관 중 44.2%에 해당하는 69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22곳(61.1%), 한방병원 10곳(38.5%), 요양병원 16곳(35.6%), 치과병원 12곳(54.6%), 병원 9곳(33.3%)에서 접수대를 적정높이로 설치함.
- 접수대 하부공간에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이상인 접수대를 설치한 병원은 19.9%에 해당하는 31개 기관으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냄. 따라서 불이행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규정을 안내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독려가 필요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8곳(22.2%), 한방병원 9곳(34.6%), 요양병원 2곳(4.4%), 치과병원 8곳(36.4%), 병원 4곳(14.8%)에서 접수대 하부공간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적절한 높이인 것으로 나타남.

○ 비상경보등 설치

-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한 기관은 전체 156개 병원 중 41.7%에 해당하는 65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17곳(47.2%), 한방병원 10곳(38.5%), 요양병원 18곳(40%), 치과병원 11곳(50%), 병원 9곳(33.3%)에서 비상경보등을 설치하여 적정설치율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화장실 접근성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병원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전체 156개 병원 중 82.7%에 해당하는 129개 기관이며, 이 중 75.2%에 해당하는 97개 기관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였음.
 - * 이하에서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129개 기관(이하‘설치된 기관’이라 함)만을 기준으로 기술함.
- 설치된 기관 중 화장실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을 설치한 기관은 80개 기관으로 62%에 해당하며, 이 중 7곳(5.4%)의 점형블럭은 훼손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24곳(66.7%), 한방병원 11곳(68.8%), 요양병원 23곳(59%), 치과병원 11곳(73.3%), 병원 11곳(47.8%)에서 점형블럭을 설치함.
- 설치된 기관 중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의 통과유효 폭을 적정기준(0.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 기관은 111개 기관으로 86%에 해당하며, 장애인화장실 내 휠체어의 충분한 회전 공간(너비 1.0m이상, 깊이 1.8m이상)을 확보한 기관은 105개 기관으로 81.4%에 해당함. 그리고 화장실 내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또한 111곳에서 설치하여 86%에 해당함.
- 화장실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바깥쪽으로 개폐하도록 해야 함. 설치된 기관 중 화장실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26개 기관으로 20.2%에 해당함.

- 설치된 기관 중 장애인화장실의 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8곳(83.7%)이며, 이 중 설치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은 96곳(88.9%)으로 나타남. 잠금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1곳(16.3%)이며, 병원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4곳, 한방병원 3곳, 요양병원 9곳, 치과병원 1곳, 병원 4곳에서 장애인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 설치된 기관 중 대변기 좌대의 높이를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에 맞게 설치한 병원은 112개 기관으로 86.8%에 해당함. 또한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적절한 높이의 세면대(하단 0.65m, 상단 0.85m 이상)를 설치한 곳은 51곳(41.1%)으로 나타났으며, 5곳(3.9%)은 장애인화장실 내 세면대를 설치하지 않음.
- 장애인화장실 설치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음.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편의증진법」 [별표1] 등에 따라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병원 등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병원 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병원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156개 기관을 모니터링 한 결과, 건물주출입구 단차제거, 주출입구의 통과유효폭, 주출입문의 형태 및 재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 층간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설치,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대변기 적정높이, 잠금장치 항목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이행비율을 보이는 반면, 건물주출입구 부근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등 유도·안내설비,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점형블럭 설치,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점멸식 비상경보등 설치 등은 이행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병원유형별로 적정설치율을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과병원이 가장 낮았음. 따라서 「편의증진법」에 제시되어 있는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병원시설은 장애인의 시설접근성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함.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표기 오류
 - 점자안내판이 주출입구가 아닌 건물 내에 있는 점포에 부착되어 있음
 - 주출입구 음성안내장치가 리모컨이 있는 경우만 작동 가능
 - 비표준형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형블럭 위 깔판이 덮여있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
 -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점형블럭 위에 관상용 나무가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통행 시 위험함
- 복도 및 통로
 - 주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통로에 입간판 등의 장애물이 있어 통로의 유효폭을 좁혀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기 불편한 경우
 - 복도 및 통로에 환자이동용 침대와 화분 등이 있어 휠체어로 접근 시 공간이 협소
-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이 없음
 - 장애인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가 흐려져 식별하기 어려움
 - 주차장이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으나,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없음
- 장애인 화장실
 - 장애인화장실의 문에 잠금장치가 없음
 - 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음
 - 화장실 세면대 바닥에 턱이 있어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움
 - 장애인화장실을 청소도구보관창고로 이용함
 - 대변기와 수평손잡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 사용이 불편함
 - 장애인화장실의 문이 커튼으로 되어 있음
 -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 수평손잡이가 벽면에서 떨어져 훼손된 상태로 방치됨

《 주요 사례 》

○ 민원접수대

- 접수대 하부공간의 깊이가 얇아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없음
- 엘리베이터에서 접수대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 시 불편함
- 순서대기 전광판이 꺼져있음

○ 기타

-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턱이 있어 위험함
- 엘리베이터에 점자표식이 없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음
-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높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함
-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로 이동시 위험함
- 치료실까지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타인의 도움 없이 시각장애인 혼자 이동이 불가능함
- 바닥면의 시멘트가 깨져 흙이 패여 있어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 시 위험함
- 장애인화장실의 문고리를 돌려야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손에 악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출입이 어려울 수 있음

2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	·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제공 여부, 보조인력 제공
	청각	· 병원진료 및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보조인력 제공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의 의료기록 제공 여부	156	39	117	0	25.0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병원진료 및 상담을 위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서비스 등 제공 여부	156	33	123	0	21.2
	- 화상전화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여부	33	2	0	31 ¹⁸⁾	100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대체수단으로 ‘필답’제공 여부	123	108	15	0	87.8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진료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 음성알림 등 제공여부	156	33	123	0	21.2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 제공 여부	123	98	25	0	79.7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 충족/(충족+미충족)

다. 결과 분석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된 의료기록 제공 여부

- 목자형식으로 된 의료관련 기록을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확대경 등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 함.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156개 기관 중 25%에 해당하는 39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14곳(38.9%), 한방병원 5곳(19.2%), 요양병원 10곳(22.2%), 치과 병원 6곳(27.3%), 병원 3곳(11.1%)에서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편의서비스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병원의 원무과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30곳(76.9%)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에게 요청을

18)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로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야 하는 기관이 6곳(15.4%), 기타의견은 5곳(12.8%)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안내데스크와 고객만족센터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었음. (편의서비스를 요구하는 방식을 묻는 문항은 중복으로 체크 가능)

- 편의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39곳 중 27곳(69.2%)이 직접 수령의 방식이었고, 7곳(17.9%)은 집으로 송부하는 방식이라고 응답함. 나머지 5곳(12.8%)은 기타 의견으로 ‘병원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확대경을 바로 사용가능함’이라고 응답함.
- 편의서비스 제공기간은 당일 제공하는 기관은 39곳 중 17곳(43.6%)이며, 1일 소요되는 기관은 14곳(35.9%), 3일 소요되는 기관은 6곳(15.4%), 7일 이상 소요되는 기관은 2곳(5.1%)으로 나타남.
-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기관이 76곳(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19곳(16.2%)에서 응답함. 기타 의견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보호자가 항상 동행하여 특별히 요구한 적이 없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음.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은 중복으로 체크 가능)

○ 청각장애인의 병원진료 및 상담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화 통역, 화상 전화기 등 제공 여부

- 청각장애인의 경우 상담 내용 및 진단결과를 비롯하여 진료안내, 예약 등 다양한 의료관련 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불편함이 뒤따르므로 이에 따른 편의서비스 (수화통역, 화상전화, 보청기 등)를 병원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해 상기 편의서비스를 제공 하는 병원은 전체 156개 기관 중 21.2%에 해당하는 33개 기관으로 나타남. 이 중 31곳(93.9%)은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2곳(6.1%)은 화상전화기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화상전화기가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해본 결과 모두 작동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편의서비스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병원의 원무과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22곳(66.7%)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기관이 5곳(15.2%), 기타의견은 10곳(30.3%)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고객만족센터나 간호사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었음. (편의서비스를 요구

하는 방식을 묻는 문항은 중복으로 체크 가능)

- 편의서비스의 제공방식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33곳 중 24곳(72.7%)이 수화통역센터에 요청하여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방식이었고, 2곳(6.1%)은 화상전화기를 병원 내 구비해 놓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나머지 5곳은 기타의견으로 ‘수화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함’이라고 응답함. 편의서비스 제공기간은 당일 제공하는 기관은 33곳 중 16곳(48.5%)이며, 1일 소요되는 기관은 10곳(30.3%), 3일 소요되는 기관은 2곳(6.1%), 7일 이상 소요되는 기관은 5곳(15.2%), 이제까지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 제공기간을 모른다고 답한 기관이므로 나타남.
- 한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기관이 82곳(6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21곳(17.1%)에서 응답함. 기타 의견으로는 ‘보호자가 항상 동행하여 특별히 요구한 적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있었음.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은 중복으로 체크 가능)
-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 123곳을 대상으로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98곳(79.7%)에서 제공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5곳(20.3%)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필담을 제공하는 경우 간호사가 제공하는 곳이 52곳(5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가 제공하는 기관이 45곳(46%), 그리고 21곳(21.4%)에서 원무과 직원이 제공한다고 답함. (필담제공자를 묻는 문항은 중복으로 체크 가능)

○ 외래진료시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진료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 음성알림 등의 설치 유무

-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신의 진료순서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접수, 상담, 진료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에게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체 156개 기관 중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1.2%에 해당하는 33개 기관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20곳(55.6%), 한방병원 3곳(11.5%), 요양병원 2곳(4.4%), 치

- 과병원 1곳(4.5%), 병원 7곳(25.9%)에서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병원의 설치율이 가장 높고 요양병원의 설치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음.
-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123개 기관에 대해, 보조인력 제공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9.7%에 해당하는 98개 기관에서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인력의 종류에는 원무과 직원이 98곳 중 61곳(6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호사가 43곳(43.9%), 그리고 5곳(5.1%)에서 기타의견으로 안내데스크 직원, 병원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실습생이 보조인력으로 제공된다고 답함. (보조인력의 종류는 중복으로 체크 가능)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2항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 시,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동법 제20조는 전자·비전자 정보의 이용·접근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3]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은 당해 기관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 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병원 총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 결과, 진료기록을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형태(점자자료, 확대문서 등)로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기관의 25.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 진료내용을 청각장애인이 이해 가능하도록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기관 중 21.2%에 해당하는 33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병원유형별로 이행비율을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의 이행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원이 가장 낮았음.
- 진료결과 및 진단명, 전문의 소견 등의 의료정보는 당사자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함. 따라서 환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법률 조항 등을 안내하여 법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확대문서가 제공 가능하지만 7일 이상 소요됨
 - 점자자료를 요청할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연계병원이나 소방서와 연결된 화상전화기는 있으나, 그 밖에 수화통역센터 등으로 연결 가능한 화상전화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
 - 수화통역을 원할 시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함
 - 수화통역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화가 가능한 직원이 있어 요청할 시 언제든지 배치 가능함
 - 병원 내 수화동아리를 운영하여 수화서비스 제공 가능

3 의료기관 웹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 접근성	시각	-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병원이용정보 확인
	지체	-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사용만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료예약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병원이용정보 확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료예약
모니터링 기관	120 ¹⁹⁾	
충족	40	24
미충족	80	96
이행비율(%)	33.3	20.0

다. 결과 분석

○ 키보드사용만으로 웹사이트 내 병원이용정보 확인

- 진료안내 및 운영시간 등 병원이용정보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웹사이트 내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키보드만으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함.
- 모니터링 결과, 전체 156개 병원 중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76.9%에 해당하는 120개 기관이고, 이 중 33.3%에 해당하는 40개 기관이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사용)만으로 병원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17곳(54.8%), 한방병원 5곳(31.3%), 요양병원 6곳(20.7%), 치과병원 5곳(22.7%), 병원 7곳(31.8%)에서 웹사이트에 게시된 병원이용정보를 키보드만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키보드사용만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진료 예약 가능 여부

- 최근 들어 많은 병원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진료 예약이 가능한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웹사이트가 있는 120개 병원 중 20%에 해당하는 24개 기관이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진료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종합병원 12곳(38.7%), 한방병원 3곳(18.8%), 요양병원 0곳(0%), 치과병원 4곳(18.2%), 병원 5곳(22.7%)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19) 전체 156개 기관 중 웹사이트가 없는 36개 기관을 제한 기관 수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자 및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바, 동 시행령 [별표3]에 의해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인 의료기관들 중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의무부과 대상에 포함됨.
- 모니터링 결과,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병원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은 웹사이트가 있는 120개 병원 중 33.3%에 불과하였고, 웹사이트를 통해 진료예약이 가능한 병원은 20%에 불과하였음.
-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과목과 의료진, 진료시간, 연락처, 병원약도 뿐 아니라, 의료기록 조회 및 발급 등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임. 따라서 장애인의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해당 의무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원하는 자료를 보기위해 키보드의 단축키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이미지 파일에 텍스트 설명 처리를 하지 않아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음

<5> 모니터링 총평



1 의료기관 시설 접근성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문 단차제거, 주출입문 통과유효폭과 전면유효거리, 주출입문의 형태 및 재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 층간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화장실 설치,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대변기 적정높이 및 잠금장치항목에서는 관련 법률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전체 모니터링 기관의 80%이상이었음.
- 그러나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의 유도·안내설비 설치율은 30.8%,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적정설치율은 높이와 하부공간 항목에서 각 44.2%, 19.9%로 나타났고, 점멸식 비상경보등 설치율은 41.7%, 적정 세면대 설치율은 41.1%로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확보를 위해 이 부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병원별로는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미흡하였음.
- 시설 접근성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등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에서 시설접근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을 독려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의료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 의료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병원은 25.6%에 불과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서비스나 필요한 용품(보청기 등) 등을 제공하는 병원 21.2%에 불과하였음.
- 병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이행비율은 병원에서 가장 낮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이행비율은 요양병원에서 가장 낮았음.
- 진료내용 및 기록 등은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점자, 확대문자, 수화통역 등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피모니터링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3 의료기관 웹 접근성

- 웹접근성²⁰⁾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웹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음.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웹접근성은 ‘웹에 접근이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가능한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번 모니터링 결과, 홈페이지에서 병원이용 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을 하기 위한 웹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병원 홈페이지의 경우 문자보다 이미지로 병원이용정보를 나타낸 경우가 많아,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다면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3]에 따라 종합병원은 2009. 4. 11.부터,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병원은 2011. 4. 11.부터 의무부과 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의료기관이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병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각 병원들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20)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웹 사이트 장애인 사용성 실태조사」2008, 8p

<6> 사후 조치 및 향후 계획



- 관계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유도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장애인권익지원과를 통해 각 피모니터링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 개선계획 수립 독려 등 개선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

- 결과발표회를 통한 홍보효과 재고
 - 11~12월 초, 모니터링 실시 권역별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유도

- 개선 협의 불응 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검토
 -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개선에 불응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권고 절차 진행 검토

<7>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및 회신 등 개선사항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가. 수신자 : 보건복지부

제목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 6월에는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붙임 참조) 등을 2013. 10. 2.(수)까지 우리 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및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신 등 개선 사항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종합병원		
	①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리모델링 시 통과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2014년) - 대변기간 문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개선 예정(2014년)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원하는 서비스 제공 예정(2014년) 	
	②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대 및 대변기간 문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개선할 예정(2016년 리모델링 시) 	
	③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 - 접수대 설치 할 공간 확보 후 책상 디자인 검토하여 설치 예정 - 원무과에 요청 시 보이스바코드 제공 - 지역수화통역센터와 협력하여 수화통역을 제공할 예정 - 홈페이지 개편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하여 개편 예정 	
	④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럭 설치 예정 - 본원의 중앙현관 및 서쪽출입구에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화장실 대변기에 수직 손잡이 설치 예정 - 화장실문을 바깥여닫이 또는 미닫이문으로 교체할 예정 -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2013년 12월까지) 	
	⑤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및 화장실 점형블럭 시공 준비중 	
	⑥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입구에 장애인 점형블럭 설치 완료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을 반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 완료 - 진료실 입구에 대기환자 모니터 설치 완료 - 장애인용 적정 접수대 설치 예정 - 홈페이지 개발 중 	
	⑦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문을 미닫이 문(슬라이딩 도어)으로 교체 완료 - 주출입구 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까지) - 적정 접수대 설치 예정(2013년 12월말까지) - 화장실 입구에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3년 12월까지) -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의료관련 기록 제공 예정(2014년 예산 책정 후) 	
⑧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기간 문을 미닫이문으로 변경 완료 - 접수대 하부공간 수리 예정(2014년 예산 책정 후) - 화장실 출입구 전면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3년도 10월까지)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2014년 예산 책정 후) - 현재 홈페이지 관련업체와 협의 중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	⑨종합병원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을 반으로 접히도록 설치 예정	
	⑩종합병원	- 화장실 내부 출입구 통과유효폭 조정 완료 -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완료 - 대변기칸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개선 완료 - 적정 세면대 높이로 조정 완료 - 적정 접수대 설치 예정(2013년 말까지)	
	⑪종합병원	- 촉지도식 안내판 및 점자안내판 설치,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 확보,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적정 세면대 설치를 신축 건물로 이전 시 개선할 예정(2013년 10월)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3년 12월 중)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및 웹사이트는 2014년도 예산 확보 후 제공 예정	
	⑫종합병원	- 점자안내판설치, 접수대 하부공간, 비상경보등설치, 세면대, 웹사이트는 2014년도 예산 책정 후 개선 예정 -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예정(2013년도 12월말까지) - 청각장애인이 병원 내원 시 필담 제공	
	⑬종합병원	- 훼손된 점형블럭은 예산수립 후 개선 예정 - 세면대 아래에 있는 받침대를 제거하여 하부공간 확보 완료 - 수화 가능한 자원봉사자 및 장애인 지원센터의 도움을 요청하여 편의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	
	⑭종합병원	- 접수대 하부공간 개선 예정(2013년 하반기 중) - 지역수화통역센터와 MOU 체결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예정(2014년까지) -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2014년까지)	
	⑮종합병원	- 건물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설치 및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는 예산 확보 후 개선 예정 - 향후 홈페이지 및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에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⑯종합병원	- 관련항목 모두 이행하여 개선할 사항 없음	
	⑰종합병원	- 주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완료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은 타 병원 참고하여 설치 예정 - 접수대, 비상경보등,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적정 세면대는 예산확보 후 설치 예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웹사이트는 예산 확보 후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	
	⑱종합병원	- 주출입구 앞 노후, 훼손된 점형블럭 교체 완료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 기존 접수대의 높이를 조정하여 개선 완료 - 비상벨 주변에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세면대 구조를 변경하여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완료 - 휴대폰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수화통역센터에 연결하여 수화통역 제공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①종합병원	- 수화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예정 - 장애인이 방문 시 1:1 전담인력을 제공하여 접수부터 진료, 안내 등을 도울 예정	
	②종합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4월) - 장애인용 접수대 설치 예정(2013년 12월) - 접수대 주변에 화재 감지 자동 점멸등 설치 예정(2013년 12월) - 장애인 화장실 문을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개선(2013년 12월) - 확대경 설치 예정(2013년 12월) - 홈페이지 제작 중(2014년 상반기)	
	③종합병원	- 비상경보등은 협의 후 설치 예정 - 예산 수립 후 적정 세면대 설치 예정	
	④종합병원	- 적정 접수대의 높이 및 깊이에 맞게 설치할 예정 (2014년 상반기까지)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까지) - 세면대 설치 예정(2013년 12월까지) -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진료순서를 알 수 있도록 외래 전 부서의 대기장소에 모니터를 설치하였으며, 방송 및 음성알림으로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	
	⑤종합병원	- 현재 병원리모델링 중으로 접수대, 비상경보등, 대변기, 대변기 문 재설치를 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 (공사진행중) - 수화가능한 직원이 수화통역 제공 - 웹사이트 개선 중(2014년 상반기까지)	
	⑥종합병원	- 점형블럭,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접수대, 비상경보등, 장애인화장실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개선	
	⑦종합병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완료	
	⑧종합병원	-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설치 검토할 계획 - 지역수화통역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화통역 제공 예정 - 타병원 웹사이트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부서와 검토 후 개선할 예정	
	⑨종합병원	- 주출입구 벽면 점자표기 완료 - 장애인협회와 연합하여 수화통역사 지원 - 웹사이트 개선 완료 - 확대경 구입 예정(2013년 말)	
	⑩종합병원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적극 검토 중	
⑪종합병원	-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예정 - 주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 - 화장실 출입문을 모두 슬라이드식문으로 교체 예정 - 2014년에 예산 확보하여 확대경 및 화상전화기 설치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㉓종합병원	- 비상경보등 설치 완료 - 점형블럭 설치 예정 - 확대경 구입완료 -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등 검토 후 설치 예정 - 시각장애인협회와 연계하여 점자자료 제공 예정 - 지역 내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할 예정	
	㉔종합병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비상경보등 설치 고려 중	
	㉕종합병원	- 주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고려 후 설치 예정 - 접수대 설치 고려 중 - 확대경 설치 예정 - 화상전화 및 수화동아리 설치 예정	
	㉖종합병원	- 비상경보등 및 세면대 설치는 추후 시설물 공사계획 시 개선할 예정	
	㉗종합병원	- 점형블럭, 접수대 재설치 검토 중 - 웹사이트 관련 업체와 개선 협의 중	
	㉘종합병원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는 시스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 관련 업체와 상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㉙종합병원	- 점형블럭 설치 완료 - 추후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등을 설치할 예정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수화통역사는 병원 내에 없지만 지역 내 수화통역협회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한방병원		
	①한방병원	- 주출입구 경사로 개선 완료 - 자동문 설치 완료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완료 - 복도 및 통로에 휠체어사용자가 이동 시 불편이 없도록 통로 확보 완료 - 기존 접수대에 보조받침대를 설치하여 개선할 예정 - 2,3,4층에 장애인화장실 설치하였으며, 1층은 설치 예정 - 주출입구 점형블럭 보완 예정 - 점자자료 제공 예정 - 청각장애인협회와 협의 후 서비스 제공 예정 - 웹접근성 관련 업체와 협의 중	
	②한방병원	- 접수대 중 1곳에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접수대를 설치함 - 지역 내 수화통역센터에 의뢰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제공함 - 리모델링 시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을 설치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③한방병원	- 접수대 하부공간의 깊이 개선 예정(2014년 상반기) - 잠금장치 설치 완료 - 확대경 구비 완료 - 시각장애인협회에 의뢰하여 점자자료 제공 예정	
	④한방병원	- 시설 접근성 항목의 미비사항은 공사를 요하므로 추후 예산을 책정하여 개선할 예정 - 현재 웹사이트 개선 작업 중	
	⑤한방병원	- 점형블럭 및 접수대 설치는 건물 리모델링 시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 - 청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화상통화로 수화통역 제공 예정	
	⑥한방병원	- 개선계획 미회신	
	⑦한방병원	- 주출입구에서 원무과 데스크를 비롯하여 주 치료실 및 화장실까지 점형블럭을 이어서 설치할 예정(6개월 이내)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6개월 이내) - 화장실로 통하는 통로 부분 개선 예정(1년 이내) - 총 4곳의 접수대 중 한 곳을 적정 접수대 기준에 맞게 설치할 예정(6개월 이내) - 대변기칸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0.8m이상으로 설치할 예정(1년 이내) - 화장실 내에 수평 손잡이 설치 예정(1년 이내) - 대변기칸의 너비를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1.5m 이상으로 설치할 예정(1년 이내) - 시각 장애인이 요청 시 점자 자료 제공 예정(6개월 이내) - 청각장애인이 요청시 수화통역 제공 예정(6개월 이내) - 음성 알림 서비스 설치 예정(1년 이내) - 추후에 전체적인 홈페이지 수정을 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방식과 키보드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수정할 예정(2년 이내)	
	⑧한방병원	- 주출입구 단차 제거(2014년도 내 설치 예정) - 접수대가 대리석 구조물로 되어 있어 변경이 어려움. 따라서 간이 접수대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2014년 내 설치 고려) - 적정 세면대 설치(2014년 내 변경 계획) - 웹사이트 현재 개발 중(2014년 내)	
	⑨한방병원	- 도로변에 있는 출입구보다 주로 사용되는 주차장 쪽 경사로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여 휠체어 접근성을 확보하고, 턱이 없는 출입문을 항시 개방 - 접수대 개선 예정 - 휴대폰을 통한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제공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⑩한방병원	- 현재 주출입구 경사로의 기울기가 심하며,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 - 시각장애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점자자료 및 수화통역 제공할 예정	
	⑪한방병원	- 병원 주출입구에 있는 경비원이 장애인이 방문 시 직접 안내하여 병원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추후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 - 점자자료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서비스 제공 예정 - 농아인협회와 협약하여 청각장애인이 방문 시 통역서비스 제공 - 전광판, 음성알림 대신 전담인력으로 대체 -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맞게 홈페이지를 리뉴얼 할 예정	
	⑫한방병원	- 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접수대, 비상경보등, 장애인화장실 보수 예정(2014년 10월)	
	⑬한방병원	- 모든 미충족 문항에 대해 2014년 리모델링 시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	
	⑭한방병원	- 개선계획 미회신	
	⑮한방병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완료	
	⑯한방병원	- 접수대, 비상경보등, 남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1년 이내)	
	⑰한방병원	-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및 접수대 설치예정(2013년 12월 까지)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2013년 12월까지) - 자신의 순서를 알 수 있게 전광판/모니터 또는 음성알림 등 설치(2013년 12월까지) - 웹사이트 개선 예정(2013년 12월까지)	
	⑱한방병원	- 폐업(2013. 9. 9)	
	⑲한방병원	-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접수대 설치 완료 - 병원 후문에 경사로 설치 예정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예정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시각장애인이 요청 시 점자자료 제공 예정 - 화상전화를 이용한 수화통역 제공 예정	
	⑳한방병원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예정 - 접수대 보수 예정	
㉑한방병원	- 장애인주차구역표시 개선 완료 - 원무과로 요청 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즉시 제공 예정 - 시설관련 개선부분은 향후 리모델링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	㉒한방병원	- 접수대 앞 휠체어사용자 전용상담탁자 배치 완료 - 건물 구조상 화장실 출입구 통과유효폭을 개선할 수 없는바, 항시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㉓한방병원	- 폐업(2013. 6. 30)		
	㉔한방병원	- 건물 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 확보 완료 - 접수대 하부공간 추후 고려하기로 함 - 비상경보등 추후 설치할 예정 - 화장실 내부 대변기칸 출입구 통과유효폭 개선 완료		
	㉕한방병원	- 기존의 접수대 옆에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의 접수대를 설치할 예정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여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재정보하여 개선하도록 할 예정		
	㉖한방병원	- 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 접수대 하부공간, 비상경보등 설치, 대변기칸 문 개폐방향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 할 계획 - 예산에 웹사이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책정하여 2014년 8월 이후 오픈 할 계획		
	요양병원			
	①요양병원	- 점형블럭 설치 예정 - 장애인화장실 설치 계획 중		
	②요양병원	- 휠체어 환자 내방 시 로비에 있는 테이블에서 원무과 직원이 직접 응대함 - 청각장애인 내방 시 필담 제공하며, 수기가 곤란한 청각장애인은 지역수화통역센터에 의뢰할 예정 - 본원 홈페이지 상단메뉴 내에 진료예약 카테고리 만들기 위해 관련 업체에 요청함		
	③요양병원	- 웹사이트 업체에 보수 요청함(2013년 12월말까지 예정) - 대변기칸 문 개폐방향과 세면대 높이 개선(2014년 1월말 예정)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및 보조인력 제공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예정(2014년 1월 말 예정)		
	④요양병원	- 점형블럭 설치 완료		
⑤요양병원	- 1층 안내데스크에 확대경을 비치하여 제공 - 수화통역을 원무과에 요구할시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문의하여 평일 주간 09:00~18:00 까지 제공 - 안내데스크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도울 예정 - 병원 홈페이지가 간결하게 되어있어 홈페이지 접속 시 첫 화면에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외래진료가 없으므로 웹사이트를 통한 진료예약은 해당없음			
⑥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담당직원의 안내서비스 제공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⑦요양병원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예정	
	⑧요양병원	- 점형블럭 위 깔판 제거 완료 - 접수대 보완 할 예정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화장실 대변기간의 문을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개선할 예정 - 확대문서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경 구비 예정 -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사전요청시 제공 - 웹사이트 개선 예정	
	⑨요양병원	- 적정 접수대, 비상경보등, 대변기, 적정 세면대 설치는 건물 신축시 시설 보완 및 개선 예정	
	⑩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은 향후 예산 반영하여 설치 예정 - 접수대하부공간 시설보강 예정(2014년 2월까지) -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문 바깥쪽으로 개폐, 적정 세면대 시설보강 예정(2014년 2월까지)	
	⑪요양병원	- 주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 점형블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는 2014년도까지 개선할 예정	
	⑫요양병원	- 화장실 문을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조정 완료 - 접수대 설치 시 기준에 맞게 설치할 예정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및 웹사이트는 2014년도 예산 확보 후 제공 예정	
	⑬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3. 10월 중) -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2013. 11월 중) - 화장실 세면대 높이 조정(2014. 예산 책정 후) - 확대경 구매예정(2013. 10월중) -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예정(2014년도 예산 책정 후)	
	⑭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건적의뢰(각층 엘리베이터 앞 설치 완료)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이며, 장애인 방문 시 직원이 직접 안내 - 병원건물 지하 및 외부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 확보 - 통행로 유효폭 확보 완료 - 전광판 및 음성알림 설치 완료	
	⑮요양병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예정(2014년도 10월 중) - 장애인을 위한 별도접수대 공간 확보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에 대해 관련 업체에 건적 의뢰함 - 시·청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 	⑩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완료(음성안내장치는 2015년 설치 예정) - 걱정 접수대 설치 예정(2014년도 6월말) - 비상경보등 설치완료 - 대변기간 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은 2015년도 예산 책정 후 시행 예정 - 외래진료가 없으므로 진료예약 기능이 필요 없으며, 필요시 직원이 직접 안내 	
	⑪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예산 확보 후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지하1층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 병동 3층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 2014년도 예산 확보 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접수대 마련 - 시·청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⑫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안내판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완료 - 장애인 주차구역 마련 및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 - 접수대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2014년도 예산 확보 후) - 시·청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2014년도 예산 확보 후) 	
	⑬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주문 제작 예정 - 걱정 높이의 접수대 설치 예정 - 수화동아리를 만들어 직원들이 수화를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서비스 제공할 예정 - 홈페이지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였고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확보 후 제작을 하기로 결정 	
	⑭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미비사항에 대하여 요양병원평가인증제에 대비하여 모두 점검하여 재설치할 예정 	
	⑮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미비사항은 내년 예산과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재설치하고,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⑯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경 및 확대문서 제공 - 예산확보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와 화장실 문 보수 예정 - 홈페이지 개편(2013년도 하반기) 	
	⑰요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점자 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접수대 공간 확보 및 보수예정(2013년 10월)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시각장애인을 위해 확대문서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전광판 대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안내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	㉔요양병원	- 장애인이 내원 시 접수대로 오지 않고 직원이 가서 접수 및 진료 안내를 도움	
	㉕요양병원	- 도로변에 있는 출입구보다 주로 사용되는 주차장 쪽 경사로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여 휠체어 접근성을 확보하고, 턱이 없는 출입문을 항시 개방 - 접수대 개선 예정 - 휴대폰을 통한 원격수화통역서비스 제공	
	㉖요양병원	- 2015년 3월까지 모든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 예정	
	㉗요양병원	-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 설치 및 바닥표시 보수 - 비상벨 주변 비상경보등 설치 - 접수대 하부공간 개선 예정 - 점형블럭 설치 및 훼손부위 정비 - 장애인화장실 내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는 시설보강공사 시 개선할 계획 - 대변기교체 예정 - 문이 바깥으로 열리도록 개선할 예정 - 잠금장치 설치 및 훼손부위 정비 - 세면대 교체	
	㉘요양병원	- 2014년부터 시설보수공사 시 모든 미비사항들을 개선할 예정	
	㉙요양병원	- 진료순서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 보수 완료 - 장애인화장실 내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완료 - 화장실 문을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개선 완료 -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공간확보 예정 - 접수대 및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 고려 중	
	㉚요양병원	- 점형블럭 훼손부분 보수 예정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예산 책정 후) - 직원에게 수화통역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㉛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3.10까지) - 장애인접수대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3.10) - 장애인화장실 내부 공간, 문, 세면대 등 건물주와 협의하여 수리 예정(2014년 상반기까지) - 웹사이트는 현재 개발 중이며 모니터링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 예정	
	㉜요양병원	-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설치 완료 - 접수대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10. 31까지) - 장애인화장실, 점형블럭,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대변기칸 출입구유효폭 및 대변기 설치 전 준공검사 중이며, 그 후 설치 예정 - 시·청각장애인의 의료행위를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은 점차적으로 보완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㉓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예정	
	㉔요양병원	- 2014년 예산 확보 후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럭, 화장실 대변기칸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예정 - 홈페이지 개편 완료(2013년 9월)	
	㉕요양병원	- 병원 주출입구에 있는 경비원이 장애인이 방문 시 직접 안내하여 병원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추후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 - 점자자료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서비스 제공 예정 - 농아인협회와 협약하여 청각장애인이 방문 시 통역서비스 제공함 - 전광판, 음성알림 대신 전담인력으로 대체 -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맞게 홈페이지를 리뉴얼 할 예정	
	㉖요양병원	- 건물 주출입구 단차, 접수대, 화장실 개선 예정(2014년 하반기) - 정당한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2014년 하반기)	
	㉗요양병원	- 경사로 손잡이,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은 본원 시설환경 검토 후 2016년까지 예산 확보하여 개선할 예정 - 접수대 재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재설치 이전에는 전담인력으로 대체(2016년 개선예정)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및 웹사이트 제공 예정(2016년 예정)	
	㉘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리모텔링 업체를 검토 중이며 예산 확보 후 개선할 예정	
	㉙요양병원	- 세면대 높이 개선 예정	
	㉚요양병원	- 화장실 출입구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	
	㉛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접수대, 적정 세면대, 점자자료 서비스, 전광판 등 설치예정(2014년 하반기)	
	㉜요양병원	- 접수대 하부공간은 2014년 요양병원인증준비로 인한 시설보완이 있을 예정이므로 이 시기에 개선할 예정 - 수화가능한 직원이 수화통역 제공할 예정 - 웹사이트 개선 고려 중	
	㉝요양병원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에 대한 건은 접수대를 새로 제작·설치할 예정 - 규정에 맞는 세면대로 재설치할 예정	
	㉞요양병원	- 병원입구에 축지도식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할 예정 - 접수대 옆 공간에 장애인용접수대 설치 예정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화장실 문 개폐방향 개선 예정 - 시각장애인에게 확대문서 및 보조인력 제공 - 현재 웹사이트 제작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제작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	④요양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완료 - 비상경보등 설치 완료 - 시·청각 장애인에게 확대문서 및 수화통역 제공 - 웹사이트 제작중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제작할 계획		
	치과병원			
	①치과병원	- 건물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이 내원 시 직원이 안내할 예정 - 직원이 직접 장애인이 앉아 있는 곳에서 접수 및 진료 안내 등을 도울 예정 - 점자자료, 보이스 바코드 차후 제공 예정		
	②치과병원	-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설치하는 시각장애인협회와 논의 후 진행 예정(2014년 8월) - 장애인화장실 설치하는 건물 관리부서과 논의 후 진행 예정(2014년 하반기)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은 장애인협회에 협조 요청 후 진행 예정(2014년 2월) - 웹접근성은 2014년 상반기 웹사이트 리뉴얼 시 적용할 예정		
	③치과병원	- 점형블럭 훼손부분 재설치 예정(2013년 11월 8일) - 주출입구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등,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하는 건물소유주와 협의하여 재부착 예정(2013년 11월) - 웹사이트 접근성 관련하여 현재 논의 중		
	④치과병원	- 확대경 제공 예정(2013년 11월) - 2014년 예산확보 후 운영 업체를 모색하여 진료순서를 나타내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동안 보조인력이 진료순서를 알 수 있도록 음성알림을 지원		
	⑤치과병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는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요청을 하면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소요됨 - 추후 직원 선발 시 수화통역부분을 고려하여 직원 선발 예정 -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 진행 중(2013년 11월)		
	⑥치과병원	- 주출입구 점형블럭, 장애인화장실 설치하도록 노력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⑦치과병원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은 사전에 요구할 경우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 제공할 예정		
	⑧치과병원	-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자자료 요청할 예정 -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이며 11월 15일경 완료		
⑨치과병원	- 웹사이트 개선 예정(2014년)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	⑩치과병원	- 본원이 위치한 곳은 치과병원의 단독건물이 아닌 관계로 건물 주출입구 단차제거는 건물입주자들과 협의 후 진행 예정(11월 초)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해 조사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가능성을 판단(2013년 12월) - 본원은 직원이 직접 환자분을 진료실로 응대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없다고 판단됨 - 현재 본원은 홈페이지에서 진료예약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향후 홈페이지 진료예약 시스템 운영 시 장애인의 진료예약 가능토록 적용할 예정	
	⑪치과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접수대, 비상경보등은 예산확보 후 설치 예정 - 수화 가능한 자원봉사자 및 장애인 지원센터의 도움을 요청할 예정	
	⑫치과병원	- 비상벨, 비상경보등 설치 완료 - 추후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⑬치과병원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 -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협조요청 - 웹사이트 개선 예정	
	⑭치과병원	- 폐업(2013. 8. 20)	
	⑮치과병원	- 주출입구 단차제거(2014년 예산반영 후 개선 예정) -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 설치 및 바닥표시 설치 예정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이동편의시설,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예산 반영하여 시설 보강할 예정) - 대변기 교체 예정 - 시설보강공사 시 화장실 내부 공간 확보 예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필담 제공 - 웹사이트 개선 예정	
	⑯치과병원	- 세면대 아래 적재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하부공간 확보 완료 - 비상경보장치 및 경보등 설치 예정 - 부착형 점형블럭 설치 예정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모색 중 - 웹사이트 개선 작업중	
	⑰치과병원	- 음성안내 및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현재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 점차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선할 계획	
	⑱치과병원	- 화장실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개선 완료 -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2014년)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	⑱치과병원	- 화장실 문 및 세면대 개선 완료 - 확대경 설치 완료 - 접수대 대신 상담실에서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		
	⑳치과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완료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화장실 수평·수직 손잡이 보수 완료 - 진료순서 안내 전광판 설치 완료		
	㉑치과병원	- 세면대 높이 개선 완료 - 접수대 및 비상경보등 설치하는 향후 리모델링 시 개선할 예정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예산 편성하여 설치 예정 - 웹캠을 이용하여 화상수화통역 제공 예정 - 진료순서를 나타내는 전광판 대신 전담직원이 직접 안내할 예정 - 홈페이지 개편 준비 중		
	㉒치과병원	- 시·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 진료순서를 나타내는 전광판 등의 수단에 대해서는 타병원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병원			
	①병원	- 점형블럭 설치 완료 - 일반인과 장애인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수대 추후 설치 예정 - 병원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추후 병원 내부에 장애인화장실 및 세면대 설치 예정 - 타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서비스 사례를 검토하여, 본원 내부 실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병원특성상 홈페이지를 공동 이용하여, 해당부분은 외주업체에 따로 요청하여 협의 중		
	②병원	- 접수대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접수대 상판 보강 예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은 관련 업체와 연락하여 견적 및 내용 파악 후 진행 여부 결정 할 예정 - 현재 웹사이트 업체에 수정 요청하여 키보드 사용으로 병원 정보 및 진료예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③병원	- 1층 주출입구에 안내직원 상시 대기로 장애인 방문 시 협조 - 시설접근성 문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		
	④병원	- 주출입문 재설치 예정(2013년 12월) - 추후 리모델링 시 접수대 재설치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예약 가능 여부 등	⑤병원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완료 - 장애인 화장실문을 반자동 미닫이문으로 설치 완료(일반 화장실도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수리 예정) - 사용하지 않던 전광판을 보수하여 다시 활용할 예정 - 2014년도 예산 책정 후 점자 안내판 및 촉지도, 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 - 2014년도 예산 책정 후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 예정 - 필담제공 및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 - 홈페이지 웹접근성 관련 전국의료원연합회와 공동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예정(2014년도 예산 확보 후)	
	⑥병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등 설치 예정 - 복도에 있는 물품을 정리하여 휠체어 유효폭 확보 완료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추후 대변기 교체 시 규정에 맞게 설치 예정 - 화장실 문을 여닫이문으로 설치 완료 - 추후 세면대 교체 시 규정에 맞게 설치 예정 - 수화통역 가능한 직원 채용 예정	
	⑦병원	- 주출입구 점자 안내판 설치, 접수대, 장애인화장실 등 2014년도 예산 확보 후 보수 및 설치 예정 - 2014년도 예산 확보 후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 예정	
	⑧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주문완료상태) - 화장실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 완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구매 예정(2013년도 10월 중) - 장애인단체와 연결하여 청각장애인이 편의서비스 요청 시 서비스 제공 - 2014년도 예산 책정 후 음성안내 시스템 도입예정	
	⑨병원	- 주출입구 점자 안내판 설치 예정(2013년도 10월 중) - 접수대 설치 및 하부공간 조정(2013년도 12월까지) - 장애인용 화장실에 자동문 설치 완료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2014년도 예산 확보 후 4월까지 설치 완료) - 진료순서를 나타내는 모니터 설치 완료 - 웹사이트 개선 예정(2013년도 12월까지)	
	⑩병원	- 개선계획 미회신	
	⑪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3년 10월까지) - 접수대 보수 및 추가 설치 예정 (2013년 10월까지)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3년 10월까지) - 세면대 보수(2013년 10월일까지) -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점자로 제공하는 것을 계획 중 - 수화통역으로 진료 제공 - 보조인력이 진료순서를 직접 안내함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2. 편의 제공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⑫병원	- 점자안내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접수대, 비상경보등, 장애인화장실 등 설치 예정(2014년) - 시각장애인이 사전 요구 시 점자자료 등 제공에 대해 추후 계획 수립 예정 - 진료순서를 알리는 전광판 등 설치에 대해 추후 계획 수립 예정	
	⑬병원	- 2014년 예산 확보하여 비상경보등 및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럭 설치 예정 - 2014년 예산 확보하여 화장실 대변기칸 문 교체 예정 - 홈페이지 개편 완료(2013년 9월)	
	⑭병원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중 -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정 - 접수대 및 비상경보등 설치 방안 모색 후 설치 예정 - 화장실 점형블럭 훼손여부 확인 후 개선예정 - 세면대 및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방안 마련 중	
	⑮병원	- 병원 리모델링 시 점형블럭, 장애인화장실 및 접수대 설치 예정(2014년 3월)	
	⑯병원	- 적정 접수대 설치 완료 -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접수대 하부공간 검토 후 시행(2013년 12월까지) - 화장실 앞 점형블럭, 대변기 칸 문, 적정세면대 검토 후 설치 예정(2014년 12월까지) - 확대문서, 확대경 제공 예정(2013년 12월) - 점멸 비상등 설치 예정(2013년 12월까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3월) - 전광판/모니터 설치 예정(2014년 6월) -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예정 (2013년 12월)	
	⑰병원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2015년 예정) - 접수창구 중 1곳을 장애인 전용 접수창구로 변경(2014년 예정) -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 적정 세면대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웹사이트 전면 수정 예정(2014년)	
	⑱병원	- 주출입구 3곳 중 2곳은 단차를 제거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추후 개선 예정(2017년) - 주출입구 및 화장실 앞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5년) - 적정 접수대 및 장애인화장실 개선 예정(2016년)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 전광판 설치 예정(2018년)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높이 및 하부공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록 제공 시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형태 제공 여부 -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한 병원 이용정보 확인 및 진료 예약 가능 여부 등 	⑰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접수창고 및 비상벨 설치예정(2014년) - 확대문서 제공 예정(2014년부터) - 원무과에 요청 시 ‘수화통역 중계서비스’를 통하여 화상전화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예정 (2014년부터) 	
	⑳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대,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장애인화장실 개선 예정(2014년 상반기)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및 전광판 등 알람장치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㉑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과 협력하여 수화통역서비스제공 - 비상경보등 설치 예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는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할 예정 	
	㉒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경 비치 완료 - 의사가 필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휴대전화를 이용한 영상전화로 수화통역 제공 - 비상경보등은 업체와 공사가능여부 파악 후 개선할 예정 	
	㉓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5년) - 접수창구 1곳을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할 예정 (2015년) - 원무과에 요청하여 확대문서 발행 예정 (2014년) - 원무과에 요청 시 ‘수화통역 중계서비스’를 통하여 화상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 (2015년) 	
	㉔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럭 위 깔판 제거 완료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 되어 있는 층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장애인화장실로 이동을 도움 예정 - 직원들에게 장애인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병원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 - 점자제작업체와 협력하여 점자자료 제공 가능 -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내부 회의를 한 후 재설치 예정 	
	㉕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2013년 12월) - 비상경보등 설치(2013년 10월) - 확대경 비치 완료 - 수화통역가능 직원 배치 - 일반 화장실 2곳 중 1곳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예정(2013년 10월) - 2014년 예산편성을 통해 웹사이트 개선 예정 	
	㉖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주출입구 단차, 접수대, 장애인화장실 개선 예정(2014년 상반기) - 웹사이트 보완 예정(2014년 상반기) 	
㉗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경 설치 완료 - 원무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상수화통역 제공 		

<8>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음(2cm이하)		<input type="checkbox"/> 1-1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차높이 _____ 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1-3,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1-5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면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1-2.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작동 가능함				* 작동 모습 사진 첨부 * 경사로의 경우 훼손이 심해 힘든 경우
	1-3. 경사로가 있는 경우 기울기	높이 : _____ 길이 : _____ 기울기(높이/길이*100) : _____			
	1-4. 경사로가 있는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 손잡이가 설치된 기관 <input type="checkbox"/> 양쪽 측면 <input type="checkbox"/> 한쪽 측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1-5. 다른 출입구를 통해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당 출입구의 단차제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음				* 다른 출입구의 예 : 후문 등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0.8m이상)				* 통과유효폭 _____ m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있음(1.2m이상)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문) 간의 거리 _____ m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건물	4.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자동문 <input type="checkbox"/> 여닫이문 <input type="checkbox"/> 미닫이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5.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 5-1 5-2				
	주출입구 및	5-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사진 첨부
		5-2. 화분이나 깔판 등으로 유도블록이 덮여 있어 원래의 기능을 못함					* 우천시 미끄럼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깔판을 설치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접근로	6.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 6-1 (음성 안내장치인 경우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촉지도식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6-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6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복도 및 통로 등	8.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 (1.2m이상임)	☞ 8-1				* “아니오”인 경우, 유효폭 _____m
		8-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으로 통로 유효폭이 좁혀져 있음					* 유효폭 확보를 위해 복도 및 통로를 좁히는 의자, 화분 등을 치울 것을 요청
		9. 병원이 2층에 있거나, 또는 병원이 2층 이상인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병원이 1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표기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9-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 작동 가능함						*작동 모습 사진 첨부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접수대	10. 접수대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높이로 “최소 1군데” 이상 설치되어 있음 (0.7m 이상 0.9m 이하)				*“아니오”인 경우, 접수대높이 _____m
	11. 접수대 하부공간은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 1군데” 이상 설치되어 있음 (높이0.65m이상, 깊이0.45m이상)				* 높이와 깊이 모두 상기 기준을 충족시켜야 “예” * 높이 _____m * 깊이 _____m
	12.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음				
시설 접근성	13.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13-1.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14.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럭이 설치되어 있음	☞ 14-1			
	14-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음				* 사진 첨부
	15.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모두 있음	하나만 있거나 없음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16.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너비 _____m
	17.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5m 이상”임				* 한 기관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 _____m - 깊이 _____m
	18.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_____m
	19.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장애 인 화 장 실	20.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21. 화장실의 세면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하단 0.65m, 상단 0.85m ” 이상임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실측” 상단 _____m 하단 _____m * 하단을 재기 힘든 경우, 상단만 측정할 것
		22.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아래 질문은 병원 “원무과”에서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23. 시각장애인이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 본인의 의료관련 기록을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자료 <input type="checkbox"/> 확대문서 <input type="checkbox"/> 보이스바코드 <input type="checkbox"/> 확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3-1. 요구 방식					<input type="checkbox"/> 의사에게 직접 요구 <input type="checkbox"/> 원무과에 요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3-2. 제공 방식					<input type="checkbox"/> 직접 수령 <input type="checkbox"/> 집으로 송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3-3. 제공 기간 _____ 일					
	23-4. 제공하지 않는 이유					<input type="checkbox"/>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 청각장애인이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수화통역 <input type="checkbox"/> 화상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24-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함				* 2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표기
	24-2. 요구 방식				<input type="checkbox"/> 의사에게 직접 요구 <input type="checkbox"/> 원무과에 요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3. 제공 방식				<input type="checkbox"/>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input type="checkbox"/> 화상전화기 구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4. 제공 기간 _____ 일				
	24-5. 제공하지 않는 이유				<input type="checkbox"/>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여부 및 제공자				* “예”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의사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5. 외래진료시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진료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 음성알림 등의 수단이 있음		☐ 25-1		<input type="checkbox"/> 전광판/모니터 <input type="checkbox"/> 음성알림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5-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이 제공되고 있음				* 보조인력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원무과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 청각장애인이 병원진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 24-1, 24-2, 24-3,24-4	☐ 24-5, 24-6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수화통역 <input type="checkbox"/> 화상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1. 화상전화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함				* 2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표기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24-2. 요구 방식				<input type="checkbox"/> 의사에게 직접 요구 <input type="checkbox"/> 원무과에 요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3. 제공 방식				<input type="checkbox"/>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input type="checkbox"/> 화상전화기 구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4. 제공 기간 _____ 일				
	24-5. 제공하지 않는 이유				<input type="checkbox"/>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6. 대체수단으로써 “필담” 제공여부 및 제공자				* “예”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의사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5. 외래진료시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진료순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 음성알림 등의 수단이 있음		☞ 25-1		<input type="checkbox"/> 전광판/모니터 <input type="checkbox"/> 음성알림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5-1.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조 인력이 제공되고 있음				* 보조인력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원무과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홈페이지 사용 및 정보접근	26.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병원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병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7.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각장애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예약이 가능함				

<9> 병원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1) 종합병원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36	36 (경사로설치:16)	0	0	100.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36	34	2	0	94.4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36	35	1	0	97.2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36	22	0	14	100.0
	점형블럭 설치 (점형블럭 훼손여부)	36	23 (훼손:1)	13	0	63.9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36	17	19	0	47.2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17	4	0	13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36	36	0	0	100.0
복도 및 동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36	35	1	0	97.2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동행로에 장애물 없음	35	32	3	0	91.4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36	34	0	2	100.0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36	22	14	0	61.1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36	8	28	0	22.2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36	17	19	0	47.2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36	36 (남녀구분:26)	0	0	100.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36	24 (훼손:3)	12	0	66.7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36	31	5	0	86.1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36	31	5	0	86.1
	화장실 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36	30	6	0	83.3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장애인 화장실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36	35	1	0	97.2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36	29	7	0	80.6
	잠금장치 정상 작동	36	28	4	4	87.5
	적정 세면대 높이	36	13	22	1	37.1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36	26	9	1	74.3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36	15	21	0	38.9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36	13	23	0	36.1
	대체수단으로써 필담제공여부	23	22	1	0	95.7
	진료순서를 알 수 있는 전광판, 음성알림 등의 수단 제공(보조인력제공)	36	20	16 (보조인력:9)	0	55.6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사용만으로 홈페이지 상 게시된 병원이용정보 확인	36	17	14	5	54.8
	키보드사용만으로 병원진료예약 가능	36	12	19	5	38.7

(2) 한방병원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6	22 (경사로설치:9)	4	0	84.6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6	26	0	0	10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6	15	11	0	57.7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26	14	1	11	93.3
	점형블럭 설치 (점형블럭 훼손여부)	26	14 (훼손:0)	12	0	53.8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26	10	16	0	38.5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10	4	0	6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6	17	9	0	65.4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6	24.	2	0	92.3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4	20	4	0	83.3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6	23	0	3	100.0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26	10	16	0	38.5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26	9	17	0	34.6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26	10	16	0	38.5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6	16 (남녀구분:13)	10	0	61.5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6	11 (훼손:1)	5	10	68.8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26	14	2	10	87.5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26	11	5	10	68.8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6	12	4	10	75.0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6	14	2	10	87.5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6	12	4	10	75.0
	잠금장치 정상 작동	26	11	2	13	84.6
	적정 세면대 높이	26	10	5	11	66.7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6	9	6	11	60.0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26	5	21	0	19.2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26	5	21	0	19.2
	대체수단으로써 필답제공여부	21	20	1	0	95.2
	진료순서를 알 수 있는 전광판, 음성 알림 등의 수단 제공(보조인력제공)	26	3	23 (보조인력22)	0	11.5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사용만으로 홈페이지 상 게시된 병원이용정보 확인	26	5	11	10	31.3
	키보드사용만으로 병원진료예약 가능	26	3	13	10	18.8

(3) 요양병원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45	42 (경사로설치:19)	2	1	95.5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45	42	3	0	93.33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45	40	5	0	88.89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45	18	0	27	100.0
	접형블럭 설치 (접형블럭 훼손여부)	45	31 (훼손:2)	14	0	68.89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45	11	34	0	24.44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11	4	0	7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45	34	11	0	75.6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45	44	1	0	97.8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44	42	2	0	95.5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45	43	0	2	100.0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45	16	29	0	35.6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45	2	43	0	4.4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45	18	27	0	40.0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45	39 (남녀구분:32)	6	0	86.7
	접형블럭 설치(접형블럭 훼손여부)	45	23 (훼손:3)	16	6	59.0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45	33	6	6	84.6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45	36	3	6	92.3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45	29	10	6	74.4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45	33	6	6	84.6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45	32	7	6	82.1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장애인 화장실	잠금장치 정상 작동	45	27	3	15	90.0
	적정 세면대 높이	45	13	25	7	34.2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45	30	8	7	79.0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45	10	35	0	22.2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45	4	41	0	8.9
	대체수단으로써 필담제공여부	41	34	7	0	82.9
	진료순서를 알 수 있는 전광판, 음성 알림 등의 수단 제공(보조인력제공)	45	2	43 (보조인력:34)	0	4.4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사용만으로 홈페이지 상 게시된 병원이용정보 확인	45	6	23	16	20.7
	키보드사용만으로 병원진료예약 가능	45	0	29	16	0

(4) 치과병원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2	17 (경사로:8)	3	2	85.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2	21	1	0	95.5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2	19	3	0	86.4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22	9	1	12	90.0
	점형블럭 설치 (점형블럭 훼손여부)	22	13 (훼손:2)	9	0	59.1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22	3	19	0	13.6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3	2	0	1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2	17	5	0	77.3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2	21	1	0	95.5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1	20	1	0	95.2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2	19	2	1	90.5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22	12	10	0	54.6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22	8	14	0	36.4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22	11	11	0	50.0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2	15 (남녀구분:7)	7	0	68.2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2	11 (훼손:0)	4	7	73.3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22	12	3	7	80.0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22	13	2	7	86.7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2	12	3	7	80.0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2	11	4	7	73.3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2	11	4	7	73.3
	잠금장치 정상 작동	22	13	1	8	92.9
	적정 세면대 높이	22	7	6	9	53.9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2	9	4	9	69.2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22	6	16	0	27.3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22	6	16	0	27.3
	대체수단으로써 필담제공여부	16	14	2	0	87.5
	진료순서를 알 수 있는 전광판, 음성 알림 등의 수단 제공(보조인력제공)	22	1	21 (보조인력:19)	0	4.5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사용만으로 홈페이지 상 게시된 병원이용정보 확인	22	5	17	0	22.7
	키보드사용만으로 병원진료예약 가능	22	4	18	0	18.2

(5) 병원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7	25 (경사로:3)	2	0	92.6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7	27	0	0	10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7	25	2	0	92.6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27	8	0	19	100.0
	점형블럭 설치 (점형블럭 훼손여부)	27	19 (훼손:3)	8	0	70.4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등 설치	27	7	20	0	25.9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 여부	7	1	1	5	5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7	24	3	0	88.9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7	26	1	0	96.3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6	21	5	0	80.8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7	27	0	0	100.0
접수대	적정 접수대 높이 (0.7m 이상 0.9m 이하)	27	9	18	0	33.3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높이 0.65m, 깊이 0.45m 이상)	27	4	23	0	14.8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27	9	18	0	33.3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7	23 (남녀구분:19)	4	0	85.2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7	11 (훼손:0)	12	4	47.8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27	21	2	4	91.3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27	20	3	4	87.0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7	22	1	4	95.7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7	19	4	4	82.6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7	19	4	4	82.6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장애인 화장실	잠금장치 정상 작동	27	17	2	8	89.5
	적정 세면대 높이	27	8	15	4	34.8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7	15	8	4	65.2
정당한 편의 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또는 필요한 용품 제공	27	3	24	0	11.1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화상전화기 실제 작동가능)	27	5	22	0	18.5
	대체수단으로써 필담제공여부	22	18	4	0	81.8
	진료순서를 알 수 있는 전광판, 음성 알림 등의 수단 제공(보조인력제공)	27	7	20 (보조인력:14)	0	25.9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사용만으로 홈페이지 상 게시된 병원 이용정보 확인	27	7	15	5	31.8
	키보드사용만으로 병원진료예약 가능	27	5	17	5	22.7

과제 3. 장애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시설 접근성
 -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청소년활동시설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2 모니터링 목적

- 최근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청소년의 문화 욕구를 반영
-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 및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편의제공 여부와 웹접근성 등을 모니터링 하여 관련 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장애인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3 모니터링 기간

○ 2013. 7. 8. ~ 2013. 8. 9.

4 4. 모니터링 대상

- 전국 4개 권역 16개 지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총 117개소
- 청소년활동시설 및 해당 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관련 자료에의 접근 및 의사소통 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중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을 최종 선정 후 모니터링 실시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 기관〉

(단위: 곳)

구 분	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청소년 활동시설	117	24	12	24	24	14	19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50명 참가: 장애인 참가비율 **68.7%**

〈장애유형별 모니터링 참여 현황〉

(단위: 명)

지역	계	장 애 유 형				
		비(非)장애	지체 등	시각	청각·언어	정신
서울	23	11	3	7	2	0
대전	20	3	14	2	0	1
제주	22	4	16	0	2	0
부산	24	7	14	1	1	1
대구	36	16	15	3	2	0
광주	25	6	15	3	1	0
계 (비율)	150 (100)	47 (31.3)	77 (51.3)	16 (10.7)	8 (5.3)	2 (1.4)

〈2〉 모니터링 추진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모니터링 대상 기관 사전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7월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청소년활동시설 선정
- 7월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계획안 보고(2013. 7. 5.)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주관
서울	2013. 7. 9.(화) 15: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별관	장애 차별 조사1과
대전	2013. 7. 11.(목) 14:00	대전장애인인권포럼 회의실	
제주	2013. 7. 17.(수) 14:00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회의실	
부산	2013. 7. 10.(수) 14:00	부산인권사무소 배움터	부산 인권 사무소
울산	2013. 7. 9.(화) 13:00	울산장애인인권포럼 교육장	
창원	2013. 7. 11.(목) 15:00	경남 장애인차별 상담네트워크 교육장	
경북북부 (상주, 문경, 예천)	2013. 7. 10.(수) 11: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 사무실	대구 인권 사무소
대구	2013. 7. 8.(월) 14:00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주	2013. 7. 9.(화) 11: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포항	2013. 7. 3.(수) 10:00	포항 장애인평생교육원	
울진	2013. 7. 5.(금) 13:0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구미	2013. 7. 5.(금) 11:00	구미시 형곡동	
광주	2013. 7. 9.(화) 14:00	광주은행 본점 6층 회의실	광주 인권 사무소
전주	2013. 7. 10.(수) 14:00	전주 중증장애인 지역생활 지원센터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선정 배경 및 관련 규정 설명
- 청소년활동시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 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모니터링 대상 기관 목록 협조 요청
 - 여성가족부 자료협조 요청(2013. 6. 17.)
- 4개 권역 118개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2013. 7. 5.)
- 현장 방문 전 대상 기관별로 유선 연락 및 담당자 내정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로 현장 모니터링 월 2회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단원 : 조별 체크리스트 1부, 개인별 보고서 1부 제출
- 권역별 담당자 : 모니터링 단원이 제출한 체크리스트 및 활동보고서 취합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바.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해 기관 협의 진행(2013. 10. 14.)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시설 접근성

- 장애인의 청소년활동시설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장애인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나.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물적·인적 서비스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청소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관련정보 제공 및 활동 등에 있어서의 점자자료,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다. 청소년활동시설 웹 사이트에서의 정보접근성

- 청소년활동시설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높이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전면 유효거리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장애인화장실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유도·안내설비 설치 · 주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구 전면 점형블럭 설치 · 화장실출입구 옆 벽면에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 설치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관련 자료를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용품(확대경 등) 제공, 보조인력 제공
	청각	·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보청기)·수화통역 등 제공, 보조인력 제공
	지체	· 장애인과 장애인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공통	· 장애인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여부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시각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신청
	지체	

3 관련 규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제3호 및 제4호

나.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제9조(접근성)
- 「장애인권리협약」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장애인권리협약」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장애인권리협약」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 (시설물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라. 기 타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이라 함) 제7조 (대상시설)
- 「편의증진법」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제16조 (시설 이용 상의 편의제공)
- 「편의증진법」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편의증진법 시행령」제3조 관련 [별표1], 제4조 관련 [별표2]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4〉 모니터링 결과 분석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높이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전면 유효거리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장애인화장실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유도·안내설비 설치 · 주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구 전면 점형블럭 설치 · 화장실출입구 옆 벽면에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117	106 ²¹⁾ (경사로:64)	8	3 ²²⁾	93.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117	110	7	0	94.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17	106	11	0	90.6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117	30	0	87	100.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17	68 (훼손:3)	49	0	58.1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17	16	101	0	13.7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6	4	2	0	66.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117	74	20	23 ²³⁾	78.7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117	109	8	0	93.2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109	100	9	0	91.7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117	77	36	4 ²⁴⁾	68.1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117	95 (남녀구분:60)	22	0	81.2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17	51 (훼손:2)	44	22 ²⁵⁾	53.7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117	29	66	22 ²⁵⁾	30.5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	117	46	49	22 ²⁵⁾	48.4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17	85	10	22 ²⁵⁾	89.5
	잠금장치 정상 작동	117	72	11	34 ²⁶⁾	86.7
	화장실 내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0.8m이상)	117	85	10	22 ²⁵⁾	89.5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17	70	25	22 ²⁵⁾	73.7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117	80	15	22 ²⁵⁾	84.2
	적정 대변기 높이(0.4m이상 0.45m 이하)	117	68	27	22 ²⁵⁾	71.6
	적정 세면대 높이(하단 0.65m, 상단 0.85m이상)	117	40	48	29 ²⁷⁾	45.5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117	69	19	29 ²⁷⁾	78.4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 충족/(충족+미충족)

다. 결과 분석

○ 건물 주출입구 단차제거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건물 주출입구의 단차를 제거한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93%에 해당하는 106개 기관으로 나타남. 이 중 39.3%에 해당하는 42개 기관은 주출입구 단차가 2cm이하였으며, 61%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에서는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단차를 극복함.
-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의 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편의시설을 설치한 64개 기관 중 98.4%에 해당하는 63개 기관에서는 설치된 편의시설(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이 작동 가능했으며(경사로의 경우 경사가 완만함), 1.6%에 해당하는 1개 기관에서는 휠체어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 휠체어사용자의 시설 접근이 어려웠음.
- 주출입구 단차제거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경사로 한 편에 비치된 화분으로 인해 폭이 좁아져 휠체어 이동이 불편한 경우’, ‘설치된 임시경사로의 폭이 좁고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등이 있었음.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0.8m이상)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과를 위한 충분한 거리(0.8m이상)를 확보한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94%에 해당하는 110개 기관으로 나타남.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주출입구에 설치된 자판기로 인해 통과유효폭이 좁아진 경우’가 있음.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1.2m이상)

- 전면 유효거리는 ‘출입구 턱 또는 경사로 상단 끝부터 건물입구(문)까지의 거리’

-
- 21)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이하이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 22) 단차가 2cm이상이라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경우
 - 23)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 24) 기관이 1층으로 된 경우
 - 25)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경우
 - 26)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 27)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장애인화장실에 세면대가 없는 경우

로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건물입구에 착지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전면의 적정 유효거리를 의미하는바, 이를 충족한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90.6%에 해당하는 106개 기관으로 나타남.

○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 주출입구가 회전문이나, 재질이 무거운 유리 또는 금속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뇌병변 장애인 등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모니터링 기관 중 주출입문의 형태가 회전문인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며, 30개 기관 모두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문,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불편함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 회전문을 대신하여 설치된 문의 종류를 모니터링한 결과 자동문 9곳(30%), 여닫이문 19곳(63.3%), 미닫이문 9곳(30%)으로 여닫이문을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설치된 문의 종류는 중복으로 체크 가능)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돕기 위해 주출입구 부근에 점형블럭을 설치 한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58.1%에 해당하는 68개 기관으로 나타남. 이 중 4.4%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의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훼손여부를 해당 기관에 알리고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점형블럭 위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음.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안내설비 설치

-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에 건물 내부 구조 및 설계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하나를 설치한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16개 기관으로 13.7%의 매우 낮은 이행비율을 나타냄. 따라서 불이행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규정을 안내하여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가 필요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또한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함.
-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23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94개 기관 중, 78.7%에 해당하는 74개 기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
-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가 없거나, 흐려서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이 없거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음.

○ 복도 또는 통행로 통과유효폭(1.2m 이상) 및 장애물 설치 여부

- 복도 또는 통행로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휠체어가 통과하기 충분한 거리(1.2m이상)를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93.2%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적정 통과유효폭(1.2m)을 준수한 기관 중 8.3%에 해당하는 9개 기관에서 화분이나 의자 등을 복도에 배치하여 실제 유효폭이 1.2m가 되지 않았음. 모니터링 시, 단원이 복도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 줄 것을 요청 하였고, 모든 기관이 즉시 치우거나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함.

○ 기관이 2층에 있거나, 또는 기관이 2층 이상인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기관이 2층에 있거나 또는 기관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 2층 이상을 올라갈 필요가 있는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96.6%에 해당하는 113개 기관이며, 이 중 층간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77곳(68.1%)으로, 이 중 1곳은 설치된 편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음.
- 층간 이동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엘리베이터 66곳(85.7%), 휠체어리프트 10곳(13%), 이동식경사로 1곳(1.3%)으로 설치된 편의

시설 중 엘리베이터의 비율(85.7%)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음.

- 층간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프로그램실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장애인화장실 접근성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기관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81.2%에 해당하는 95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3.2%에 해당하는 60개 기관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였음.
 - * 이하에서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95개 기관(이하 ‘설치된 기관’이라 함)만을 기준으로 기술함.
- 설치된 기관 중 화장실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을 설치한 기관은 51개 기관으로 53.7%에 해당하며, 이 중 2곳(3.9%)의 점형블럭은 훼손됨.
- 설치된 기관 중 화장실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한 기관은 29곳(30.5%)이었으며,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기관은 46곳(48.4%)으로 나타남.
- 화장실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바깥쪽으로 개폐하도록 해야 함. 설치된 기관 중 화장실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10개 기관으로 10.5%에 해당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을 적정기준(0.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 기관은 85개 기관으로 89.5%에 해당하며, 장애인 화장실 내 휠체어의 충분한 회전 공간(너비 1.0m이상, 깊이 1.8m이상)을 확보한 기관은 70개 기관으로 73.7%에 해당함. 그리고 화장실 내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또한 80곳에서 설치하여 84.2%에 해당함.
- 설치된 기관 중 장애인화장실의 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83곳(87.4%)이며, 이 중 설치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은 72곳(86.7%)으로 나타남.
- 설치된 기관 중 대변기 좌대의 높이를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에 맞게 설치한 청소년활동시설은 68

개 기관으로 71.6%에 해당함.

- 설치된 기관 중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8곳을 제외한 나머지 87개 기관 중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적절한 높이의 세면대(하단 0.65m, 상단 0.85m 이상)를 설치한 곳은 40곳(45.5%)으로 나타났으며,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발판 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면대의 하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69곳으로(78.4%) 나타남.
- 장애인화장실 설치 관련 부적절 사례로는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편한 경우’, ‘장애인화장실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채 방치된 경우’, ‘화장실출입구의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음.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제2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보조인력, 점자안내책자 등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
- 전국 4개 권역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주출입구 단차제거,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전면유효거리, 주출입문 형태 및 재질,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 장애인화장실 설치, 화장실 내부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잠금장치 설치 항목에서는 적정설치율이 모두 80%이상이었음.
- 그러나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등 유도·안내설비 설치, 장애인화장실 점형블럭 설치, 화장실 옆 벽면에 남녀 구별 점자표지판 설치, 세면대 높이 등은 이행비율이 낮아 장애인의 시설접근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함.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 경사로 한 편에 비치된 화분으로 인해 폭이 좁아져 휠체어가 이동 시 불편한 경우
- 설치된 임시경사로의 폭이 좁고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
- 점형블럭 위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
- 주출입구에 설치된 자판기로 인해 통과유효폭이 좁아진 경우

○ 복도 및 통로

-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사용자가 2층 이상을 올라가지 못 하는 경우

○ 장애인주차구역

- 장애인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가 없거나, 흐려서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인주차구역의 표지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장애인 화장실

-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편한 경우
- 장애인화장실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채 방치된 경우
- 화장실출입구의 점형블럭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관련 자료를 점자자료·확대문서 등의형태로 제공하는지 여부
	청각	·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수화통역 등 제공
	지체	· 장애인과 장애인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공통	· 장애인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여부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공 여부	117	22	95	0	18.8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95	11	84	0	11.6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서비스 등 제공 여부	117	29	88	0	24.8
	- 화상전화기 등을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여부	2	2	0	0	100.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88	10	78	0	11.4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117	62	55	0	53.0
	현재(7~8월)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가능여부	117	64	34	1928)	65.3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 충족/(충족+미충족)

28) 2013년 7~8월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다. 결과 분석

○ 시각장애인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편의제공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청 소년 활동기관에서 제공하는 리플렛에는 시설이용안내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목자형식으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기 어 려운 정보에 대하여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및 확대경 등의 편의서비 스를 제공해야함. 모니터링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22개 기관으로 18.8%의 매우 낮 은 이행비율을 나타냄.
-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편의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모니 터링한 결과 점자자료 제공 5곳(22.7%), 확대문서 제공 17곳(77.3%), 확대경 구 비 4곳(18.2%)으로 나타남. (편의서비스 종류는 중복으로 체크 가능)
-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편의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15곳(68.2%)이 직접 수령의 방식이었고, 9곳(40.9%)은 우편으 로 송부, 6곳(27.3%)은 E-mail로 전달하는 방식이었고, 나머지 3곳(13.6%)은 기타 의견으로 ‘비치되어 있는 확대경을 바로 사용가능’이라고 응답함.
- 편의서비스 제공기간은 당일 제공하는 기관은 39곳 중 17곳(43.6%)이며, 1일 소 요되는 기관은 14곳(35.9%), 3일 소요되는 기관은 6곳(15.4%), 7일 이상 소요되 는 기관은 2곳(5.1%)으로 나타남. (편의서비스 제공기간은 중복으로 체크 가능)
-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 전에 편의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11.6% 에 해당하는 11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고 응답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이제까 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기관이 76곳(80%)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 해서)’라고 16곳(16.8%),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고 9곳(9.5%), ‘필요성을 못 느껴 서’라고 8곳(16.2%)에서 응답함.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 은 중복으로 체크 가능)

○ 청각장애인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하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등)와 수화통역 등 제공 여부

-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수화통역, 화상전화, 보청기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해 상기 편의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24.8%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으로 나타남. 이 중 28곳(96.6%)은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1곳(3.4%)은 화상전화기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구비되어 있는 화상전화기가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해본 결과 모두 작동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편의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제공가능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11.4%에 해당하는 10개 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답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기관이 53곳(6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13곳(14.8%),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고 답한 기관이 7곳(8%),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6곳(6.8%)에서 응답함.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은 중복으로 체크 가능)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여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해야함. 보조인력 배치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17개 기관 중 53%에 해당하는 62개 기관에서 보조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응답함.

○ 장애인의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 참여

- 7~8월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17개 기관 중 19곳(16.2%)은 7~8월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없었고, 나머지 98개 기관들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어학,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바, 기관에 따라 적게는 1개부터 최대 150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다양하였음.

- 그러나 운영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기관은 98개 기관 중 65.3%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이었음. 이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경우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나 가까운 교외로 나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의 경우 체육, 미술, 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의 경우 음악, 미술, 체육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 지체장애인의 경우 미술, 음악프로그램에 주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모두 참여가 가능한데 시각, 지체 등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기관들이 있었음. 또한 활동보조인 동행 등의 특정 조건하에서만 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기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0개 이상이 됴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은 1~2개에 불과한 기관 등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하는 기관들도 있었음.
- 한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기관마다 사유는 다양했으나 다음과 같이 6개의 대표적인 사유로 나눌 수 있었음.
 - ① 장애인에게 요청받은 적이 없어 프로그램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② 비용 상의 문제로 인해 제공할 수 없음
 - ③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건물 내 층간 이동 시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참여하지 못함
 - ④ 시각·청각장애인의 프로그램 참가에 필요한 점자, 수화통역 등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⑤ 프로그램의 특성이 장애유형과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음
 - ⑥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피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참여하지 못함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서는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 내용으로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장비 및 기기제공, 관련 정보제공 등이 있음.

- 전국 4개 권역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형태(점자자료, 확대문서 등)로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기관의 18.8%에 해당하는 22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청각장애인이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서비스, 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기관 중 24.8%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에 불과하였음.
-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기관은 전체 117개 기관 중 53%에 해당하는 62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7~8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98개 기관 중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65.3%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으로 나타남.
-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7개 기관 중, 장애인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시 거부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으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인적·물적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였음. 따라서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률 조항을 안내 후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음
 -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확대문서를 제공 하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불가능함
 - 수영장 내 휠체어 비치 시 부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비치를 거부함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인력 배치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보조인력은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보조인력 배치는 불가능함

《 주요 사례 》

- 보조인력 배치가 1회는 가능하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원할 시 보조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함
- 활동보조인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참여 가능
- 중증·지체장애인은 보조인력을 제공받지 못하며, 경증장애인에게만 보조인력을 배치함

○ 장애인의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함
- 기관은 장애인으로부터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어 보조인력 및 편의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프로그램실에 접근이 불가능함(층간편의시설 미설치, 높은 문턱, 점형블럭 미설치 등)
- 예산문제로 인하여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피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참여하지 못함

3

웹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세부사항
웹접근성	시각	-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시설이용 정보 확인
	지체	-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 신청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모니터링 항목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시설이용정보 확인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 신청 가능
모니터링 기관	117	
충족	46	18
미충족	61	46
해당없음	10 ²⁹⁾	53 ³⁰⁾
이행비율(%)	43.0	28.1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 = 충족/(충족+미충족)

다. 결과 분석

○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 내 게시된 시설이용정보 확인

- 시설이용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등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웹사이트 내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키보드만으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함.
-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7개 청소년활동시설 중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91.5%에 해당하는 107개 기관이고, 이 중 43%에 해당하는 46개 기관에서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설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

-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 아동, 성인들을 위한 예술, 체육,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컴퓨터로 손쉽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웹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웹사이트가 있는 107개 기관 중 59.8%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에서 웹사이트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였고, 이 중 28.1%에 해당하는 18개 기관에서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29) 기관의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30) 기관의 웹사이트가 없거나, 웹사이트 내 프로그램 신청기능이 없는 경우

라.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 21조에서는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해 시설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 모니터링 결과, 키보드 사용만으로 웹사이트에서 시설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웹사이트가 있는 107개 청소년활동시설 중 43%에 해당하는 46개 기관이었고,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28.1%에 해당하는 18개 기관에 불과하였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영역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웹접근성을 확보해야함.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웹접근성의 이행비율이 매우 낮아, 대다수 기관이 웹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를 피모니터링 기관에 알리고 관련 조항을 안내하여 법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마. 모니터링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 웹사이트 이용 시 팝업 창이 있어 Tab키로 이동이 불가능함
- 웹사이트 메뉴항목에서는 간단한 키보드 사용만으로 이동이 되지만, 각 메뉴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
- 메뉴가 플래시로 되어 있어 간단한 키보드 사용만으로 원하는 정보에 이동이 불가능함
-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가 없어 내용을 알 수 없음

<5> 모니터링 총평



1 청소년활동시설 시설물 접근성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주출입구 단차제거,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및 전면유효거리,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등 설치, 복도 및 통로의 통과유효폭, 장애인화장실 설치, 화장실 내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잠금장치 항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전체 모니터링 기관의 80%이상이었음.
- 그러나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등 유도·안내 설비 설치 13.7%, 화장실 옆 벽면에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30.5%, 적정 세면대 높이 45.5%, 화장실 점형블럭 설치 53.7%, 점형블럭 설치 58.1%, 층간 편의시설 설치 68.1%로 장애인의 원활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을 위해 이 부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접근성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시설접근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을 독려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함

2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기관 중 18.8%, 청각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및 필요한 용품(보청기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24.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배제하거나, 정당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4조, 2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청소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및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청소년활동시설 웹접근성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7개 기관 중 웹사이트가 있는 기관은 91.5%에 해당하는 107개 기관이었으며, 키보드사용만으로 웹사이트 내 게시된 시설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43%,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28.1%로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웹사이트 내 게시된 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회원가입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한데, 키보드사용만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기관이 있어 시정이 필요함.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기타 의견으로 웹사이트 내 게시된 일부 내용이 이미지 또는 플래시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체 피모니터링 기관에 알려 점검 및 개선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6> 사후 조치 및 향후 계획



-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피모니터링 기관에 각 영역별 개선사항 통보 후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독려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

- 결과발표회를 통한 홍보효과 재고
 - 11월~12월 초, 모니터링 실시 권역별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유도

- 개선 협의 불응 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검토
 -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개선에 불응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권고 절차 진행 검토

<7> 모니터링 결과 조치 내용 및 회신 등 개선사항

1 모니터링 결과 협조 요청 공문 송부

가. 수신자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주광역시, 전주 시장,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창원시장, 경상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전라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구미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울진군수, 예천군수

제목 2013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공공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결과 협조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동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 5월에는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을, 7월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 차별사례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피모니터링 공공기관, 청소년활동시설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계획(붙임 참조) 등을 2013. 10. 28.(월)까지 우리 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신 등 개선 사항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서울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실행 가능 여부 	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서 제공 - 수화통역 가능한 직원 근무중 - 보조인력 요구 시 항시 배치 가능 - 스포츠 및 사회교육강좌 모두 장애인 청소년이 참여 가능 - 웹사이트 개편(2013년 12월) 	
	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 예정(2013년 12월 까지) - 장애인화장실 세면대 설치 예정(2013년 12월까지) - 추후 발행하는 시설이용 홍보물에는 점자자료 등의 형식으로 제공 	
	③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이후) - 장애인화장실 옆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3년) - 확대경 구매 예정(2013년) - 지역 내 수화통역센터와 협의하여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예정 - 수영, 댄스 프로그램에 전문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④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6월 중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을 구매 예정 - 장애인화장실 관련 보수 예정(2014년 하반기) - 2014년 초 프로그램 안내문 제작 시 점자 안내문 제작 예정 - 화상전화서비스 제공 예정(2014년) - 장애인이 참여 요구 시 프로그램 참여 가능 	
	⑤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안내 팸플렛 제작 시 보이스 바코드 삽입(2014년 상반기) - 인근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보조인력 배치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자 등 인력 충원 예정 - 홈페이지 리뉴얼 예정(2014년 상반기) 	
	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개편 예정(2014년) 	
	⑦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화장실출입구 옆 벽면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3년 12월) -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점자자료, 확대문서 등 자료를 제공할 예정 - 직원 대상으로 수화통역 교육 예정 - 보조인력 요청 시 강사와 협의 후 진행 예정 - 웹사이트 업체와 논의하여 진행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실행 가능 여부	⑧ 기관	- 장애인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와 문 개폐 방향 및 세면대 높이 보수 예정(2014년) -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과 보조인력 배치를 검토하여 반영 예정	
	⑨ 기관	- 주출입구 및 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화장실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및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 부착 예정(2014년 상반기) - 화장실 내부 대변기간 통과유효폭 보수공사 예정-	
	⑩ 기관	- 예산 확보 후 주출입구 촉지도식 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예정 - 점형블럭 교체 완료 - 화장실 사용여부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잠금장치로 교체 예정 -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에서 수련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도입할 예정	
	⑪ 기관	- 엘리베이터 옆 현황판에 층별 점자 안내판 추가 설치 예정 - 장애인화장실 및 각 화장실 입구에 남, 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지역수화통역센터 이용하여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확대문서 제공	
	⑫ 기관	- 2014년 차기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예산 확보후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 - 2014년 차기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실시 계획	
	⑬ 기관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및 웹접근성은 예산확보 후 개선하도록 노력	
	⑭ 기관	- 2014년 상반기에 시설이용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보청기 또는 화상전화기) 설치 예정 - 보조인력 제공 -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⑮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3년) - 지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조인력 제공 - 웹 제작 관리업체와 협의 후 개선 예정(2013년)	
	⑯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설치 완료 - 기관 내 수화프로그램 개설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서비스 제공 -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웹접근성 개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실행 가능 여부	⑰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3년 12월) - 시설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로 제공(2014년 상반기) - 홈페이지 리뉴얼 예정(2014년 상반기)	
	⑱ 기관	- 2014년도 예산 반영 후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웹접근성은 점진적 예산 편성 후 조치 예정	
	⑲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2013년 12월) - 화장실출입구 옆 벽면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3년 12월) - 화장실 바다 보수공사를 통해 세면대 개선 예정 -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설치 - 수화통역 보조인력 배치 및 화상전화서비스 제공 예정	
	⑳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3년 11월) - 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3년 12월) -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세면대 보수 예정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점차적으로 개선	
	㉑ 기관	- 점자책자 확보 및 요청 시 확대문서 제공 예정 - 직원이 수화통역 제공 - 전문 인력(사회복지사)을 통해 프로그램 이용 시 보조인력 제공 - 웹사이트 보수 작업 중	
	㉒ 기관	- 2014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주출입구 안내음성장치 등을 설치할 예정 - 자체적으로 화장실 내부 공간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2014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공사 추진 계획 - 2014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㉓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3년 12월 말)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3년 12월 말) - 세면대 하부공간 보수(2013년 12월 말) - 시각장애인이 요구 시 확대문서, 확대경 제공 - 청각장애인이 요구 시 수화통역, 보청기 제공 -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요구 시 수화통역사 및 사회복지사 등 보조인력 배치 - 웹접근성 개선 방법을 강구하여 2013년 12월 말 내로 조치 예정	
	㉔ 기관	- 2014년도 시설기능보강사업 중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 - 추후 예산 확보 후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p> <p>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p> <p>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p>	대전		
	① 기관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개선방안 검토 중	
	② 기관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검토 중	
	③ 기관	- 장애인 단체가 이용할 경우 방송 안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에 따른 보조인력 제공 - 웹사이트 개편 작업 중	
	④ 기관	- 2014년도 하반기 리모델링공사 계획에 복도 및 통로, 장애인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 웹접근성 등을 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	
	⑤ 기관	- 건물 주출입구에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 - 위탁기관과 상의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정 - 화장실 수리 진행 시 장애인화장실 설치계획 반영 - 프로그램 관련 자료 제작 시 점자자료 제작 및 확대경 구입 예정 - 2014년도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웹사이트 관리자와 상의 후 홈페이지 사용 및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⑥ 기관	- 추후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사업에 점형블럭 및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2014년 상반기)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점자표지, 대변기 높이 개선 예정(2014년 상반기) - 지역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개선 방안 모색 - 자원봉사자 등 배치인력 충원	
	⑦ 기관	- 빠른 시일 내에 유도·안내 설비 설치 계획 - 일반화장실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안 논의 중 -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이용 시 필요한 자료 및 수화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 중	
	⑧ 기관	-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대해 추후 리모델링 시 적극 반영 - 점자자료 제작 및 확대경 구입 예정(2014년) - 웹사이트 리뉴얼 시 키보드만으로 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할 예정	
⑨ 기관	- 점형블럭 및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 화장실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 -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의 보조인력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중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⑩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회전문 대신 별도의 문 설치 예정(2014년도 예산 확정 후) - 웹사이트 개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할 예정		
	⑪ 기관	- 2014년 하반기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화장실 출입구에 점자표지판 및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설치 예정(2014년 하반기) - 확대문서 제작 및 확대경 비치 예정 -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및 사전 요구 시 보조인력 제공 - 홈페이지 재구축시 개선할 예정(2014년 상반기예정)		
	⑫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3년 하반기) - 프로그램 진행 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웹개발자에게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할 계획(2014년)		
	제주			
	① 기관	- 2014년 하반기 점형블럭 설치 및 점자안내판 설치 - 2014년 상반기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부착 예정 - 사전 요구 시 확대문서 제공 - 수화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 제공 -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예정(2014년 상반기)		
	② 기관	- 2014년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회전문 대신 별도의 문 설치 예정		
	③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2014년) - 점자자료비치, 화상전화기 설치(2015년)		
	④ 기관	- 2014년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화장실 앞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부착		
	⑤ 기관	- 2014년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2014년 화장실출입구 벽면에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부착, 화장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설치 예정 - 점자자료 비치 및 화상전화기 설치 예정(2015년)		
	⑥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 휠체어리프트 설치 예정(2015년) -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옆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부착 및 잠금장치 설치(2014년) - 화장실 내부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2015년) - 점자자료 비치 및 화상전화기 설치 예정(2015년)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신청 가능 여부	⑦ 기관	- 2014년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휠체어리프트 설치 예정	
	⑧ 기관	- 2014년 주출입구 점형블럭, 점자안내표지판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 설치 예정 - 휠체어리프트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2015년) - 점자자료 비치 및 화상전화기 설치 예정(2015년)	
	⑨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2014년 상반기)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수화통역가능한 직원이 서비스 제공	
	⑩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수화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보조인력) 제공	
	⑪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사전 요구 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자료 확대문서로 제공	
	⑫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및 회전문 대신 별도의 문 설치 예정(2013년 12월 완료)	
	⑬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화장실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설치(2014년 상반기) - 잠금장치 보수(2014년 상반기) - 사전 요구 시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 확대문서로 제공(1주일 기간 내) -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수화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 제공	
	⑭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2014년 상반기) - 사전 요구 시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 확대문서로 제공(1주일 기간 내)	
	⑮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2014년 상반기)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사전 요구 시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 확대문서로 제공(1주일 기간 내) -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수화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 제공	
	⑯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설치(2014년 하반기)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사전 요구 시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 확대문서로 제공(1주일 기간 내) -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수화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 제공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실행 가능 여부 	⑰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화장실 출입구 전면 점형블럭,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및 대변기 높이 보완 예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비치 및 화상전화기 설치(2015년) 		
	⑱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주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설치 - 화장실 앞 점형블럭, 남녀구분 점자표지판, 잠금장치 설치 예정(2014년) 		
	⑲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안내판 설치 - 2015년 1~3층 휠체어리프트 설치 예정 - 2014년 대변기 및 세면대 개선 예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비치 및 보조인력 제공(2015년) 		
	대구·경북			
	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즉각 설치 예정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즉각 설치 예정 - 장애인이 시설 이용 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보조인력 제공 		
	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화장실 관련 미비사항들에 대해 2014년 예산편성 후 설치 완료 예정 		
	③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도 설치(2014년) - 추경예산 반영하여 예산확보 후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 - 확대문서 제공 및 수화통역 지원(2014년) - 웹사이트 보수 예정(2014년) 		
	④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및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등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설치 예정 		
	⑤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 장애인화장실 앞 훼손된 점형블럭 및 미설치 장소 신규 설치 예정(2014년)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로 제공하는 방법 검토 -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웹접근성 개선 예정(2014년) 		
	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안내판 설치 계획(2014년) - 수화가능한 직원이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⑦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앞이 도로이기 때문에 전면유효거리 확보가 불가능함. 따라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건물 뒤편 출입구에 유효거리를 확보하여 안내할 계획 - 시설이전 혹은 리모델링 시 휠체어리프트 설치 검토(보조인력 제공) - 기존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변경(2014년 상반기) -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점자로 사전 요구할 경우 제공함 -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요청 시 제공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실행 가능 여부	⑧ 기관	- 전면유효거리 확보 예정(2014년 상반기)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화장실 출입구에 점형블럭 설치 및 주기적으로 관리 실시(2014년 상반기)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2014년 상반기) - 수련관 내 여러 프로그램들을 시각장애인도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점자안내문 제작예정(2014년 3월중) - 웹사이트 관리 업체에 협조 요청	
	⑨ 기관	-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2013년 11월) - 보청기 구입 예정(2014년 상반기)	
	⑩ 기관	- 출입구 부근 점형블럭 설치(2014년) - 화장실 출입구 점형블럭,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설치, 대변기, 세면대 교체 또는 개선 예정(2014년) -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로 제공하고, 수화통역 제공 예정	
	⑪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2014년 예정) -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각각 구분할 예정(2014년 예정) -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로 구비 예정(2014년 3월) - 장애인복지관 또는 농아인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⑫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 판 등 2014년 예산 반영하여 설치 예정 - 장애인화장실 앞 남녀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 및 사용여부를 나타내는 시각적 장치 설치 예정 -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을 참여프로그램으로 변경하면서 점자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⑬ 기관	- 프로그램 참여를 돕기 위해 보조인력 제공	
	⑭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 판 등 2014년 3월 중 설치 예정 - 2014년 예산확보 후 장애인화장실 사용여부 시각설비 설치, 잠금장치 수리, 세면대 높이 조정, 휠체어발판부분 공간 확보 등 개선 예정 - 2014년 4월 중 점자안내 책자 제작 예정 - 2014년 예산확보 후 수화통역센터와 협약 체결 검토	
	⑮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 판 등 2014년 예산 반영하여 설치 예정 -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2014년 예산 반영하여 개선 예정 - 확대경 구입예정(2013년 12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등 서비스 제공은 2014년 예산 확보 후 조치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⑯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정(2013년 11월) - 층간편의시설 관련부서와 협의 후 추진 -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중(2013년 10월) - 예산협의 후 점자자료 제공 예정		
	⑰ 기관	- 2014년도 예산 반영 후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작업 예정(2014년) - 추후 리모델링 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층간편의시설 및 장애인화장실 미비사항 개선 예정		
	⑱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이며, 우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예정 - 장애인화장실 앞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구비 예정(2014년 예산확보 후) - 확대경 구입하여 비치할 예정(2014년 예산확보 후)		
	⑲ 기관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부착 예정(2013년 11월) -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개선 예정(2013년 12월) - 확대경 구입 예정(2013년 11월) - 운영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 장애청소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⑳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계획(2014년도 1/4분기)		
	㉑ 기관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예정(2014년도 1/4분기) - 화장실 출입구 점형블럭,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부착,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확장 설치 계획(2014년도 1/4분기)		
	㉒ 기관	- 주출입구 앞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화장실 앞 점형블럭 및 점자표지판 설치 예정(2014년 상반기) - 화장실 문 교체 및 내부 공간 확보 예정(2014년 상반기) - 대형모니터를 통하여 확대문서 제공 - 보청기 구입 예정		
	㉓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검토 예정(2014년도 상반기) - 담당부서와 협의 후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 - 비상경보등 및 점자자료, 확대경, 보청기 설치 검토 예정(2014년 상반기)		
	부산·울산·창원			
	① 기관	- 2014년 시설기능보강 사업예산 확보 후 점형블럭과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2014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로 제공 예정 -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수화통역 제공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신청 가능 여부	② 기관	-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주출입구, 복도, 장애인화장실 등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 - 장애인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점자자료, 화상전화기, 보조인력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장기적,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 중	
	③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적정 세면대 설치 예산으로 인해 신속한 개선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 - 예산을 장기적,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④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구입 및 촉지도식 안내판 제작(2014년) -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 및 점형블럭 설치 - 남녀 구별 점자표지판 설치 완료 -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점자자료, 수화통역, 보조인력 배치(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웹사이트 개편 예정(2015년)	
	⑤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4년 예산 확보 후)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장치 설치 완료 -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설치 예정(2014년 예산 확보 후) - 보조인력 제공 -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 웹사이트 보완 예정(2014년 예산 확보 후)	
	⑥ 기관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일부 정비(2014년 예산 반영) - 2014년 수련원 안내책자 제작 시 점자자료 제작 검토 - 사업비 확보에 따라 수화통역 및 화상전화 설치 검토	
	⑦ 기관	- 주출입구 촉지도식 안내판 제작(2014년) -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 세면대 보수 예정(2014년) - 화장실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부착 예정(2013년 11월)	
	⑧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 예산 확보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 - 예산 확보 후 세면대 설치 예정 - 예산 확보 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⑨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4년 3월) - 증축 및 기능보강 공사 시 공간 확보 후 장애인화장실 설치 검토 - 추후 예산 확보 시 점자자료 제공 등 개선방안 검토 - 웹사이트 개편 시 웹접근성 강화	
	⑩ 기관	- 2014년 예산 확보 후 점형블럭 및 주출입구 안내판 설치 예정 - 2014년 예산 확보 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p>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p> <p>1. 시설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p>2. 편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p>3. 웹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신청 가능 여부 	⑪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예산 확보 후 점형블럭 및 주출입구 안내판 설치 예정 - 2014년 예산 확보 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 		
	⑫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수 관련 예산 확보 후 점형블럭 및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장애인화장실 관련 모든 미비사항 설치 예정(예산확보 후) - 확대경 제공 - 지역점자도서관과 연계하여 대출을 무료로 가능하게 도움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럭 파손 부분 보수(2014년)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설치(2014년) - 휠체어리프트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2015년) - 2014년 예산확보 후 확대문서 제공 및 확대경 배치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노력 		
	⑭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예산 반영하여 주출입구 단차 및 전면유효거리, 경사로 부분 보수 예정 - 2014년 예산 반영하여 복도 및 통로 유효폭 확보 예정 - 2014년 예산 반영하여 편의서비스 제공 및 웹사이트 보완 예정 		
	⑮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단차 및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점자표지판,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는 2014년 내 설치 계획 		
	⑯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 장애인화장실 및 점형블럭, 점자표시는 2014년 중 설치 예정 - 웹사이트 보수 시 관련사항들을 시정 할 예정 		
	⑰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화장실 앞 점자표지판 및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장치 설치(2014년도 예산 반영) - 대변기 높이 보수(2014년도 예산 반영) 		
	⑱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의 미충족 항목 모두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므로 2014년도 예산 확보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할 예정 		
	⑲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전반을 점검하여 2014년도 예산 확보하여 미비 사항은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할 계획 		
	⑳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의 미충족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2014년도 예산 확보하여 미비 사항은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 		
	㉑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전반을 점검하여 2014년도 예산 확보하여 미비 사항은 규정에 적합하게 개선할 예정 		
	광주·전주			
	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및 세면대를 2014년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②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설치 예정(2014년) - 세면대 개선 예정(2014년) - 보조인력 제공	
	③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3년 11월) -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시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장애인화장실 등 설치 예정(2014년)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장기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	
	④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및 점형블럭 설치 예정(2014년 수련시설기능보강사업)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장기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	
	⑤ 기관	- 2014년도 예산확보 후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 - 시설물 여건상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능하여 보조인력 제공 - 향후 건물 기능보강사업 시 세면대 개선 예정	
	⑥ 기관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설치 예정(2013년 11월) - 세면대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 완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제공 등 2014년도 예산확보 후 시행 예정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은 향후 예산확보 후 설치 예정	
	⑦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등 2013년 4/4분기에 설치 예정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장기과제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예정 - 보조인력을 사전 요청 시 제공 및 배치 가능	
	⑧ 기관	- 2014년 예산 확보 후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설치 예정 - 2014년도 기관 안내문 제작 시 점자자료 제작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수화통역 제공 및 향후 인력 채용 시 통역가능자 배치 노력	
	⑨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장애인화장실 2013년 4/4분기에 설치 예정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장기과제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예정 - 보조인력을 사전 요청 시 제공 및 배치 가능	

협조 요청 내용	개선 사항		비고
	기관	주요 내용	
피모니터링 기관에 의견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등 제출 요구 1. 시설 접근성 - 주출입구 단차 및 통과유효폭, 전면유효거리, 점형블럭 설치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축지도식안내판 등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화장실 2. 편의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 제공 여부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3. 웹접근성 - 키보드 사용을 통한 시설 이용정보 확인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⑩ 기관	- 점형블럭, 점자안내판 등 설치 예정(2014년) - 예산책정 후 복도에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2014년) - 지역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이 시설이용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지원 - 2014년 예산책정 후 홈페이지 보수 업체와 개선방안 논의 예정	
	⑪ 기관	- 경사로의 기울기가 조금 높아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틀 설치 완료 - 점형블럭 및 점자안내판 설치 고려 중 - 예산 확보 후 프로그램을 점자 자료로 제공 예정 - 웹사이트 개선 완료	
	⑫ 기관	- 주출입구 단차 및 주출입구 전면유효거리 보수 예정(지자체 예산 확보 시) -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설치 예정(2013년 12월) - 기관 옆의 건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5곳 확보함 - 예산 확보 후 장애인화장실 설치 예정 - 프로그램 관련 자료 제작 시 점자자료로 제작	
	⑬ 기관	- 주출입구 점형블럭 설치(2014년 12월) - 주출입구 부근 점자 안내판 설치 예정(2015년 12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2014년 6월) - 층간편의시설 설치(2016년 12월까지) -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점자 표지판 설치(2015년 6월까지)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개발 - 수화통역제공 기관과 연합하여 서비스 제공(2014년 6월) - 웹접근성 확보 할 수 있도록 보수할 예정(2016년 12월)	
	⑭ 기관	- 2013년 9월 1일부로 신축 건물로 이전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함 - 예산 확보 후 수화통역 및 화상통화 서비스 제공 예정 - 웹사이트 개편 예정(2013년 12월)	

〈8〉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건물 주출입구 및 접근로	1. 건물 주출입구 턱은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음(2cm이하)		☞ 1-1	/	* 높이차가 있을 경우 단차높이 _____cm	
		1-1. 건물 주출입구에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음	☞ 1-2, 1-3, 1-4	☞ 1-5			* 주출입구 턱의 높이차가 2cm 이상이라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라면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경사로
		1-2.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작동 가능함					* 작동 모습 사진 첨부 * 경사로의 경우 훼손이 심해 이용이 힘든 경우
		1-3. 경사도가 있는 경우 기울기	높이 : _____ 길이 : _____ 기울기(높이/길이*100) : _____				
		1-4. 경사도가 있는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 손잡이가 설치된 곳 <input type="checkbox"/> 양쪽 측면 <input type="checkbox"/> 한쪽 측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1-5. 다른 출입구를 통해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당 출입구의 단차제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음					* 다른 출입구의 예 : 후문 등
		2. 건물 주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0.8m이상)					* 통과유효폭 _____m
		3. 건물 주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가 휠체어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 하고 있음(1.2m이상)					*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문) 또는 경사로상단끝-입구(문) 간의 거리 _____m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4. 주출입문이 회전문인 경우 별도의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자동문 <input type="checkbox"/> 여닫이문 <input type="checkbox"/> 미닫이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5.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 5-1 5-2				
	5-1.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사진 첨부	
	5-2. 화분이나 깔판 등으로 유도블록이 덮여 있어 원래의 기능을 못함				* 우천시, 미끄럼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깔판을 설치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6.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 6-1 (음성안내장치인 경우만)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점자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촉지도식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6-1.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로 작동 가능함					* 6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표기
	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음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해당없음” 표기
	8. 복도 또는 통행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하기에 충분함(1.2m이상임)	☞ 8-1				* “아니오”인 경우, 유효폭 _____ m
	8-1. 의자, 화분, 휴지통 등으로 통로 유효폭이 좁혀져 있음					* 유효폭 확보를 위해 복도 및 통로를 좁히는 의자, 화분 등을 치울 것을 요청
	9. 기관이 2층에 있거나, 또는 기관이 2층 이상인 경우, 시설 내 층간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9-1				* 기관이 1층으로 된 경우, “해당없음” 표기 <input type="checkbox"/> 엘리베이터 <input type="checkbox"/> 휠체어리프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9-1.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실제 작동 가능함				*작동 모습 사진 첨부	
	장애인	10.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10-1			
		10-1.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화장실	11.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 11-1			
		11-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어 있음				* 사진 첨부
		12. 화장실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음				* 점자표지판 실측 - 높이 _____m
		13. 출입문에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				* 사진 첨부
		14.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15.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16.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 “아니오”인 경우 너비 _____m
		17.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 “아니오”인 경우. - 너비 _____m - 깊이 _____m
		18.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모두 있음	하나만 있거나 없음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19. 화장실의 대변기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 “아니오”인 경우. - 높이 _____m
20. 화장실의 세면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하단 0.65m, 상단 0.85m ” 이상임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 “실측” 상단 _____m 하단 _____m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21. 세면대의 하부공간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부분이 들어가기에 충분함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문화 예술·체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아래 질문은 청소년활동시설 안내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 *					
	22. 시각장애인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자료(안내책자 등)를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등의 형식으로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 22-1, 22-2, 22-3, 22-4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점자자료 ☐ 확대문서 ☐ 보이스바코드 ☐ 확대경 ☐ 기타 _____
	22-1. 사전에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_____
	22-2. 제공 기간 () 일					
	22-3. 제공 방식					☐ 기관에서 직접 수령 ☐ 우편으로 송부 ☐ E-mail로 송부 ☐ 기타 _____
	22-4. 제공하지 않는 이유					☐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 비용이 많이 들어서 ☐ 필요성을 못 느껴서 ☐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 기타 _____
	23. 청각장애인이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서비스 등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함	☐ 23-1, 23-2	☐ 23-3, 23-4, 23-5			* 상기 예시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예”로 표기 ☐ 수화통역 ☐ 화상전화 ☐ 보청기 ☐ 기타 _____
	23-1. 화상전화기 또는 보청기를 구비한 경우, 실제 작동함					* 23번 항목 참고사항에서, “수화통역”을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표기
23-2. 제공 방식					☐ 인근 수화통역센터에 요청 ☐ 화상전화기 구비 ☐ 기타 _____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문화 예술· 체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23-3. <u>사전에 요구할 경우</u> , 제공 가능함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_____	
	23-4. 제공 기간 () 일					
	23-5. 제공하지 않는 이유				<input type="checkbox"/> 이제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24.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 보조인력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직원 (ex: 수화통역사, 사회복지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 관련 (7~8월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					
	25.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음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 7~8월 운영 프로그램 수 ()개	
	26. 장애 유형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수 및 프로그램 명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개 [프로그램명]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개 []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개 []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개 [] <input type="checkbox"/> 기타 ()개 []	
27. 기존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				* 프로그램명: _____ * 사유: _____		
홈페이지 사용 및 정보접근	28.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설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9.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9>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서울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4	21 (경사로:5)	0	3	100.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4	24	0	0	10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4	24	0	0	100.0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24	16	0	8	66.7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20 (훼손:0)	4	0	83.3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	5	19	0	20.8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5	1	0	4	2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4	19	2	3	79.2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4	24	0	0	100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4	23	1	0	95.8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4	23	1	0	95.8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4	23 (남녀구분:16)	1	0	95.8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17 (훼손:0)	6	1	73.9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24	10	13	1	43.5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	24	16	7	1	69.6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4	20	3	1	87.0
	잠금장치 정상작동	24	16	3	5	73.9
	화장실 내부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0.8m 이상)	24	19	4	1	82.6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4	16	7	1	69.6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24	19	4	1	82.6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4	17	6	1	73.9
	적정 세면대 높이 (하단 0.65m, 상단 0.85m이상)	24	11	11	2	50.0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4	17	5	2	73.9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공 여부	24	7	17	0	29.1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17	2	15	0	11.8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서비스 등 제공 여부	24	6	18	0	25
	- 화상전화기 등을 구비한 경우, 실제작동여부	6	0	0	6	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18	3	15	0	16.7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24	11	13	0	45.8
	현재(7~8월)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가능여부	24	19	3	2	86.4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설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4	6	18	0	25.0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24	4	5	15	44.4

(2) 대전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12	10 (경사로:3)	2	0	83.3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12	8	3	1	72.7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2	8	3	1	72.7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12	8	0	4	100.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2	8 (훼손:0)	0	4	100.0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2	2	10	0	16.7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2	0	2	0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12	8	3	1	72.7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12	8	3	1	72.7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8	0	8	0	0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12	6	5	1	54.5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12	8 (남녀구분:4)	4	0	66.7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2	3 (훼손:0)	5	4	37.5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12	2	6	4	25.0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	12	4	4	4	50.0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2	7	1	4	87.5
	잠금장치 정상 작동	12	7	0	5	100.0
	화장실 내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0.8m이상)	12	8	0	4	100.0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2	7	1	4	87.5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12	7	1	4	87.5
	적정 대변기 높이(0.4m이상 0.45m 이하)	12	4	4	4	50.0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장애인 화장실	적정 세면대 높이 (하단 0.65m, 상단 0.85m이상)	12	6	0	6	100.0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12	6	0	6	100.0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공 여부	12	3	9	0	25.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9	2	7	0	22.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서비스 등 제공 여부	12	4	8	0	33.3
	- 화상전화기 등을 구비한 경우, 실제작동여부	4	1	0	3	100.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8	1	7	0	12.5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12	9	3	0	75.0
	7-8월에 운영한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가능여부	12	6	6	0	50.0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설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2	1	11	0	8.3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12	1	11	0	8.3

(3) 제주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19	17 (경사로:13)	2	0	89.5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19	18	1	0	94.7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9	18	1	0	94.7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19	0	0	19	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9	12	7	0	63.2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9	1	18	0	5.3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1	0	0	1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19	8	1	10	88.9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19	18	1	0	94.7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18	2	16	0	11.1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19	10	9	0	52.6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19	15	4	0	78.9
	접형블럭 설치(접형블럭 훼손여부)	19	10	5	4	66.7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19	5	10	4	33.3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	18	4	10	4	28.6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9	14	1	4	93.3
	잠금장치 정상 작동	19	11	4	4	73.3
	화장실 내부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0.8m이상)	19	14	1	4	93.3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9	13	2	4	86.7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19	13	2	4	86.7
	적정 대변기 높이(0.4m이상 0.45m 이하)	19	10	5	4	66.7
	적정 세면대 높이(하단 0.65m, 상단 0.85m이상)	19	10	5	4	66.7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19	15	0	4	100.0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공 여부	19	3	16	0	15.8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16	5	11	0	31.3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서비스 등 제공 여부	19	4	15	0	21.1
	- 화상전화기 등을 구비한 경우, 실제작동여부	4	0	0	4	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15	4	11	0	26.7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19	14	5	0	73.7
	현재(7~8월)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가능여부	19	10	6	3	62.5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설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9	15	2	2	88.2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19	1	0	18	100.0

(4) 부산권역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충족	미충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4	22 (경사로:14)	2	0	91.7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4	22	2	0	91.7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4	22	2	0	91.7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26	6	0	18	75.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10 (훼손:1)	14	0	41.7
	접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	1	23	0	4.2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1	0	0	1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4	14	6	4	70.0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4	22	2	0	91.7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2	19	3	0	95.0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4	12	9	3	57.1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4	20 (남녀구분:14)	4	0	83.3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6 (훼손:1)	14	4	30.0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24	3	17	4	15.0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	24	6	14	4	30.0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4	20	0	4	100.0
	잠금장치 정상 작동	24	15	3	6	83.3
	화장실 내부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0.8m이상)	24	19	1	4	95.0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4	13	7	4	65.0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24	17	3	4	85.0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24	12	8	4	60.0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장애인 화장실	적정 세면대 높이 (하단 0.65m, 상단 0.85m이상)	24	7	11	6	38.9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4	15	3	6	83.3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공 여부	24	4	20	0	16.7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20	2	18	0	10.0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서비스 등 제공 여부	24	4	20	0	16.7
	- 화상전화기 등을 구비한 경우, 실제작동여부	4	0	0	4	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0	1	19	0	0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24	8	16	0	33.3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설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4	12	11	1	52.2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24	7	16	1	30.4

(5) 대구권역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24	24 (경사로:18)	0	0	100.0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24	24	0	0	100.0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24	22	2	0	91.7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24	0	0	24	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18 (훼손:0)	6	0	75.0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5	5	19	0	20.8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24	1	0	4	10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24	17	3	4	85.0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24	24	0	0	100.0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24	23	1	0	95.8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24	18	6	0	75.0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24	21	3	0	87.5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24	10	11	3	47.6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24	7	14	3	33.3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	24	13	8	3	61.9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24	17	4	3	81.0
	잠금장치 정상 작동	24	18	1	5	94.7
	화장실 내부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0.8m이상)	24	17	4	3	81.0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24	14	7	3	66.7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24	17	4	3	81.0
	적정 대변기 높이(0.4m이상 0.45m 이하)	24	18	3	3	85.7
	적정 세면대 높이(하단 0.65m, 상단 0.85m이상)	24	5	14	5	26.3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24	10	9	5	52.6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공 여부	24	5	19	0	20.8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19	0	19	0	0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서비스 등 제공 여부	24	8	16	0	33.3
	- 화상전화기 등을 구비한 경우, 실제작동여부	8	1	0	7	100.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16	1	15	0	6.3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24	16	8	0	66.7
	7-8월에 운영한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가능여부	24	8	7	9	53.3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설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4	8	9	7	47.1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24	5	4	15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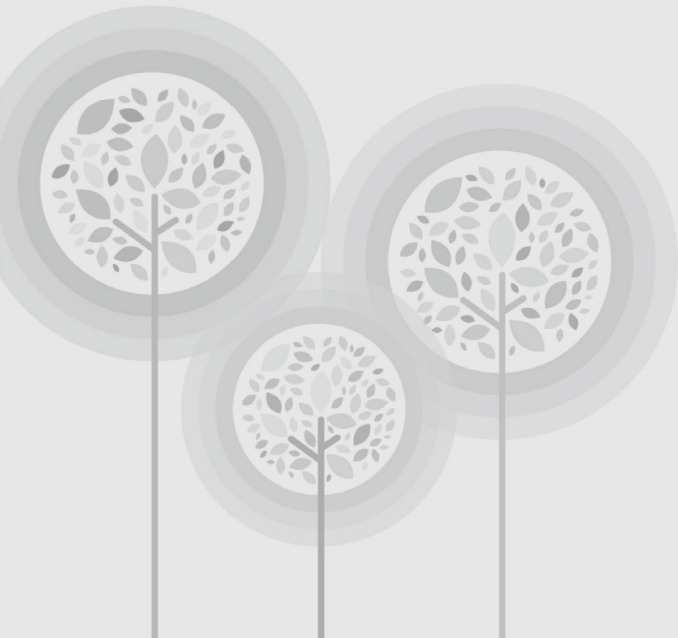
(6) 광주권역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주출입구	단차 제거(경사로 설치 등)	14	12 (경사로:11)	2	0	85.7
	적정 통과유효폭(0.8m 이상)	14	13	1	0	92.9
	적정 전면 유효거리(1.2m 이상)	14	11	3	0	78.6
	주출입문이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자동문, 미닫이 문 등을 설치	14	0	0	14	0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4	5	9	0	35.7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설치	14	2	12	0	14.3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여부	2	2	0	0	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마련	14	8	5	1	61.5
복도 및 통행로	적정 통과유효폭(1.2m 이상)	14	13	1	0	92.9
	- 통과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복도 또는 통행로에 장애물 없음	13	2	11	0	15.4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14	8	6	0	57.1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설치(남녀구분여부)	14	8	6	0	57.1
	점형블럭 설치(점형블럭 훼손여부)	14	5	3	6	62.5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설치	14	2	6	6	25.0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설치	14	2	6	6	25.0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문이 바깥쪽으로 개폐됨	14	7	1	6	87.5
	잠금장치 정상 작동	14	7	1	6	87.5
	화장실 내부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0.8m이상)	14	5	0	9	100.0
	화장실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너비1.0m 이상, 깊이 1.8m 이상)	14	8	0	6	100.0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14	7	1	6	87.5
	적정 대변기 높이 (0.4m이상 0.45m 이하)	14	7	1	6	87.5

	모니터링 항목	조사 대상	총족	미총족	해당 없음	이행 비율
장애인 화장실	적정 세면대 높이 (하단 0.65m, 상단 0.85m이상)	14	1	7	6	12.5
	세면대 밑 휠체어 발판부분 공간 확보	14	6	2	6	75.0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관련 자료를 점자자료·확대문서·보이스바코드 형식으로 제공 여부	14	0	14	0	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14	0	14	0	0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화상전화 서비스 등 제공 여부	14	3	11	0	0
	- 화상전화기 등을 구비한 경우, 실제작동여부	3	0	0	3	0
	- 사전에 요구할 때, 제공가능여부	11	0	11	0	0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하는지 여부	14	4	10	0	28.6
7-8월에 운영한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가능여부	14	8	6	0	57.1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시설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4	4	10	0	28.6
	키보드(tap키와 방향키, enter키 사용)만으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14	0	10	4	0



IV.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사항



IV.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사항

1 모니터링 사업 성과

가. 공공기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모니터링 관련, 필수 개선사항 도출

○ 시설 접근성

- 세 기관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주출입구 점자안내판 등의 유도·안내설비 설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접수대 적정 설치율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식 비상경보등 설치율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이행비율을 나타냄
- 의료기관과 청소년활동시설에서 화장실 내 적정 세면대 적정 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한 편의제공

- 의료기관과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수화통역 서비스 등의 편의제공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이행비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남

○ 웹접근성

- 의료기관과 청소년활동시설 모두 키보드 조작만으로 웹사이트 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예약, 프로그램 신청 등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나. 생활속 장애차별 시정 계기 마련

- 공공기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시설들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관에 그 결과를 안내하여, 자체 개선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진정사건과 연계하여 개선 권고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 효과

- 모니터링 대상 기관들에서의 장애차별에 대한 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 사업 진행
- 모니터링 실시 전 모니터링 대상기관 및 관리·감독기관에 모니터링 계획 등을 통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효과 도모
- 모니터링 실시과정 및 기관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결과, 개선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가 있는 등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및 장애차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라. 모니터링단원의 권리의식 고취 및 활동성 제고

- 모니터링단원의 68%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 당사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스스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
- 또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비장애인 단원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학습 효과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 사례, 장애인을 위한 시설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2 향후 개선 사항

가. 모니터링 단위 선발 및 구성

- 모니터링 단위 선발 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68%의 비율로 선발하였으나, 이 중 72.8%가 지체장애인 단원이었던바,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 당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 모니터링 활동 및 체크리스트 작성에 있어 팀장의 역량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모니터링 단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단원들의 역량을 고려한 팀 구성을 통해 모니터링의 질 향상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 시 일부 항목에 대해 단위별 해석이 상이하여 모니터링 과정 및 결과에 혼란이 야기되는바,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배포용)을 만들어 단원들이 올바르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전설명회 시 모니터링 중 단위과 피모니터링 담당자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만약 기관 담당자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

라. 모니터링 결과 즉시 도출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 피모니터링 기관에 일찍 결과를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으로부터 개선결과를 회신 받고 자체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모니터링 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여 피모니터링 기관에 송부하고 담당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관에 연락 필요
- 또한, 피모니터링기관이 제출한 개선조치 계획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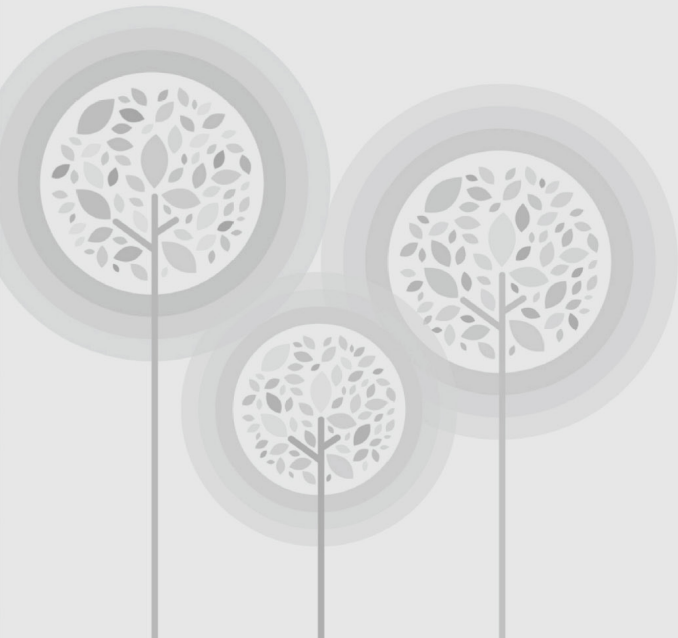


마. 기타 운영상 문제 및 개선방안

-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모니터링 대상기관이 위치한 건물에 주출입구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단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바,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기본적 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지도 필요



V. 모니터링 활동 사진



V. 모니터링 활동 사진

1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 주출입구 단차가 2cm이상이며, 경사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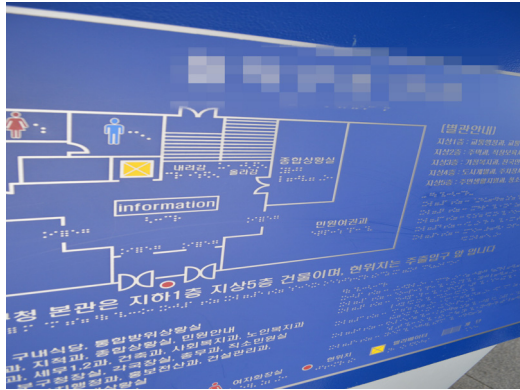
△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차량



△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된 장애인 도우미벨



△ 주출입구에 설치된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 회전문 이용 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도움벨



△ 휠체어가 통과하기 충분한 주출입구의 통과유효폭



▲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일부가 떨어져 들린 상태의 점형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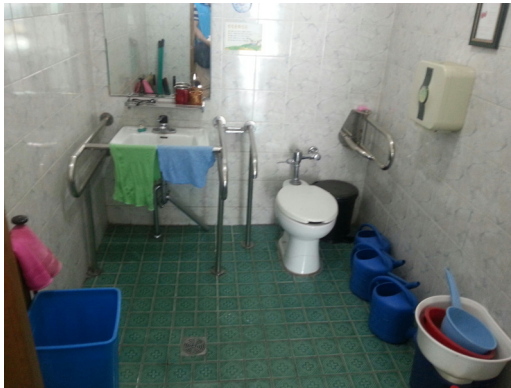
△ 주출입구부터 안내데스크까지 연결되어 있는 점형블럭



▲ 계단을 올라가야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 층간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 청소도구가 적재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



△ 내부공간이 넓고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화장실



▲ 세면대 하부공간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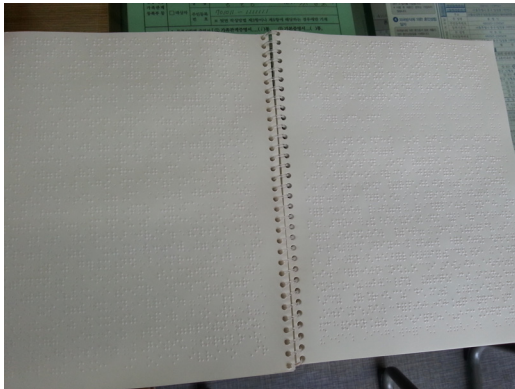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화장실 앞 통로에 많은 물건들을 적재하여 통행에 불편을 줌



△ 화장실 내부 장애인을 위한 도움벨



△ 점자로 되어 있는 소식지



△ 화상전화기 설치



▲ 접수대 하부공간 없음



△ 접수대 하부공간 확보



▲ 버튼이 높은 곳에 있어 이용하기 힘든 무인민원자동발매기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표시가 있는 무인민원자동발매기

2 의료기관 이용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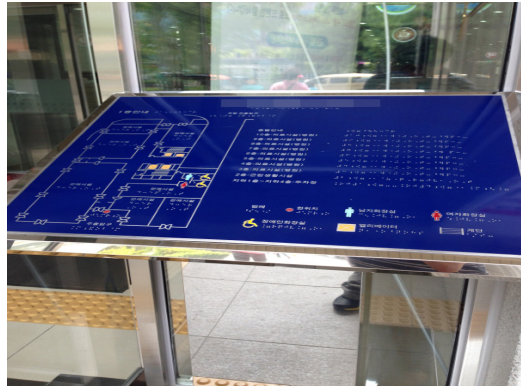
▲ 폭이 좁고, 기울기가 심한 경사로



▲ 낮지만 흠이 패어 있어 위험한 턱



▲ 기울기가 심한 경사로



△ 주출입구에 설치된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 주출입구 앞 점형블럭 미설치



▲ 주출입구 앞 점형블럭 훼손



▲ 점형블럭 위 깔판 설치



▲ 전면유효거리 미확보



△ 주출입구 통과유해폭 확보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회전문 비상정지 버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통로에 있어 통행에 방해를 주는 화분



△ 층간편의시설 설치



▲ 접수대 하부공간 미확보



△ 장애인 전용 접수대



▲ 남녀를 구분하는 점자표시가 없는 화장실



△ 점자표시가 되어 있는 장애인화장실 입구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위 깔판 설치



△ 장애인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 청소도구를 적재한 장애인화장실



△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 문이 안으로 개폐되는 장애인화장실



▲ 하부공간의 턱으로 인해 휠체어 진입할 수 없는 세면대



▲ 대변기칸 잠금장치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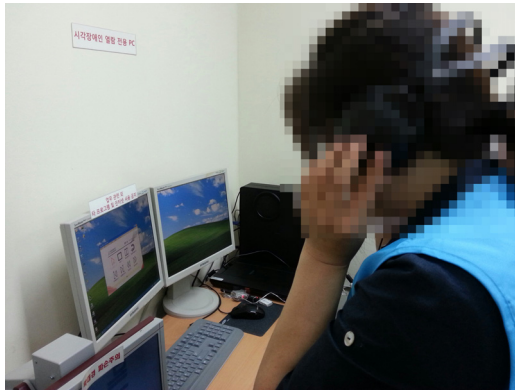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기기



△ 확대경 설치



△ 진료순서를 나타내는 모니터



△ 시각장애이용 컴퓨터

3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



▲ 주출입구 단차가 2cm이상이며, 경사로 없음



△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미확보



▲ 훼손된 점형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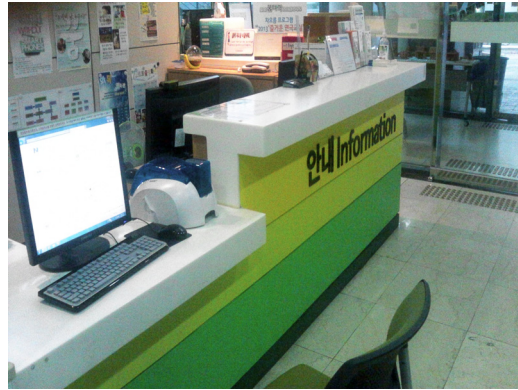
△ 장애인주차구역 마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잡이 점자표시



△ 주출입구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접수대



▲ 층간 편의시설 미설치



△ 층간 이동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설치



△ 화장실 앞 점형블럭 설치



△ 화장실 옆 벽면에 남녀구분 점자표기



▲ 세면대 하부공간 미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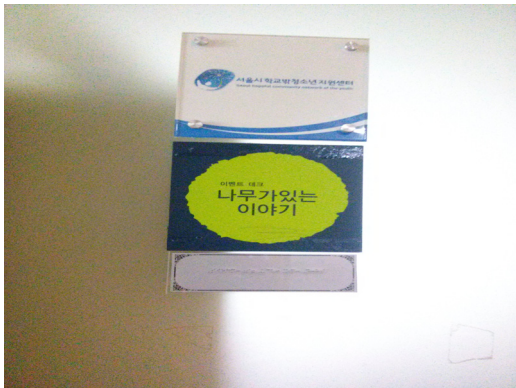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화장실 사용여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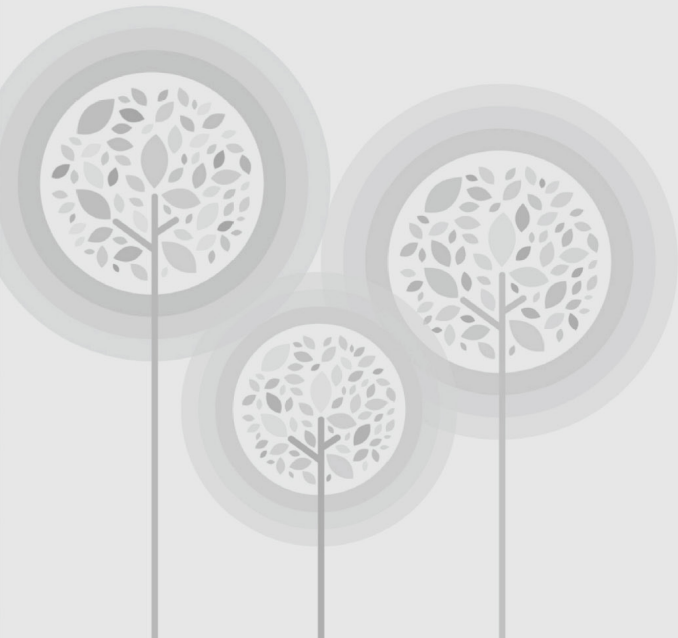
▲ 파손된 대변기칸 잠금장치



△ 프로그램 실 앞 점자표지판



부 록



〈부록 1〉 모니터링단 활동후기(가나다순) 및 2014년 모니터링 제언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①

강 승 미 (제주 모니터링단)

올해 처음으로 국가인권위 장차법 모니터링에 참가하게 되었다. 내 활동이 우리 동네 편의시설을 개선하는데 일조할거라는 목적의식도 있었고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한다는 마음도 있었다.

사실 처음 모니터링을 시작할 때는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제법 공시시설이라 부를 수 있는 곳들은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나가면서 병원, 주민센터, 청소년활동시설을 다녀보니 정말 갑갑했다. 어쩌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나보다 더 중증인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자각하게 되었다.

이번에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했던 체크리스트는 사실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다. 병원을 모니터링 할 때에도 주로 병원 로비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지 병실과 같은 내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빠져있다. 청소년활동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모니터링 했음에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특히 청소년을 자녀로 둔 내게 청소년활동시설의 조사결과는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물리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는 없어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

이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얻은 것 중 하나는 주변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한 곳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곳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 것이다. 다음 기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모니터링 단원으로 참여하고 싶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가 단지 자료집을 제작하고 끝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주변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②

강 한 새 (광주 모니터링단)

반년이 쏠살같이 흘렀습니다.

더위가 등줄기로 조금씩 올라오려던 때 시작했던 모니터링단, 어언 반년이 흘러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유달리 더위가 기승을 부린 해라서 부쩍 힘들었던 듯합니다.

올해 2년차로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졌고,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하려 애썼지만, 활동을 할 때마다 늘 배워가는 것이 더 많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이 끝나갈 즈음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단원 분들이 활동의 깊이가 더욱더 풍성하게 무르익어지는 것 같습니다.

5월 공공기관, 6월 의료기관, 7월 청소년 시설, 8월엔 지역 모니터링으로 교육청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지요.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시설 관리자들은 ‘잘 운영하고 있다, (편의시설이) 정말 잘 돼 있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장차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 요즘은 특히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는 대놓고 장애인을 차별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설치하고, 유도블럭도 설치하고, 호출벨도 설치합니다. 다만 거기서 끝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실제로 가보면 기준에 맞지 않게 돼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번 5월 모니터링 때 본 한 장애인 화장실은 ‘잘 돼 있다’라는 동사무소 담당자의 말과 달리, 2층과 3층의 계단 통로에 있었고, 3층은 계단밖에 없어서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유도블럭도 그 위나 주변에 화분 같은 장애물들이 허다하며, 호출벨은 작동되지 않거나 응답하는 사람이 없기 일쑤입니다.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많이 스며들었지만,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에 가깝습니다. 편의시설이나 편의제

공을 ‘부담스러운’,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필요성은 못 느끼는’, ‘알기는 하지만 꼭 해야 하나’, ‘그래도 예산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크게 문제라고 느낀 것은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각 정부부처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 편의시설, 의사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명목만 존재할 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점자 자료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로 점자나 확대 자료를 구비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서식은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고 있으며-공공기관에서조차도, 동사무소 등에서 배포되어야 하는 복지시책 자료는 해가 바뀌도록 그대로이거나, 일선 동사무소 등에서 쉽게 배포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담당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과 차별의 시선이었습니다. 6월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 특히 장애인분들은 보호자와 함께 오기 때문에 편의 지원이 필요치 않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담당자에게서 들었을 때, 저는 작년 의료기관 모니터링 때가 겹쳐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단 모니터링이나, 의료기관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보호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극장을 가셔도, 병원을 가셔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질문을 받습니다. ‘왜 보호자랑 같이 안 와요?’ 때로는 저를 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보호자(보조인)도 없이 혼자 다니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말이지만, 저에게는 늘 아픈 말이었습니다. 부모의 난치병, 동생의 중증장애로, 간병해줄 사람도, 보조해줄 사람도 없이, ‘무엇이든 늘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잘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외출 한 번 하면 신체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 나가떨어질 때가 허다하지요. 하지만 제 사정을 깊이 아는 이가 아니라면, 제가 집에서 간병을 하고,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걸 쉽게 알지 못하며, 거둬주고 길러주는 부모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늘 제 상처도 너무 아팠지만, 왜 장애인은 아무리 가족을 부양하고 살림을 하고 보호자가 되어도 ‘보호와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인지가 늘 너무나 아팠습니다.

동생이 같은 학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동생을 보호한답시고 ‘너는 마

시지 마'라며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확대 시험지를 받기로 예정된 시험에서 펄크가 날 때마다 급히 보조인으로 아빠가 가서 시험지를 읽어줘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동생이 살아온,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동생에게 얼마나 더 많은 상처와 좌절을 안겨줄까,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곳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독립된 한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집단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문 밖으로 나올 장애인에게 방을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문지방이 아닌지, 시설 밖으로 가정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장애인을 가두고 있는 벽이 아닌지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시설도, 인식의 개선도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제도적 정비만으로도 당장의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차별 받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비치는 모습도, 마땅히 필요한 지원들도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내가 당장 받는 차별이 내게서만 멈추지 않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인 동생에게, 장애와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로 옮겨갈 것임을 알기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자, 라며 시작한 활동이었고,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모니터링단이 된 후의 작은 변화라면, 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우리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장애인주차장이 없으면 '아, 내가 왜 이래야지' 라고 속말을 하고 말았다면, 이제는 담당자를 찾아 당당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뀔 때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차별을 어떻게 다시 인권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차별이라고 느끼지만 설명하기도, 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권리로 만들어 가야할 것인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차법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장애여성이자 성소수자인 저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 낼 것인지, 즉 저의 삶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듯 합니

다. 다양한 인권 활동을 하였지만, 정작 장애와 장애 인권에 관한 한 저는 정말 무지하였고, 제 문제에서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멀리, 많이, 깊이 나아가려고 매일같이 발버둥을 칩니다. 장차법 모니터링을 통해 만나게 된 나의 권리와, 우리의 권리가 서로 멀지 않다는 것을, 권리와 제도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과 경찰서를 들락거리면서 또다시 나름의 자그마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공공기관과 사법기관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특히 접근권을 제대로 마련해보자, 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벽과 파티션으로 막혀 들어갈 수 없는 민원창구, 순찰차들의 불법주정차로 막혀버린 장애인주차장과 경사로, 거꾸러질 듯 위태로운 경사로, 연결되지 않는 호출벨, 어떤 내용이 담겼든 늘 목자와 그림으로만 오는 각종 통지서와 안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내년에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들을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덧붙여 봅니다.

얼마 전, 활동보조인이 퇴근 한 후 혼자 남겨진 채 화재에 대피하지 못해 죽어간 故김주영씨의 1주기를 치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의미를,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그려보게 됩니다. 나와 당신의,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촘촘하게 맞닿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③

김 나 영 (부산 모니터링단)

단언컨대 우리의 속제는 ~ing에 있다

작년에 팀원, 올해는 팀장으로 활동했던 기억들이 한 자락씩 떠올랐다.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다가 내 손이 내 생각이 흘러 가는대로 쓴다. 모니터링 활동한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에 앞서 우리 팀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서로 다른 만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부족한 팀장이었던 저를 믿고 묵묵히 잘 따라와 주어서 이 활동을 잘 이끌 수 있었다. 기억들이 빛바랬어도 제 마음은 팀원 여러분의 희망과 열정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그 희망과 열정의 종착역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인권이란 티켓을 손에 꼭 쥐고 나아가리라 생각한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모니터링은 5월 행정기관인 시군구청, 6월 의료기관, 7월 청소년활동시설, 8월 사법기관인 법원과 등기소의 많은 협조 하에 진행하였고 이제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있다. 4개월 내내 현장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두 가지만 간략히 서술하겠다.

첫째, 모니터링단은 매너리즘(Mannerism)을 겪었을 때 이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활동했을 때로 되돌아쳐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적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모니터링 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 왔다. 그렇지만 ‘한번쯤은 그 범위를 벗어나 팀원끼리 고민과 소통을 많이 나누었더라면 어땠을까?’ 팀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쉬움과 부족함으로 남았다. 꼭 이런 방도가 아니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가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서비스여야 한다. 현장 모니터

링 대상기관의 담당자 대부분은 현재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담당자가 교체되었거나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공적으로 보면 원인이 인수인계 및 직무연수 미흡과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장애인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예비 장애인으로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그렇기에 관련 서비스 제공 중인 기관 담당자, 대표자도 모두 자신을 위한 서비스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다.

장차법이 시행한 지 올해로 5주년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 장차법 현장 모니터링이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장애인 당사자를 주축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장차법은 형식만을 외치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단언컨대 우리의 숙제는 ~ing에 있다.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현재진행형 이니까.

2013년도 현장모니터링 활동이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좋은 인연과 멋진 추억은 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특히 2년 동안 수화통역사로 동행해 주셨던 정연수 선생님, 김향연 선생님께 존경을 표하며...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④

김민수 (서울 모니터링단)

2011년 장애인 대원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계기로 장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대원들과 17일 간 사전준비를 하면서 활동보조교육(Personal Attendant Service)을 받는 한편, 정비되지 못한 환경과 편견어린 시선으로 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10일 간 장애인 대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장애에 대해 보다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끈끈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대원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낳는 우리 사회의 물리적 장벽과 마음의 장벽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걷어내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포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활동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일들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시발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니터링단의 한 사람이 되어 부푼 기대를 안고, 지난 5월 14일 발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전 매우 놀랐습니다. 백여 명의 단원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그 모습은 참으로 고무적이었습니다. 단원 분들 중에는 모니터링단 활동을 계속 해 오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조원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의 문항들 등 모든 것이 생소하였지만 조원들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모니터링을 나간 곳은 구청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인 만큼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시설 담당 직원분의 친절함 안내를 받으며 체크리스트를 채어나갔습니다. 모든 문항에서 완벽한 곳은 없었지만 마냥 불완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접수대의 높이는 규격에 맞았지만 하부공간의 깊이가 짧아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가기 어렵거나, 민원자동발매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규격에 맞게 잘 갖춰진 장애인 화장실을 보며 흐뭇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구청

에 이어 모니터링을 하게 된 병원(종합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척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몇몇 시설 담당 직원 분들도 계십니다. 부족한 편의시설과 접근성을 보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시는 그 분들의 모습에서 작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원들과 구청, 병원, 청소년문화센터 12곳을 실사하며 장차법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의 모니터링을 통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시설에 실제로 시정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조금씩 바뀌어나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희망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다양한 장애·비장애인 대원 분들과 교우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몰랐던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례와 정보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준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관계자 분들과 장애에 대한 장벽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해준 조원 분들에게 모니터링할 당시에도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⑤

김성곤 (구미 모니터링단)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관심과 편견이 여전히 지나치다는 것을 깨닫고 또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모니터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기관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곳은 병원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장차법 기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기본적인 장애인 화장실 시설 자체가 없었던 곳도 있었고 어떤 병원은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팻말은 있지만 화장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너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승강기 같은 이동수단이 없는 2층이라 휠체어를 타고서는 병원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곳도 있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담당자는 자신이 그분을 안고 올라간다고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차법과 장애인의 인권 등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그나마 시설의 수준과 장차법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시청, 청소년 시설, 공립 도서관 등은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의 장차법을 대하는 형식적인 태도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서관마다 시행하고 있는 책배달 서비스와 도서관 홈페이지의 책 읽어주는 기능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별로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서관 같은 공적 기관이 지역 장애인 센터와 정보를 공유하면 이용 실적이 훨씬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 장애인 센터와 별다른 연계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간단한 수화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도 전무한 상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장차법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제 주변의 사람들과 제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차법을 소개해주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했다는 것도 작은 보람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인권위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⑥

김 성 훈 (대전 모니터링단)

인간으로서 누리며 살고 싶은 것들이 있다. 문화생활, 여가생활, 결혼생활 등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욕심이라기보다는 삶을 윤택하게 사는데 필요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위에서 말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데 비장애인과 동등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장애인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차별 받으며 살아야 될까?

장애인으로 살면서 어쩌면 평생 궁금증으로 가지고 살게 될 저 질문은 상황마다 다르게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답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의지를 가지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해결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단원인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장애인인권을 지키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을 어겨 처벌 받는 판례가 없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어찌 보면 선언적인 장차법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법을 실제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단원으로 참여 하였고 두 가지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법의 한계점을 충분히 보았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 대상은 관공서와 의료기관 그리고 청소년활동시설이었다. 대상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삶에 있어 어느 정도의 권리박탈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사실 관공서와 의료기관 그리고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정부기관과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법을 피해 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구성원들조차 장애인을 인식하는 수준이 전무하거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체크리스트 설문문의 주로 나온 답이었다. 장애인의 방문이 없거나 상황마다 대처하겠다는 말들 속에 장애인은 특별한 인간일 뿐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 장애인도 차별 받기 때문에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 했지만 다수는 그걸 장애인의 특별함을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장차법의 국민 보편적인 법으로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정지은 법의 한계로서 국민들 모두 장애인을 차별만을 생각하는 피해주의자들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법을 지키는 데 두리 안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들 모두 실현해 나가며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법의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인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 그런 사회를 갈망하여 본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⑦

김 승 일 (부산 모니터링단)

2012~2013년 연말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모니터링 단원으로 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팀장을 2년 연속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팀원들이 날 도와준 덕이다. 처음으로 팀장을 맡은 2012년은 당시 나는 첫 모니터링 활동이었다. 그래서 부담이 더 주어지는 팀장의 역할이기도 했다. 2012년의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4·11 총선의 선거투표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에 대한 조사로 기억된다. 사람들은 모든 출발이 산뜻하게 시작되길 바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긴장감으로 시작 된 첫 모니터링은 순조로웠다. 모니터링은 현장을 돌아보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크만하면 끝이지만 모니터링을 마친 후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다시 컴퓨터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팀원들이 활동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고, 늦어지는 팀원에게 빨리 넘겨 달라고 해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무겁고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팀장의 역할이 악역 담당이므로 어쩔 수 없이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모니터링 단원으로서 장차법에 대한 비장애인의 반응도 여러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장차법이 시행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비장애인들은 아직 장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비장애인들, 해마다 홍보를 하고 토론회와 결과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몇몇의 의식 있는 비장장애인들 뿐. 대다수는 알고 있지도 않는 법, 바로 장차법이다. 장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되기까지 많은 장애인들의 희생이 따른 법률, 그런 법률마저도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의 대한 차별은 여전히 기승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모니터링을 하니 사회와 주변 환경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식의 수준이 선진 복지 국가에는 티끌도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올해 인권위에서 정해 준 주제 중에 청소년활동시설을 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활동시설이 공기가 좋은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활동시설 프로그램도 장애인 청소년

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에만 편의시설이나 편의제공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모니터링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방문을 하여 비장애인들과 부딪히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때만이 장차법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⑧

김 영 준 (경주 모니터링단)

2013년 모니터링을 위해 수고하신 덕분에 경주지역 활동을 무사히 잘 마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정성껏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활동 중 먼저 금융기관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경주지역 A은행의 예를 들면 모니터링 전에는 주출입구 경사로의 기울기가 상당히 높았는데 모니터링 후 편의증진법에 따라 경사로 기울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A은행 측에 장애인주차장이 미흡하다고 권고사항으로 남기고 왔지만 앞으로 시정해서 잘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규정에 적합한 곳이 잘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융업소의 장애인화장실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금융기관과 B마트는 같은 장소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항상 복잡합니다. A금융기관 직원들도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자주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설치 시민축진단이 단속계고장을 붙이고 사진촬영을 하면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주차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랍니다.

B마트 계산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계산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음성안내가 되는 계산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시각장애인들도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직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마트 경주점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였을 때 마트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수시로 과태로 부과한다는 방송과 함께 장애인주차장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경주지역 수련시설 중 D기관의 모니터링 사항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리프트가 계단에 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리프트가 너무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수직리프트와 계단에 경사로 리프트가 번갈아 가면서 설치되어 있었지만 계단에 설치된 경사로 리프트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도 따르고 해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경주시와 잘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수직 리프트를 만들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천년고도 경주 문화유산 때문에 경사로 리프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직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 장애인화장실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리프트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어 보기에만 좋게 해 놓았을 뿐 이용실적에는 불편함을 초래했고 장애인화장실에는 휠체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규정에 부적합 했습니다.

다음은 경주지역의 해수욕장 모니터링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경주지역 해수욕장 4곳을 모니터링 했지만 휠체어로 이동해서 바닷가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곳도 경주시 장애인단체에서 경주시와 협의해서 만들어낸 편의시설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휠체어를 타고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갈수는 있었지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고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이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그들이 새로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편의시설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⑨

김 태 우 (제주 모니터링단)

올해도 더운 여름을 인권위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게 되었다.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니터링에 참여를 해보면 한숨을 짓게 된다.

장애인 당사자인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니터링 단원들도 실망을 금치 못했다. 주민센터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들을 위한 자동민원 처리기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현관 바로 옆에 놓여 있어 환절기에는 매우 불편해 보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였지만, 상주해 있지도 않는 보조인력을 부르기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보조인력을 요청한 적이 없어서 상주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의료기관, 청소년수련원 등이 약속이나 한 듯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장애인들에게는 멀게만 보였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의 주된 행사는 체험과 견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수련원 방에는 침대가 없고, 진입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들의 접근이 불가능해 보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은 숙소나 침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자체도 보조인력이 필요한 견학과 체험을 유지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시설 극기 프로그램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현대사회는 문화 이미지가 강세인 사회이기 때문에 체육, 견학, 놀이 영역 전반을 장애인 학생들도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자연탐방 및 문화예술 활동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공공복지 센터 컴퓨터에도 적용 시킬 수 있도록 국가 인권위에서 장차법으로 결론을 내려준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이 더욱 발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⑩

권 은 선 (대전 모니터링단)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는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함께 하는 단원들과 땀을 흘려가며 각 기관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모습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땀 한 방울 한 방울들이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올해도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모니터링을 하게 된 곳은 구청이었다. 자주 지나가던 곳이라 익숙하였지만, 들어가 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예상하였던 것처럼 공공기관이라서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되어 있었다. 휠체어가 이동하기 편리하게 낮은 경사로와 접근성이 잘되어 있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도 마련이 되어 있었다.

또, 며칠 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건물들이 오래되어서인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았다. 공공기관이고,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할 터인데 생각과 달리 안 되어 있어서 속상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다녀가고, 고칠 점이 무엇인지 건의를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지 않을까 한다.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들이 많다. 혼자 다닐 때에는 그냥 지나쳐 버린 곳도 이렇게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면,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눈에 보이는 큰 곳, 건물들만 모니터링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동네, 건물에서부터 편의시설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는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⑪

박 동 환 (광주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단원이 되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공공기관, 의료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을 방문하며 무더위를 마다않고 때론 장마철을 넘나들며 모니터링 활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훌쩍 지나가버렸다.

예전만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자립생활 센터에 근무하다보니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많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 의해 실시되는 만큼 책임감이 무거웠다.

광주 1모듬으로 편성되어 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됐다. 기관의 안내를 받아 건물 출입구경사로부터 줄자와 각도기를 가지고 점검을 마치고 체크리스트에 의해 꼼꼼하게 편의시설 하나하나 목록을 체크하며 돌아보았다. 어떤 기관에는 실무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적극적인 반면 어떤 기관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대체적으로 지역주민센터의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구조라고나 할까.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냐고 물을 때면 ‘예산이 없어서’, ‘시설이 오래 돼서...’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을 볼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휠체어장애인들이 턱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듯 싶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되어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의식개선의 차이가 많았음을 느낄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당사자와 모니터링 단원들의 활동이 되었으면 기대할 뿐이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⑫

백 설 임 (대전 모니터링단)

2013년 장차법 모니터링단원으로 뽑혀 모니터링단 3조 조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이 선정되어 장차법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는 편의시설이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은 대체적으로 경사로, 휠체어 이용자들의 내부 공간 확보,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유도블록, 점형블럭, 수화서비스 등 제대로 갖춰진 기관은 최근에 세워진 동구청은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이외에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고, 장애인화장실은 비좁아 들어가기 어려운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기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부터 험난했던 어느 두 기관은 방문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곳은 차가 다니는 길인지,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구분이 가질 않았습니다.

이런 길을 들어서기에 모니터링단원이 가기도 힘든데 휠체어나, 시각장애인들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관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데 경사로와 내부에 갖춰진 장비들이 있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요양기관은 병원 특성상 주민센터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기관은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수가 주민센터보다 현저히 낮았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했던 곳은 한 기관 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시설 중 한 곳은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이 전혀 없어 휠체어 이용자들은 절대 이용 할 수 없으며,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블록도 없었을 뿐더러 계단이 가파르고 높아 어려움이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 직원의 절대적인 반감으로 인해 인터뷰 또한 진행이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중 도심 속에 위치한 한 기관은 경사로는 이용자들의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있었으며, 장애인화장실 내부는 이것저것 물건이 쌓여있었고 매우 좁았습니다.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시설들도 장애인들의 이용도는 아주 낮았으며, 장애인에 맞춘 프로그램 또한 없는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집에서 나서는 순간, 다니는 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있는 청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의 이용 빈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며 각 기관들의 문제점을 보면서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인권, 장애인의 활동의 한계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이용해야만 하는 기관들은 접근성부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고려한 기관을 선택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치가 너무 멀어 찾아가기도 벅찬 곳도 있어 활동하는 것에서 무척이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 큰 보람을 느낀 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⑬

윤 영 주 (서울 모니터링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앞서 많은 단체와 위원들의 노력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나 법률안 개정예 미리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의견 속에서도 장애인 평등권 보장과 피해구제, 권리옹호에 대한 활동과 임무 수행의 중추적 지팡이 역할을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장애인의 이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6월 의료기관 모니터링, 7월 청소년 활동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많은 영역에 참여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사회의 다수인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부터 차별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되뇌고,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번의 기적을 이루어 냈으므로써 외국 주요 선진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내부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권리증진에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권 문제와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업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대내외적으로 교육·홍보가 부족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장·차·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만난 많은 기관 관계자들 중에도 사회 내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은 당연히 해소 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치도 변하고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보이며 모니터링활동에 대해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하고 바뀌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접근성, 정당한 편의 제공, 웹사이트 정보접근성의 모니터링 과제를 가

지고 서울시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지역의 행정기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총 12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12개 기관 중에서 본인이 흐뭇할 정도의 시설 구조면에서, 서비스 면에서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기관이 있는 반면, 노후 된 건물 시설과 장애에 대한 무지와 부족한 배려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겠구나 라고 생각 드는 기관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3개월간의 일정 속에 무더위도 있었고, 많은 비를 내리는 장마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견해와 목표를 가지고 모니터링단에 지원하여 한 조를 이루어 활동하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생각이나 지식도 모두 다르며 장애인복지 안에서도 각자가 원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견이나 일정조율에서도 빼겨될 때가 있었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느낌을 공유하며 활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함께 활동한 조원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내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전체 모니터링단원들의 일정과 교육, 여러 기관과의 협의 등 많은 업무를 소화하며 총체적 책임을 맡아온 갈유나 코디님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⑭

이 형 일 (광주 모니터링단)

먼저, 5-8월 무더위와 함께 진행된 모니터링은 사람을 필요이상으로 민감하게 만들기도 했고 의욕을 감퇴시키기도 했다. 무더위를 피해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교육청 등을 모니터링 할 때 새삼 느꼈던 것이 있다. 시설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 단체,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건축물허가를 받을 때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 같았다. 그렇기에 모니터링의 범주를 완공된 건축물 뿐 아니라 설계도와 허가 전 건물로 확대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접근성 모니터링이 설계에서부터 시행되었으면 한다. 물론 법령이나 조례로 시행하고는 있으나 모니터링이 거의 형식에 그치거나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현재의 모니터링 활동범위가 대부분 시설물이나 비품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자를 만나 면담을 해보면 해당 사항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많이 듣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담당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질문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을 마친 곳을 확인 차원에서 재차 방문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한 번 가서 모니터링하고 점검사항 지적하는 공문 발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닌-물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지만- 답변사항이 얼마나 시행되었나를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12년과 13년 두 해 동안 모니터링단 활동을 했다. 지난해에도 느꼈지만 모니터링 활동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모니터링이 계절별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도

있을 듯 한데 늦봄과 여름에만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는 듯 하다. 물론 모니터링단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부분 또한 점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14년엔 모니터링 대상을 건축물뿐 아닌 이동수단(버스, 택시, 항공, 철도, 해상)과 장애인이용시설(복지관, 생활시설, 장애인기관)과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그리고 더불어 장애인 정책과 예산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지는 않는지 또한 모니터링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장애인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건 사실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각과 활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리라 확신한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⑮

임 예 직 (서울 모니터링단)

“짧았지만, 인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올 봄에 참여한 모니터링 활동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인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현재까지 발전해왔던 점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아직 먼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다른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식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 보통 장애인과 많이 만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장애에 대한 문제점만 바라보게 되므로 다른 장애인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으나 같은 감각기관장애에 속하는 시각장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단에 마침 시각장애인이 계셨고, 그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이나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듣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지를 익힐 수 있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 활동은 다른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공유의 장’이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얻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장애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만나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었던 깨달음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멀리 내다보면 곧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가령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노약자 및 유모차가 이용하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장애인을 위해서 설계된 여러 아이디어가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가 미국에서 개발되었는데, 생각보다 시계 디자인이 디자인적으로 매우 우수하여 언론에서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결국 비장애인에게도 유익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비장애인들에게 잘 설득하여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역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코디네이터-모니터링단-기관 이렇게 3각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했는데, 이 관계가 잘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가장 많이 겪었던 불협화음은 기관과의 불협화음이었다. 모니터링 단원들이 기관에 도착했을 때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또 다른 공공기관이 감사를 나온 것이라 생각하여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아직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모니터링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도 모니터링 단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애매함’ 이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할 때 해당 항목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항목이 중복된 경우도 있기도 했고 아예 항목에 속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경우는 물론 기타 항목에 모두 적게 되어 있지만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항목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요구를 해야 할 것이며 해당 항목마다 모두 사진을 찍어 첨부하거나 기타 의견을 각 항목마다 적게 하면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사소한 불편함을 제외한다면 정말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권의 현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적은 이야기들이 추상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나도 좀 더 자라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꼭 이 가슴 벅찬 기회와 현장을 경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으며 좋은 기회를 주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의 인권 및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내에서 당당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박수를 보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매일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인권을 수호하는 멋진 기관이 되길 바란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①⑥

정 으뜸 (창원 모니터링단)

안녕하십니까.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창원지부 팀장으로 활동한 정 으뜸이라 합니다. 지난 5월 모니터링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4차에 걸친 모니터링 활동을 마무리 하고 이렇게 소감문을 쓰니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지난 시간 발로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처음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이고 팀장이라는 직책을 맞게 되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게 되고 팀원들을 이끌고 갈 생각에 두려움도 많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면서 점점 노하우도 생기고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열악하기도 했고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은 초여름에 시작해서 한참 매미가 울던 8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방울이 모여 이렇게 하나의 결과가 나와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된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여 모두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과 열정이 하나하나 모여서 시작된 조그마한 변화가 언젠가는 큰 변화로 우리 삶에 녹아 들어가 있음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를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최수희 사무관님과 안시형님께 감사사를 드리고 함께 활동한 팀원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모니터링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현업에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니터링 활동 후기 ⑰

황 재 준 (대구 모니터링단)

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알게 된 시기는 2012년 3월초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것은 꼭 하고 싶으며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작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약 252만 명이며 인구대비 5.6%, 그리고 장애인 중 후천성 장애비율이 90%에 해당된다는 어떤 봉사단체의 교육이 기억에 오래남아 있으며 우리 가족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장애인 시설물 개선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3년,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모집에 지원하고 당당히 합격하여 올해 모니터링 활동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장차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물이 많이 부족하며 보완이 많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그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며 앞으로 나아지겠다는 희망을 보았으나, 민간시설물은 의지나 의식도 부족해 보여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활동들을 확대 시행하길 바라며 더불어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장차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많이 시행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정착화 되는데 나의 작은 노력들이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등 의무제공 기관에 바라는 점

모니터링 후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 후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한번에 보완하기 보다는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보완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계획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과제등에 대한 의견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대상기관 선정 시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많은 장소나 이용 가능성이 많은 기관 위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 운영을 확대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활동 중 대구의 병원 수는 많으나 모니터링단 인원 및 활동수가 부족하여 전체 병원 수 대비 모니터링 병원수가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며 이런 활동으로는 장차법 정착화 및 의식 변화에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단 구성 시 구별 인원 선정 및 활동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니터링 단원의 다수가 장애인이다 보니 일단 이동수단이 좋지 않아 지하철 주변을 선호하게 되며 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느낌을 받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어 봅니다. 구별로 하면 이동거리나 시간도 절약되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밖의 의견

모니터링 활동은 매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년 마지막 활동은 올해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기관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책자 발행 시 뒷부분에는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주요 설비들의 사진 첨부를 요청 드립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보면 아직까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담당자들이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설비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보고 자료집이 각 기관 및 단체에 발송되면 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 자료집 발행 시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시설 단체의 시설물 사례를 수록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장차법 정착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위한 제언 ①

박 승 현 (대전 모니터링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은 2009년 시작해서 올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의 본질적인 취지,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동등한 참여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가치아래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활동의 현장 모니터링을 해왔다.

2011년부터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당시, 인권에 대한 깊은 정의와 이해, 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의 실타래는 장차법 모니터링을 통해 지식적인 습득은 물론이고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현장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로 풀려가고 있다. 그러나 법은 존재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근거 조항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차별적인 환경요소들이 많이 있다.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모니터링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왔다. 큰 주제로 참정권, 이동권, 편의시설 접근성, 이용 및 사용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선거에 대한 참정권(국회의원선거), 재화와 용역(은행), 공공기관(관공서 및 보건소), 문화체육시설 모니터링(예술·체육시설) 등으로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곳, 법적으로 시정 또는 권고를 통한 개선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영역의 모니터링은 많은 발전과 개선 가능성을 보인 긍정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거조항과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일시적인 모니터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법의 큰 주제는 장애로 인해, 장애로 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인이 인간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을 지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삶의 환경, 영역 속에서 ‘받는 자’가 아닌 ‘주체가 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차별적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이 모니터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주제에 있어서도 생활 밀착형의 모니터링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용 편의시설은 행정 요청을 할 경우 대부분 빠른 시간에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해당 기관 즉, 시설, 학교, 직장을 정당하게 이용하고자하는 요구에 대해선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편견 등으로 참여에 제약을 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 큰 차별이며 상처라는 것을 깊이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2013년 장차법 모니터링을 무사히 마쳤고 이제 2014년 모니터링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 위에서 언급한 모니터링의 방향에 근거해서 2014년 장차법 모니터링 주제에 대한 짧은 의견을 내하고자 한다.

모니터링 주제와 대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제와 범위 아래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니터링 주제가 공공서, 병원,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것이었다면,

1. 공공시설이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적용되는 시설의 모니터링이 시도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문화 예술 활동의 차별 중, 지역 내 시립 및 자치구 도서관 또는 대학 도서관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다.
2. 지난 3년간 외부 활동을 통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이 대부분이었다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을 통한 정당한 이용 제공을 적용하여 기존 체크리스트의 웹 접근성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및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의 웹 접근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3. 교통 및 이동 편의시설에 관한 모니터링 중 기차역과 터미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 구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다. 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 대형 백화점 또는 마트, 마켓일 경우 의외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일 가사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곳이기에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있고, 운영하는 대부분이 대기업이기에 공공성 측면에서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5. 장차법 기준 모니터링 중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고용에 관한 부분인데, 꼭 채용 인원과 비율을 조사하고,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 지역 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고용된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웹 접근성 등을 모니터링 함으로서 정부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차법 모니터링은 비록 제한된 법률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주제가 시도되어야 하고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삶에 적용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에 제시한 의견들이 이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며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본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매일매일 차별과 싸우는 요소라는 것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2013년 장차법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의 향상이 높아지는 2014년이 되길 기대하면서 2014년에도 장차법 모니터링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향상과 인권 증진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활동이 되길 기대해본다.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위한 제언 ②

한 은 희 (서울 모니터링단)

I. 여는 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은 장애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을 위한 개선 및 정책검토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권리란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법안에서 누려야 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당면한 과제로 남아있다.

II. 모니터링단에 대하여

1.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소양

1) 역할

장애인차별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하며 장애인 인권을 동등하도록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제안과 제도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2) 소양

모니터링단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인내와 적극성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지식과 봉사정신으로 공명정대한 의무감도 필요하다.

2. 모니터링의 기능

시행부에서 지표 설정을 하고 결과물을 도출하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모니터링 기법의 기술 개발과 새로운 지표가 설정이 되고 이에 대한 FEED-BACK이 된다.

3. 모니터링 규정의 제도화

모니터링 규정이 시스템화 되면 신분보장으로 인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보다 안정적인 관리체제로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될 것이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모니터링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목적은 첫째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둘째 이용(주거)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인권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넷째 차별예방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다섯째 차별해소이다.

2. 올바른 모니터링의 방향

기관	공급의 유형	올바른 모니터링 방향
관(정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비품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용품으로 - 실제 사용가능하도록 정확한 위치선정 (창고에서 비품을 가져오면서 있다고 체크요청)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장애인이 아닌 환우로 인식개선 필요 -내원 환자의 결정권은 보호자에게 없음 (응급실로 실려 오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자가 처리하므로 굳이 필요없지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자체 프로그램 개발 필요 -시설물 개방, 사용허가는 자체 운영이 아님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하지요 사회복지과 학생들하구요)
기타기관	해당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향후 예측 내용)	* 통합 프로그램 운영의 노력 필요 -바우처 제도 및 활동 보조인등 각종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연구와 노력 필요 (단체 및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협업 필요)

IV. 모니터링 2014년 방향(제언)

1. 모니터링의 실효성 강화

장애 유형별 특성 고려하여 구체적이고도 현실성을 적용하여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를 하여 기관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2. 모니터링의 다양화

1) 다수의 장애인이 고용된 기업체

장애인을 고용한 장애인 시설내의 작업장에서의 인권과 사회적기업 등에서의 인권과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2) 금융기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지 등을 알지 못하여 부당한 손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와 기관을 이용할 때 받는 서비스의 차별에 대해 유형별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3) 학원 및 학교

학원이나 학교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실험 및 실습, 실기 시간에 배제되는 경우 역시 차별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모니터링을 구체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관광지(문화해설사의 정보접근권, 보행권)

보행권이 있는 장애인에게 관광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지일 뿐이다. 개선을 통하여 문화 복지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다중이용 시설

그 외에도 백화점이나, 기차역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은 무수히 많다. 사례를 발굴하여 모니터링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3. 모니터링의 역할

모니터링단의 활동 후 평가로 개선점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되도록 해당 시설 및 기관에 인식개선 및 홍보의 역할수행도 필요하다.

IV. 맺음 말

2008년 4월 1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희망을 걸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보건사회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인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후의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에 대한 **Feed-Back**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모니터링 운영이 필요함을 느꼈다. ①모니터링을 마치고 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②영역별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기관들의 현황에 대한 향후 시행 및 개선방향을 알 수 있었으며, ③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홍보하며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천의지가 부족함은 현실감이 떨어진 형식적이고 반복되는 모니터링의 결과물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한다.

〈부록 2〉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 명단

1. 서울 권역(23명)

권도혁, 김가람, 김민수, 김봉관, 김은영, 김진형, 김태이, 김현수,
 김현숙, 김현우, 박윤구, 오양미, 윤영주, 이용원, 임예직, 정방섭,
 정지숙, 조미연, 조현대, 한성수, 한은희, 홍남희, 황철호,

2. 대전 권역(20명)

강문기, 구혜연, 권은선, 김대화, 김동일, 김락원, 김성훈, 김수자,
 김태준, 남태현, 박승현, 박원화, 백설임, 안광평, 유경애, 이종돈,
 이희진, 정덕진, 천인수, 최민희

3. 대구 권역 (36명)

김성곤, 김세령, 김순예, 김영준, 김옥현, 김용진, 김운용, 김이래, 김정자,
 김진숙, 김형래, 김홍완, 박귀룡, 박만수, 박미라, 박현경, 서은주, 설의자,
 송재동, 신태선, 여경수, 원성필, 이경수, 이민호, 이삼희, 이수진, 이승협,
 이연희, 이영범, 장봉기, 정동환, 정명관, 정홍규, 조병기, 채경훈, 황재준,

4. 부산 권역 (27명)

강래성, 강보경, 강세경, 김경순, 김나영, 김미희, 김민유, 김수균, 김승일,
 김정희, 김종석, 김해성, 김현민, 박상진, 박세진, 박희송, 배성재, 안소영,
 유길상, 윤여현, 이이현, 임대성, 장유성, 정승천, 정유리, 정으뜸, 황선일

5. 광주 권역 (29명)

강한새, 김남오, 김상진, 김은숙, 김정호, 김현희, 김형수, 노동주, 문순진, 박경한,
박동환, 박려형, 박석진, 박성인, 박용일, 방철호, 배 현, 변금섭, 윤숙경, 윤진호,
이연호, 이창준, 이형일, 임옥연, 장윤성, 전순덕, 전응섭, 조재명, 조희정

6. 제주 권역 (22명)

강승미, 강윤미, 고숙미, 김경옥, 김명란, 김재훈, 김태우, 김홍주, 박보미,
송창현, 안재철, 양승희, 양을순, 오영호, 유용한, 이성욱, 이승훈, 조점선,
최은주, 최한승, 한미영, 현순식

※ 모니터링 활동 중 탈퇴한 단원들은 명단에서 제외함

〈부록 3〉 모니터링 관련 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1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실외 시설
 -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법률 제11522호, 2012.10.22.,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p>	<p>[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p> <p>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5.19>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p> <p>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p> <p>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p> <p>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p> <p>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p> <p>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p> <p>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p>	<p>교육원</p> <p>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p> <p>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p> <p>4.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p> <p>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p> <p>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p> <p>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p> <p>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p> <p>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p> <p>6.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p> <p>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p>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p> <p>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p> <p>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p>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p> <p>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차별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고용</p> <p>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p>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p>	<p>시행령</p> <p>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p>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령으로 정한다.</p> <p>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교육</p> <p>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p> <p>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p> <p>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p>	<p>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p>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제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p>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p> <p>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p> <p>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p> <p>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p> <p>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p> <p>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p> <p>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p> <p>④「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p> <p>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p>	<p>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p>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의 서</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 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p> <p>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제목개정 2010.5.11]</p> <p>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p> <p>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1.5.19>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5.19></p> <p>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p>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p>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p> <p>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차관이 요청할 때 또는</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p> <p>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p>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p>	<p>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p>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모 · 부성권, 성 등</p> <p>제28조(모 · 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개정 2011.6.7></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p> <p>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p> <p>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p>	<p>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는 아니 된다.</p> <p>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p> <p>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p> <p>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p>	<p>제30조 삭제 <2011.5.19></p> <p>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p> <p>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 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 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p>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p> <p>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p>	<p>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8></p> <p>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p> <p>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서는 아니 된다.</p> <p>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p> <p>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p> <p>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p>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p> <p>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p> <p>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p>	<p>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p>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p> <p>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p> <p>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p> <p>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p> <p>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p>1. 차별의 고의성</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p> <p>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p> <p>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p> <p>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p>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 3]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예술사업자	•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 4]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
 (제16조 제2항 관련)

I.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시설	수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시설	야외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5.3.31 [[시행일 2006.1.28]]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삭제[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일 2006.1.28]]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삭제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일 2006.1.28]]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4.7.1]]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①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

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8.2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 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 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시설
-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 가. 아파트
 -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 가. 공중전화
 - 나. 우체통

[별표 2] <개정 2012.8.2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신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p>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들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p>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신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p>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p>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10) 점자블록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삭제<2007.2.12></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p>(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p>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p>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p>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p>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신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제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 근린 생활 시설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 이상만 적용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00㎡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 안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동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사위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 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전신전화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 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아파트의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p>(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 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p>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 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들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9.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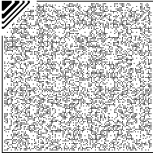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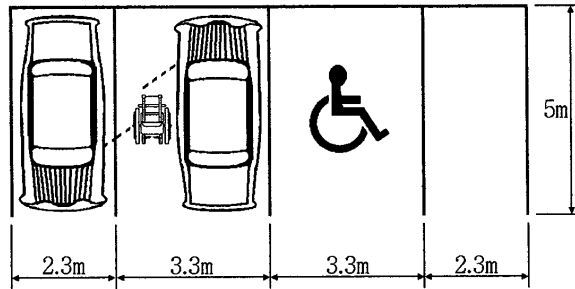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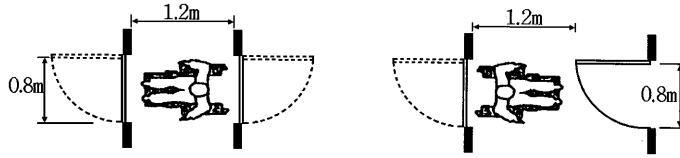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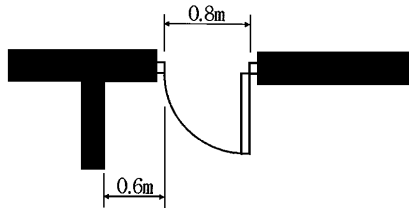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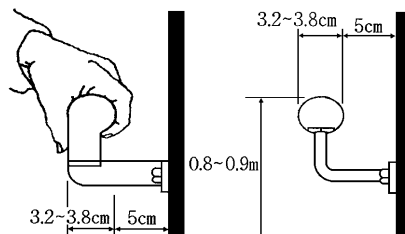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 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 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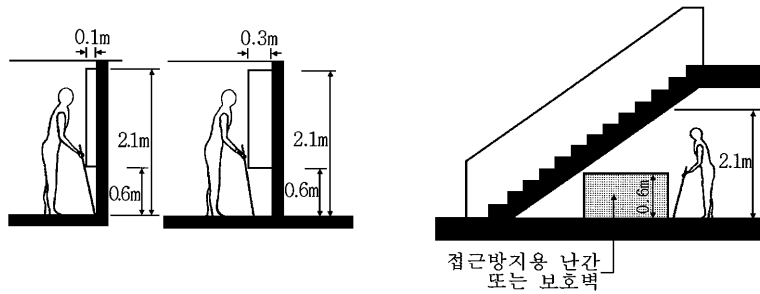
다. 손잡이

-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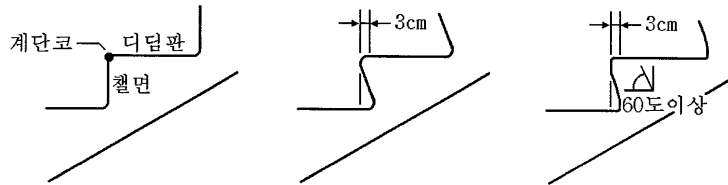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편

- (1)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탈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탈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충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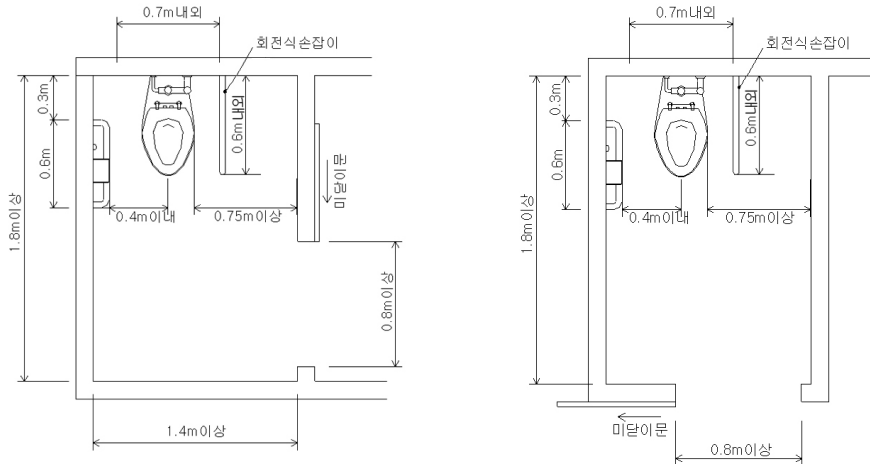
(3) 손잡이

-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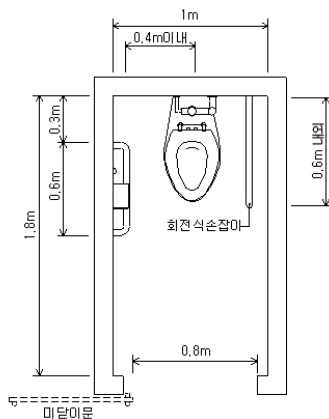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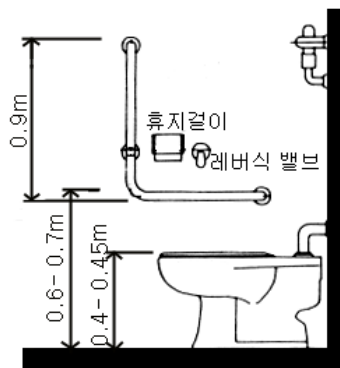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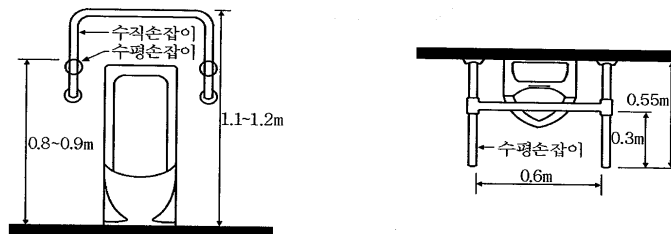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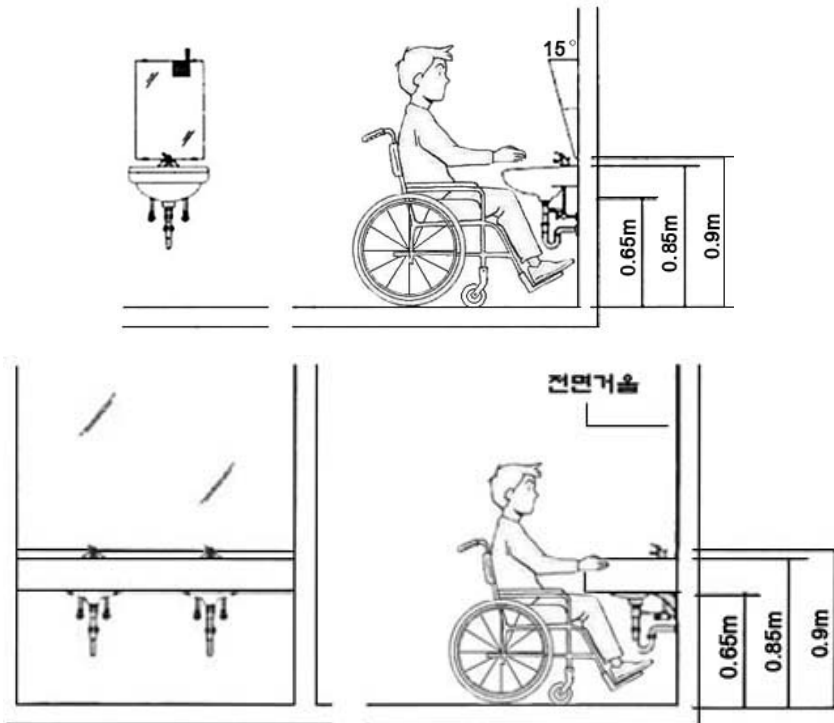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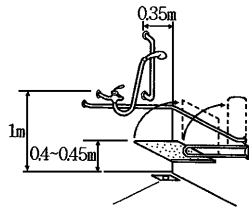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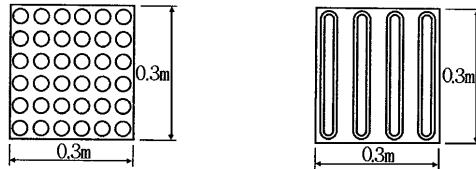
-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

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축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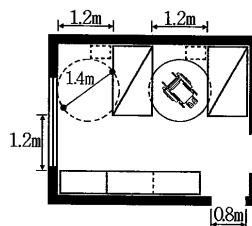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가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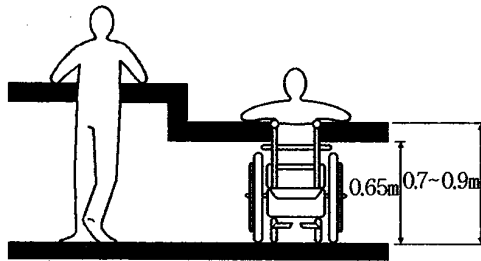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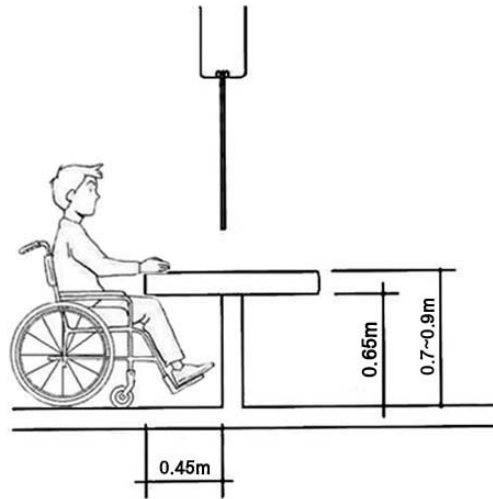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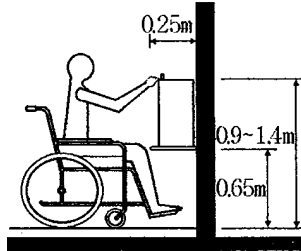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7.3.9>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 (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3.8.6] [법률 제11901호, 2013.7.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8.13>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5. 문화 보급·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 7.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인 쇄 | 2013년 11월

| 발 행 | 2013년 11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41
금세기빌딩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968 | F A X | (02) 2125-0924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37-1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